

주요국의 조세제도

- 싱가포르 편 -

2011. 4.

연구진

연구책임자

전병힐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정재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송은주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원

마정화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원

서 언

싱가포르는 63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이다. 작은 영토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일찍부터 다른 나라들과의 교역을 강조하여 중계무역 방식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교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택한 결과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가장 개방적이며, 경쟁적이며, 혁신적인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가장 사업 친화적인 경제제도를 구비하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어, 많은 수의 다국적기업 및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근대화 및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높은 수출입 의존도란 측면에서도 공통점을 지닌다.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경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교역시장에서 경쟁상대라고도 할 수 있는 싱가포르 경제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는 여러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싱가포르가 사업 친화적 제도를 구비하여 외국 자본과 인력을 유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관련된 제도 정비 및 운영에서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원에서는 싱가포르의 경제제도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현재 발간하고 있는 『주요국의 조세제도』 시리즈의 하나로 싱가포르의 조세제도를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본 보고서는 싱가포르 조세제도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부족한 부분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가급적 최신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저자들이 노력을 기울였으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역시 급격한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의 변화가 빈번한 이유로 인해 가장 최신 내용을 본 보고서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싱가포르의 조세에 대한 최소한의 길라잡이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싱가포르 조세제도의 최신 내용을 포함한,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싱가포르 국세청의 홈페이지와 주요 출판물 및 관련 법령정보를 참조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통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전병힐 부연구위원, 정재호 연구위원, 송은주 전문 연구원, 마정화 연구원에 의하여 집필되었다. 저자는 본 보고서 작성과정 중에 있었던 세미나 등에서 유익한 조언을 해준 본원의 세법연구센터 연구원들과 교정 및 편집에 수고한 장정순 주임연구행정원에게 감사를 전한다. 또한, 본 보고서 작성의 최종 단계에서 감수를 통하여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을 준 삼일회계법인의 관계자께도 감사를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 조세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함을 밝혀둔다.

2011년 4월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원 윤 희

목 차

제1편 총론	19
I. 경제 및 사회 환경	19
1. 사회환경	19
2. 최근의 경제환경	21
가. 경제성장률	21
나. 무역수지 동향	23
II. 조세체계	25
1. 세목의 구성	25
2. 조세법의 규범체계 및 세무행정	26
가. 조세법의 법원	26
나. 세무행정	27
III. 세수입 규모 및 구성	28
IV. 최근의 재정정책 및 조세정책 방향	31
제2편 소득세제	34
I. 개인소득세	34
1. 개관	34
가. 과세소득의 범위	34

나. 과세기간	34
2. 납세의무자	35
가. 거주자	35
나. 비거주자	37
3. 과세소득의 유형	37
가. 개요	37
나. 사업소득	37
다. 근로소득	38
라. 이자·배당소득	42
마. 연금소득	44
바. 재산소득	44
사. 기타소득	45
4. 비과세소득	46
가. 개요	46
나. 비과세 근로소득	46
다. 비과세 이자·배당소득	52
라. 비과세 연금소득	53
5. 각종 공제제도	54
가. 비용공제 및 기부금공제	54
나. 자본공제	58
다. 사업손실공제	58
라. 종합소득공제	59
마. 세액공제	70
6. 세율 및 세액의 계산	72
가. 세율	72
나. 세액의 계산	72
7. 소득세 행정	73
가. 신고	73

나. 부과	74
다. 이의신청	76
라. 징수, 납부 및 환급	77
마. 세무조사	82
바. 불복	83
사. 가산세	84
아. 조세범처벌	85
자. 세법해석 사전답변	90
8. 원천징수제도	93
II. 법인소득세	94
1. 서론	94
2. 납세의무자	95
3. 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	96
가. 과세소득	96
나. 비과세소득	96
4. 비용공제 및 세액공제 등	98
가. 일반적으로 공제되는 비용의 정의	99
나. 비용 성격의 공제항목	99
다. 특별공제	105
라. 기부금	111
5. 자본공제제도	114
가. 시설 및 기계장치	115
나. 산업용 건물	121
다. 무형자산	123
6. 조세지원제도	124
가. 신설법인에 대한 과세면제제도	124
나. 생산성 및 혁신 지원제도	125

7. 손실	129
가. 사업손실	129
나. 자본손실	131
다. 그룹법인 간 손실이전제도	131
8. 세율 및 세액의 계산	135
가. 세율 및 과세면제제도	135
나. 세액의 계산	136
9. 법인세 행정	139
가. 과세기간	139
나. 세금신고서 제출	139
다. 세액의 납부	140
라. 사전답변제도	140
마. 회계기간의 변경	141
Ⅲ. 파트너십	142
1. 파트너십의 특성과 유형	142
가. 파트너십의 특성	142
나. 파트너의 유형	143
다. 파트너십의 유형	143
2. 파트너십 과세방식	145
가. 과세표준	145
나. 파트너십 단계의 세금 계산	145
3. 파트너십 신고의무	148
Ⅳ. 국제조세	150
1. 국제조세의 체계	150
가.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150
나. 국제조세의 구성	150

2. 비거주자·국외법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151
가. 개요	151
나. 간주국내원천소득	151
다.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일반	152
라.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153
마.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155
바. 원천징수제도	156
3. 이중과세방지 규정	160
가.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	160
나. 싱가포르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161
4. 이전가격세제	166
가. 이전가격세제의 도입 배경	166
나. 이전가격세제 가이드라인	167
5. 조세조약 및 현황	173
가. 조세조약의 역할	173
나. 조세조약의 내용	173
다. 조세조약 체결 현황	174
V. 기타 단체	176
1. 클럽과 협회	176
가. 개관	176
나. 클럽 및 유사기관	177
다. 무역협회 및 전문가협회	178
라. 기타	179
2. 유산재단, 신탁 및 계승적 재산처분	180
가. 유산재단	180
나. 신탁	183
다. 사업신탁	185

라. 계승적 재산처분 185

제3편 소비세제 187

I. GST 187

1. 개관 187

2. 납세의무자 188

3. 과세대상거래 188

 가. 과세대상 공급 188

 나. 공급 장소·시기·가격의 결정 189

4. 세율 190

5. 영세율 공급 및 면세공급 191

 가. 영세율 공급 191

 나. 면세공급 191

6. 부분적 면세 사업자 192

7. 부가급여에 대한 GST 194

8. GST 등록 194

9. 특례제도 196

 가. 그룹등록제도 196

 나. 사업부별 등록 196

 다. 수출업자 감면 197

 라. 보세창고제도 197

 마. 위탁제조업자에 대한 감면제도 197

 바. 보세지역 반출 재화에 대한 감면제도 198

 사. 관광객 환급제도 198

10. GST의 세무처리 199

 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199

 나. 매입세액공제 199

11. GST 행정	200
가. 기장 및 신고의무	200
나. 부과, 체납처분, 징수 및 환급	200
다. 이의신청 및 불복	201
라. 위반행위 및 제재	202
마. 세법해석 사건답변제도	204
II. 개별소비세	208
1. 납세의무자	208
2. 과세대상 및 세율	208
3. 면세	209
제4편 재산세제	213
I. 재산세	213
1. 납세의무자	213
2. 과세대상	213
3. 과세표준	214
가. 연간가치	214
나. 연간가치 산출방법	215
4. 세율 및 면세점	217
가. 세율	217
나. 면세점	220
5. 감면 및 세액공제	220
가. 건물	220
나. 토지	224
다. 재건축중인 거주용 부동산(공통)	225
6. 재산세 행정	226

가. 신고 및 부과	226
나. 징수, 납부 및 환급	226
다. 이의신청 및 불복	227
라. 가산세	228
마. 조세범처벌	228
II. 인지세	230
1. 납세의무자	230
2. 과세대상	231
가. 개관	231
나. 임대차계약과 과세대상	232
3. 세율 및 세액의 계산	233
가. 과세표준 및 세율	233
나. 세액의 계산	235
4. 감경 및 면제	239
가. 직권감면	239
나. 법정감경	242
다. 면제	246
라. 적격 M&A 공제	246
5. 인지세 행정	247
가. 신고 및 부과	247
나. 징수, 납부 및 환급	247
다. 이의신청 및 불복	249
라. 가산세	249
마. 조세범처벌	250

제5편 기타조세	252
I. 오락 관련세	252
1. 도박세	252
가. 적용범위	252
나. 세율 및 세액산출	253
다. 신고 및 세액 납부	253
라. 벌금	254
2. 민간복권세	254
가. 세율 및 세액산출	254
3. 카지노세	256
가. 세율 및 세액산출	256
나. 신고 및 세액의 납부	256
II. 자동차세	258
1. 자동차세의 구성	258
2. 추가등록료	258
가. 과세대상 및 세율	258
나. 감경	259
3. 도로세	263
가. 과세대상 및 세율	263
나. 추가금 및 감면	267
4. 특별세	268
가. 개념	268
나. 세율	269
III.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	270
1. 납세의무자	270

2. 서울	270
가. 노동비자를 보유하는 경우	270
나. S 비자를 보유하는 경우	272
IV. 공항승객서비스료	273
1. 납세의무자	273
2. 서울 및 면제	273
가. 서울	273
나. 면제	274
참고문헌	275

표목차

제1편

〈표 1-I-1〉 싱가포르의 최근 경제성장률(2005년 불변가격 기준)	22
〈표 1-I-2〉 싱가포르의 최근 무역수지	24
〈표 1-II-1〉 싱가포르 조세제도의 세목	25
〈표 1-II-2〉 싱가포르 조세법	26
〈표 1-III-1〉 정부수입 규모	29
〈표 1-III-2〉 세목별 세수비중	30

제2편

〈표 2-I-1〉 ESOP와 ESOW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	42
〈표 2-I-2〉 행정상 특례가 부여되거나 비과세인 현물혜택 목록	47
〈표 2-I-3〉 근로자 보상의 유형별 과세여부	48
〈표 2-I-4〉 순연간가치 비용 공제	56
〈표 2-I-5〉 임대비용 공제	57
〈표 2-I-6〉 자녀 1인당 공제액	62
〈표 2-I-7〉 워킹맘자녀공제율	63
〈표 2-I-8〉 경로자 1인당 공제액	64
〈표 2-I-9〉 군인공제(본인) 금액	68
〈표 2-I-10〉 부모세액공제액	71
〈표 2-I-11〉 개인소득세 세율	72
〈표 2-I-12〉 법인의 분납 가능 횟수	78

〈표 2-II-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특별공제항목	105
〈표 2-II-2〉 세법상 자산의 내용연수	120
〈표 2-II-3〉 세율 및 부분과세면제제도	136
〈표 2-IV-1〉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및 과세방식	159
〈표 2-IV-2〉 조세협약 체결 현황	175

제3편

〈표 3-I-1〉 GST 과세공급 및 면세공급 유형	189
〈표 3-I-2〉 등록의무 판단 사례	195
〈표 3-I-3〉 GST 관련 위반행위와 처벌규정	203
〈표 3-II-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209
〈표 3-II-2〉 개별소비세 면세 유형	210

제4편

〈표 4-I-1〉 거주자인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2011년 이후)	218
〈표 4-I-2〉 1994 GST 세액공제	221
〈표 4-I-3〉 2010 재산세 세액공제	221
〈표 4-II-1〉 인지세의 납세의무자	230
〈표 4-II-2〉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의 유형	231
〈표 4-II-3〉 인지세 세율	234
〈표 4-II-4〉 변동임대료 조건의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임대료산정기준	238

제5편

〈표 5-I-1〉 카지노세에 대한 가산세	257
------------------------------	-----

〈표 5-II-1〉 추가등록료 세율	259
〈표 5-II-2〉 친환경차 추가등록료 감경률	260
〈표 5-II-3〉 우대추가등록료 감경률(자가용, 회사차, 렌터카, 교습용 차량)	261
〈표 5-II-4〉 우대추가등록료 감경률(택시)	261
〈표 5-II-5〉 신OPC제도의 조세특례	263
〈표 5-II-6〉 도로세 세율(휘발유, 압축천연가스(CNG), 휘발유-CNG, 디젤차)	264
〈표 5-II-7〉 도로세 세율(전기차, 휘발유-전기차)	264
〈표 5-II-8〉 도로세 세율(전기 오토바이)	264
〈표 5-II-9〉 도로세 세율(휘발유 사용 오토바이)	265
〈표 5-II-10〉 도로세 세율(화물차)	266
〈표 5-II-11〉 도로세 세율(Goods-cum-Passengers Vehicle)	266
〈표 5-II-12〉 도로세 세율(버스)	267
〈표 5-II-13〉 도로세 추가금	268
〈표 5-III-1〉 외국인 근로자세 세율(노동비자 보유자)	271
〈표 5-III-2〉 외국인 근로자세 세율(S비자 보유자)	272

그림 목차

제2편

[그림 2-I-1]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과정	73
[그림 2-I-2] 세무조사 절차	82
[그림 2-II-1] 동일그룹 유형	132
[그림 2-II-2] 법인세 세액 산출과정	138
[그림 2-III-1] 파트너십의 소득계산과정	146
[그림 2-III-2] 파트너의 소득계산과정	147

제3편

[그림 3-I-1] 부분적 면세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청구	193
[그림 3-I-2] 이의신청 절차	202

제1편 총론

I. 경제 및 사회 환경

1. 사회환경

싱가포르의 정식 명칭은 싱가포르공화국(Republic of Singapore)이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63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도시국가인데 면적은 692.7km²로 남한 면적의 0.7%, 서울 면적의 1.15배에 불과하다.

이러한 작은 영토로 인해 국토를 조금이라도 확장하기 위하여 인근 바다를 꾸준히 매립해 왔다. 싱가포르는 당초 주변 바다를 매립하여 국가 면적의 25%를 확장한다는 구상을 추진해 왔는데, 싱가포르의 자랑인 세계 5위 내 항공객을 처리하는 창이(Changi) 국제공항과 세계 1위의 컨테이너 부두, 해군기지 등이 매립지에 위치해 있다. 1999년 싱가포르 국립환경청(NEA)은 싱가포르 본토로부터 남쪽으로 8km 떨어져 있는 세마카우 섬에 쓰레기 재를 이용하여 매립을 시작하였으며 2040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영토 확장 노력은 주변국들과 외교적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환경 훼손과 해양 경계의 변화에 대한 우려로 매립공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한편, 싱가포르에 대한 모래 수출을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금처럼 바다 매립을 계속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그간 매립한 땅은 싱가포르 경제활동에 긴요하게 이용되고 있다¹⁾.

싱가포르는 1819년 영국의 Stamford Raffles경이 건설하였는데, 1824년 영국 동인도회사의 소유가 되었다. 1942년에는 일본에 점령되었다가 일본 패망 후 1946년에는

1)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싱가포르 영토확장 노력과 주변국과의 관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그 후 1955년의 랜들헌법(Randel Constitution)에 따라 내각제 정부가 되었다. 1963년 말레이연방·사바·사라와크와 함께 말레이시아를 결성하였으나 1965년 8월에 분리독립하였다.

싱가포르는 이민 역사가 깊은 이민국가이다. 따라서 500만명에 달하는 인구는 중국인, 말레이시아인, 인도인을 비롯한 다양한 아시아인과 백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싱가포르 인구의 약 42%가 외국인이고 이들이 싱가포르의 서비스 산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전 세계에서 외국인의 비율이 6번째로 높은 국가이다. 인구밀도는 모로코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국가이다. 통계에 의하면, 2009년 싱가포르 인구는 499만명이고, 이 중 373만명이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이다. 싱가포르 거주자 중 중국인이 74.2%, 말레이인이 13.4% 인도인이 9.2% 그 밖의 국가가 3.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인구구성에 따라 공용어 역시 말레이어, 중국어, 영어, 타밀어의 4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2008년 출산율은 1.28명에 불과하고, 이는 세계에서 3번째로 가장 낮은 수치이다. 출산율 하락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싱가포르로의 이민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이민자들에 의해 인구를 유지해오고 있다.

싱가포르의 행정부는 총리와 내각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각은 14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관은 대통령이 총리의 추천에 따라 임명한다. 정부부처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국방부(Ministry of Defense),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법무부(Ministry of Law), 내무부(Ministry of Home Affairs),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 통상산업부(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인력부(Ministry of Manpower), 국토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지역개발·청소년·체육부(Ministry of Community Development, Youth and Sports),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환경·수자원부(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Water Resources), 정보통신예술부(Ministr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s and the Arts)의 14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싱가포르는 성공적인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개방적이며 부패가 없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높은 1인당 GDP를 기록하고 있다²⁾. 경제는 수출과 서비스 부문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 특히 전자제품, 정보기술제품, 제약 분야에

서 두드러진다.

2. 최근의 경제환경

가. 경제성장률

2010년 7월 14일 통상산업부(MTI: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는 2010년 싱가포르 경제가 13.5~15.0%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표하였다³⁾. 이는 연초에 7~9%의 성장을 예상한 것에 비해 상향조정된 것이다. 경제성장 전망치를 조정한 것은 다음의 세 가지가 반영된 것이다. 첫째, 2010년 1사분기의 경제적 성과, 둘째, 2사분기에 있어서 경제성장률 기대치보다 높은 성장률, 셋째, 2010년 남은 기간에 있어서 성장동력의 둔화이다.

2) 2009년 World Bank 자료(World Development Indicators Data)에 의하면, 2009년 싱가포르의 1인당 GDP는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3) 통상산업부, "MTI Revise 2010 Growth Forecast 50 13.0 to 15.0 Per Cent", 2010. 7. 14.

〈표 1-1-1〉 싱가포르의 최근 경제성장률(2005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

	2009/2	2009/3	2009/4	2009	2010/1	2010/2 ¹⁾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GDP총액	-1.7	1.8	3.8	-1.3	16.9	19.3
재화생산업						
제조업	-0.4	7.6	2.2	-4.1	38.2	45.5
건설업	18.1	11.7	11.5	16.2	10.2	13.5
서비스생산업	-3.4	-1.1	3.7	-1.4	11.2	11.4
전기 대비 증가율						
GDP총액	18.5	11.1	-1.0	-1.3	45.9	26.0
재화생산업						
제조업	35.4	23.6	-27.0	-4.1	201.4	63.0
건설업	22.9	3.9	13.6	16.2	2.5	35.9
서비스생산업	11.5	7.6	9.6	-1.4	16.8	11.7

주: 1) 전망치

자료: 통상산업부, "MTI Revise 2010 Growth Forecast 50 13.0 to 15.0 Per Cent", 2010. 7. 14.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 1사분기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1사분기 수치를 연간 경제성장률로 환산하면 16.9%가 된다. 제조업 분야, 특히 생체의학 제조업 분야에서의 생산 증가가 경제성장률 수정치를 발표한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2010년 2사분기에 대한 전망치에 따르면, 2사분기에도 역시 계속해서 경제성장률이 크게 증가할 것임을 나타낸다. 즉, 실질 GDP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19.3%, 전기 대비 26.0%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별로 볼 때, 제조업 분야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5.5%의 성장이 예상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의해 전기 분야의 급속한 성장이 있었고 또한 생체의학 제조업 분야에서의 생산 급증이 성장을 주도하였다. 건설업 분야는 2010년 1사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0.2%의 성장을 이루었고 2사분기에는 공공분야의 건설 활동 증가에 힘입어 13.5%의 증가가 예상되었다. 서비스 생산업은 1사분기에

11.2% 증가하였고 2사분기에는 11.4%의 증가가 예상된다. 국제무역 분야에서의 증가율 역시 전 세계적으로 건설한 국제교역 흐름에 힘입어 개선되었다. 한편 새로 개장하는 복합리조트와 증가하는 관광객들이 관광관련 산업에서의 증가를 가져왔다. 금융서비스 분야 역시 외환거래 및 국내 은행의 대부거래 증가로 인해 크게 증가하였다.

2010년 하반기 싱가포르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국제적인 경기전망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전 세계경제가 경기회복 단계에 있지만,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초의 경기회복 이후 노동시장에서 경기둔화의 지표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소비자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EU지역에서도 소비리스크⁴⁾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로 인해 국내소비가 여전히 침체상태이다. 미국 및 EU지역에서의 부진한 최종 소비는 아시아 경제에 있어서 산업 활동을 둔화시키고 제조업 분야의 생산을 감축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열악한 재정상태가 국내수요를 추가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다. 거래 상대국가에 대한 유로화의 약세 역시 EU지역의 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제적인 경기상황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경기재침체(double-deep recession)에 빠질 가능성은 적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적인 경기회복의 동력은 훨씬 둔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10년 상반기에 싱가포르는 이례적으로 큰 폭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이것이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생체의학 제조업 분야에서의 공장 폐쇄와 같은 산업 특유의 요인도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경제성장을 끌어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하반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어느 정도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현재의 경제활동 수준에서 볼 때 전기 대비 증가율은 낮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을 고려하여, 통상산업부는 2010년 GDP 증가율 전망치를 7.0~7.9%에서 13.0~15.0%로 수정하여 발표하였다.

나. 무역수지 동향

싱가포르의 무역수지를 보면, 2006~2009년 기간에 무역흑자를 보이고 있다. 2009

4) 국제금융시장에서 채권발행이나 차입을 통해 자금을 빌리는 주체가 정부나 이에 준하는 기관인데, 이들이 채무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

년 수출규모는 5.2천억싱가포르달러, 수입 4.7천억싱가포르달러로 전체 교역규모는 약 9.9천억싱가포르달러 규모이다. 2009년의 무역규모는 세계경제위기로 인해 수출 및 수입 규모가 각각 15.6%, 17.1% 감소하여, 전년 대비 큰 폭의 하락이 있었다. 그러나 수출 감소폭보다 수입 감소폭이 더 커서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였다.

분기별 무역수지 증가율을 보면, 2008년 4사분기에 무역수지가 크게 감소하였다가 2009년 2분기에서 4분기에 걸쳐 다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0년 1사분기에는 다시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표 1-1-2〉 싱가포르의 최근 무역수지

(단위: 백만싱가포르달러, %)

	무역수지		수출			증가율	수입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재화	서비스	계					
2006	69,548.2		436,506.3	105,348.8	541,855.1		368,874.0	103,432.9	472,306.9	
2007	84,686.4	21.8	455,919.4	127,769.9	583,689.3	7.7	386,494.5	112,508.4	499,002.9	5.7
2008	56,616.7	-33.1	483,411.0	142,644.5	626,055.5	7.3	445,985.2	123,453.6	569,438.8	14.1
2009	55,973.2	-1.1	396,269.9	131,961.3	528,231.2	-15.6	352,625.5	119,632.5	472,258.0	-17.1
2008/2	14,309.3		126,051.3	35,821.2	161,872.5		116,614.3	30,948.9	147,563.2	
2008/3	16,673.8	16.5	132,356.5	36,402.7	168,759.2	4.3	120,963.4	31,122.0	152,085.4	3.1
2008/4	10,278.2	-38.4	105,072.8	34,597.8	139,670.6	-17.2	99,007.8	30,384.6	129,392.4	-14.9
2009/1	10,143.9	-1.3	86,747.6	31,211.1	117,958.7	-15.5	79,641.3	28,173.5	107,814.8	-16.7
2009/2	13,550.5	33.6	94,313.4	32,269.7	126,583.1	7.3	83,779.0	29,253.6	113,032.6	4.8
2009/3	14,980.8	10.6	105,440.3	33,551.6	138,991.9	9.8	93,261.1	30,750.0	124,011.1	9.7
2009/4	17,298.0	15.5	109,768.6	34,928.9	144,697.5	4.1	95,944.1	31,455.4	127,399.5	2.7
2010/1	14,389.8	-16.8	111,028.1	35,753.0	146,781.1	1.4	99,328.7	33,062.6	132,391.3	3.9
2010/2	18,460.3	28.3	121,270.2	37,310.3	158,580.5	8.0	105,640.4	34,479.8	140,120.2	5.8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

II. 조세체계

1. 세목의 구성

정부 수입(Revenue)의 주요 3가지 원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수(Tax Revenue)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세목으로부터 징수된다.

〈표 1-11-1〉 싱가포르 조세제도의 세목

세목	내용
소득세 (Income Tax)	·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부과됨
재산세 (Property Tax)	· 재산의 기대임대료에 기초하여 소유자에게 부과됨
유산세 (Estate Duty)	·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망자의 순자산 가격에 부과됨 · 2008년 2월 15일 이후 사망부터 유산세가 폐지됨
자동차세 (Motor Vehicle Taxes)	· 수입제세를 제외한 자동차에 부과됨 · 이 세목은 자동차보유와 도로정체를 제한하기 위해 부과됨
관세 및 개별소비세 (Customs & Excise Duties)	· 싱가포르는 자유항(Free Port)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개별소비세와 관세는 낮은 편임 ·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담배, 석유제품, 주류에 부과됨
GST (Goods & Services Tax)	· 소비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서 수입시를 포함하여 재화나 용역에 대가가 지급되는 때마다 납부해야 함
도박세 (Betting Taxes)	· 민간복권, 도박에 대해 부과됨
카지노세 (Casino Tax)	· 카지노의 총계입수입에 대해 부과되는 새로운 세금임
인지세 (Stamp Duties)	· 주식 및 부동산과 관련하여 상업-법률문서에 부과됨
기타	·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Foreign Worker Levy)과 공항승객서비스료(Airport Passenger Service Charge)가 있음 ·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은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를 규제하기 위해 부과됨

자료: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5676>

2. 조세법의 규범체계 및 세무행정

가. 조세법의 법원

싱가포르 헌법 제143조에 따라 조세는 법률에 의해 징수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싱가포르 조세법은 다음과 같다.

〈표 1-11-2〉 싱가포르 조세법

분야	해당법률
소득세, 법인세	소득세법(Income Tax Act) 경제발전특례법(Economic Expansion Incentives(Relief from Income Tax) Act)
GST	GST법(Goods and Services Tax Act)
관세, 개별소비세	관세법(Custom Act)
도박세	도박세법(Betting and Sweepstake Duties Act)
민간복권세	민간복권법(Private Lottery Act)
카지노세	카지노세법(Casino Tax Act)
유산세 ¹⁾	유산세법(Estate Duty)
재산세	재산세법(Property Tax Act)
인지세	인지세법(Stamp Duties Act)
자동차세	도로교통법(Road Traffic Act)

주: 1) 2008년 2월 15일 이후 사망부터 유산세는 폐지됨

자료: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5676>

한편 재무부 장관이 포괄적 조세조약이 외국정부와 체결되었음을 선언한 경우 이 조약은 국내법에 상관없이 효력이 발생되어야 한다⁵⁾. 따라서 이중과세방지 조약은 소득세 분야에서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5) 소득세법 §49

한편, 법률상 위임규정에 따라 Regulation, Rule, Order, 고시(Notification)와 같은 하위법령(subsidiary Legislation)이 제정된다. 이 중 대부분의 Regulations는 모법에 대한 조세특례의 상세한 내용을 규정한다. Rule나 Order는 일반적으로 법률상 특정 용어의 범위에 부합하는 항목들을 규정한다. 고시⁶⁾는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하위법령이다.

이러한 하위법령은 소관부처에서 제정권을 가진다. 따라서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국세청과 관세청이 담당하는 대부분의 세목에 대해 하위법령을 제정하며,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는 육상교통청이 담당하는 자동차세에 대한 하위법령을 규정한다.

나. 세무행정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중앙기관에서 세무행정을 담당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재무부 산하에 있는 국세청(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은 소득세, 재산세, GST, 유산세, 도박세, 카지노세, 인지세를 관리하고 징수하는 기관이다. 한편, 재무부 산하에 있는 관세청(Singapore Customs)은 관세 및 개별소비세의 행정을 담당하며, 교통부 산하에 있는 육상교통청(Land Transport Authority; LTA)은 자동차세의 징수를 담당한다.

한편, 싱가포르에서는 재무부 장관이 각 세목별로 세무행정의 최고책임자(Comptroller)⁷⁾를 정하여 부과징수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다만, 도박세는 인지세 최고책임자(Commissioner of Stamp Duties), 민간복권세는 유산세 최고책임자(Commissioner of Estate Duties), 카지노세는 소득세 최고책임자(Comptroller of Income Tax)가 담당한다.

6) 소득세법 §13(4)은 재무부 장관이 경제적 또는 기술적 개발을 촉진하는 이자소득이나 로열티임을 인정하는 경우 부분 또는 완전 면세됨을 고시(Notification)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인지세법 §78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와 세율 등을 규정하는 Schedules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보에 고시(Notification)함으로써 추가, 변경, 폐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Stamp Duties (Amendment of First and Third Schedules) Notification 2010이 발표되었다.

7) 인지세와 유산세의 경우만 Comptroller 대신 Commissioner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Ⅲ. 세수입 규모 및 구성

2009년 총세수는 전년 대비 6%의 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2008년부터 시작된 금융위기의 결과, 거래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세수에도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9% 하락한 반면 재산세는 30% 이상 하락하였다. 소득세나 재산세에 비해 관세 및 소비세와 오락관련세는 각각 0.1%, 2.8%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세수 감소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III-1〉 정부수입 규모

(단위: 백만싱가포르달러,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증가율
총계	26,345.8	28,116.5	31,072.4	39,515.9	41,376.7	37,872.1	
세수	22,698.7	25,201.0	28,718.3	36,061.3	37,518.6	35,272.4	-6.0
소득세	10,218.0	12,655.0	14,947.7	16,410.2	18,559.0	16,884.2	-9.0
법인세	10,099.6	11,208.9	8,298.8	9,085.7	10,115.1	9,537.3	-5.7
개인세			4,626.5	5,530.6	6,288.1	7,323.5	16.5
재산세	2,139.4	1,818.8	2,052.0	2,432.0	2,891.3	2,003.7	-30.7
부동산세	1,680.1	1,742.8	1,955.4	2,289.4	2,815.8	1,993.8	-29.2
유산세 ¹⁾	459.3	76.0	96.6	142.6	75.5	9.9	-86.9
자동차세 ²⁾	1,547.1	1,438.3	1,723.4	2,101.3	2,003.3	1,787.0	-10.8
관세 및 소비세	1,882.7	1,994.8	1,943.3	2,033.6	2,082.5	2,079.7	-0.1
주류	339.0	379.0	375.2	430.7	408.2	424.5	4.0
담배	716.3	711.6	687.1	724.9	791.6	896.5	13.3
석유류	377.2	383.1	368.1	382.6	384.6	411.2	6.9
자동차	447.7	518.4	510.3	492.6	494.5	343.8	-30.5
기타	2.5	2.7	2.6	2.8	3.6	3.6	0.0
오락관련세	1,521.9	1,530.9	1,548.3	1,665.0	1,776.6	1,726.2	-2.8
도박세	1,260.3	1,255.2	1,261.9	1,342.5	1,430.9	1,392.1	-2.7
민간복권세	261.6	275.6	286.4	322.5	345.8	334.1	-3.4
인지세	897.6	812.8	1,311.7	4,077.9	1,837.8	1,989.1	8.2
GST	3,297.4	3,814.9	3,960.1	5,612.3	6,632.1	6,632.5	0.0
기타 ³⁾	1,194.5	1,135.6	1,231.8	1,729.1	1,736.0	2,170.0	25.0
수수료 및 부과금	3,509.0	2,567.1	2,120.2	3,231.8	3,726.2	2,423.0	
기타수입	138.1	348.3	233.9	222.8	131.9	176.8	

주: 1) 2008년 2월 15일 이후 사망부터 유산세는 폐지되었음.

2) 자동차세는 registration fees, road tax, special tax on heavy-oil engines, passenger vehicle seating fees, non-motor vehicle licences로 구성됨.

3) Planning Act §35에 의한 Development Charge는 2009년 4월부터 수수료 및 부과금에서 기타로 분류기준이 변경되었음.

자료: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2010.

소득세의 경우 전체적으로 9% 하락했지만 개인소득세는 오히려 전년 대비 16.5%의 증가를 보이고 있어 특이할 만하다. 또한 재산세 중 부동산세 세수가 크게 하락한 것 역시 금융위기로 인한 자산가치 하락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목별 세수 비중을 보면, 소득세가 47.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18.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GST이다. 재산세, 소비세, 인지세는 각각 5.7%, 5.9%, 5.6%를 차지하고 있고 각각의 세수 비중이 유사한 수준이다.

유산세의 경우 2008년 2월 15일자로 폐지되었으며, 폐지 이전에도 세수 비중은 극히 낮은 0.3~0.4% 수준이었다. 도박세 중 카지노세는 2010년 3월부터 부과되는 세목으로 표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1-III-2〉 세목별 세수 비중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세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소득세	45.0	50.2	52.0	45.5	49.5	47.9
법인세	44.5	44.5	28.9	25.2	27.0	27.0
개인세			16.1	15.3	16.8	20.8
재산세	9.4	7.2	7.1	6.7	7.7	5.7
부동산세	7.4	6.9	6.8	6.3	7.5	5.7
유산세	2.0	0.3	0.3	0.4	0.2	0.0
자동차세	6.8	5.7	6.0	5.8	5.3	5.1
관세 및 소비세	8.3	7.9	6.8	5.6	5.6	5.9
주류	1.5	1.5	1.3	1.2	1.1	1.2
담배	3.2	2.8	2.4	2.0	2.1	2.5
석유류	1.7	1.5	1.3	1.1	1.0	1.2
자동차	2.0	2.1	1.8	1.4	1.3	1.0
기타	0.0	0.0	0.0	0.0	0.0	0.0
오락관련세	6.7	6.1	5.4	4.6	4.7	4.9
도박세	5.6	5.0	4.4	3.7	3.8	3.9
민간복권세	1.2	1.1	1.0	0.9	0.9	0.9
인지세	4.0	3.2	4.6	11.3	4.9	5.6
GST	14.5	15.1	13.8	15.6	17.7	18.8
기타	5.3	4.5	4.3	4.8	4.6	6.2

자료: *Yearbook of Statistics Singapore*, 2010.

IV. 최근의 재정정책 및 조세정책 방향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경제에 큰 악영향을 주었고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를 급격히 떨어뜨렸다. 수출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싱가포르 경제 역시 글로벌 위기의 영향을 피할 수 없었다.

2009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세계경제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었고 싱가포르의 경제 역시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에 있었다. 강력하고 시기적절한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가계와 기업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기업과 소비자의 신뢰를 복돋우는 정책이 필요했다. 이에 정부는 'Resilience Package' 라고 하는 경기부양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지속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을 위한 Jobs Credit Scheme과 Skills Program for Upgrading and Resilience 같은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날 신용부족 상태를 염려하여 소득세 환급과 같은 정책을 통해 가계에 보탬이 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수단들은 즉각적으로 실시되었고 경제에 즉시 영향이 미치도록 계획되었다. Resilience Package에 소요된 예산은 GDP의 3.3%에 상당하는 금액이었고 이는 2009년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구체적인 세제개편으로는, 법인세 분야에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법인세율을 18%에서 17%로 인하하였고 투자 촉진을 위하여 사업용 기계장치의 초년도 상각을 75%까지 허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업에 필요한 리노베이션 비용의 경우 과거 3년에 걸쳐 손금산입하던 것에서 당해연도에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개인 소득세 분야에서는, 금융위기로 인해 일자리가 많이 축소된 것을 감안하여, 2008년과 2009년에 실업상태에 놓인 납세자들에게 소득세액의 최고 24개월 분납을 허용하였다. 또한 2009년 과세연도에 소득세의 20%까지(상한액 2,000싱가포르달러) 환급을 허용하여 가계에 실질적 보탬이 되도록 하였다. 조세지원 정책으로, 경기침체에 일

자리를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제도로 jobs credit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1년간 실시하는 임시조치로 고용주가 각 근로자의 월급여 중 2,500싱가포르달러 중 12%에 상당하는 현금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창업기업에 대한 과세면제 범위를 확대하였다.

2010년 예산안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기술향상 및 높은 임금을 통한 선진 경제로의 도약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술 및 혁신, 경제재건을 실천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싱가포르 전 국민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세계개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향후 10년에 걸친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목표는 향후 10년 동안 연간 2~3%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기술 및 생산성 향상만이 높은 임금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저소득층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될 경우 10년 안에 1/3의 실질소득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래를 위하여 주요 세 가지 분야에의 투자를 강조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돕기 위하여 향후 5년에 걸쳐 55억싱가포르달러의 지출을 할 계획이다. 두 번째, 싱가포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상업화할 수 있는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모든 국민이 성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지출이다. 즉, 모든 국민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모든 가정이 발전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싱가포르는 저소득에서 출발하여 1980년대에 5%, 1990년대에는 약 3%의 생산성 증가를 달성하였다. 향후, 또 한 번의 생산성 도약을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요구된다. 생산성 향상의 첫 번째 단계는 고부가가치 활동으로 경제의 체제를 개선하고 저효율성에서 탈피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생산성 향상은 개인기업과 법인의 발전에 의한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모든 근로자들의 기술과 창조적인 능력 개발에 의한 것이다.

구체적인 세계개편으로는, 법인세의 경우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확대하였다. 또한 초기투자자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초기투자비용을 최

소 100,000싱가포르달러 이상 투자한 승인된 초기투자자에게는 2차연도 연말에 그때 까지 투자한 금액의 50%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업 관련 조세지원으로, 생산혁신 지원제도(PIC: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를 도입하였다. 이는 기업이 스스로 생산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경우에 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적격한 지출에 대해 연간 250%의 손금산입을 300,000싱가포르달러 한도 내에서 인정하는 제도이다. 또한 제약제품, 석유, 항공우주, 태양전지제조, 석유화학제품, 해양 및 해양공학 등 특정 부분에서 적격한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첫 해에 25% 공제를 허용하고 연간 5%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특정 용도의 토지에 대해 초기의 높은 공제를 허용하는 Land Intensification Allowance를 도입하였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인적공제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상 간략히 소개한 2009년과 2010년의 세계개편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와 가계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정책이 특징적이며, 2010년의 세계개편은 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 및 기술향상을 지원하는 다양한 조세지원 정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제2편 소득세제

I. 개인소득세

1. 개관

가. 과세소득의 범위

과세소득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전 세계소득 과세방식(Worldwide Tax system)과 원천지국 과세방식(Pure Territorial Tax System)이 있다. 전 세계소득 과세방식에 의하면 소득의 원천이 국내인지 국외인지를 불문하고 거주자의 전 세계소득에 대해 과세한다. 반면, 원천지국 과세방식에 의하면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대상으로 한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르는 원천지국 과세방식과 송금주의(Remittance)를 혼합한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즉, 원천지국 과세방식에 따라 국내원천소득(Income Accruing in or Derived from Singapore)에 대해 과세하면서, 송금주의를 가미하여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수취한 소득(Income Received in Singapore from Outside Singapore)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나. 과세기간

Year of Assessment(이하 YA)는 소득세가 계산되고 부과된 연도를 의미한다. 각 YA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된다. 한편, 과세기간(Basis Period)은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과세기간과 동일하게 소득이 얻어진 기간을 의미하는데, 특정 YA에 대한 과세기간은 항상 YA의 직전연도가 된다. 예를 들어, YA 2010에 대한 과세기

간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이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고 그 사업에 대한 회계연도가 매년 12월 31일에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위 과세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회계연도에 의하도록 한다.

2. 납세의무자

자연인(개인)은 소득세의 납세의무자이다. 또한 파트너십은 별도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파트너 개인이 파트너십 소득에 대한 해당 지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유한책임파트너십(Limited Liability Partnership)은 법인이지만, 소득세법상 파트너십으로 간주된다. 자연인은 거주성(Residence) 여부에 따라 세율, 비과세소득, 인적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같은 항목에 대해 세무상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

가. 거주자

소득세법 §2에서는 거주자(Individual Resident)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즉, 거주자는 임시적 부재(Temporary Absences)를 제외하고 직전 YA에 싱가포르에 거주(Reside)한 자뿐만 아니라 직전 YA에 183일 이상 싱가포르에 체류(Physically Present)하거나 183일 이상 근로를 제공(회사의 이사로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 자를 포함한다. 따라서 거주 여부를 판단하는 질적 기준(Qualitative Test)과 체류기간, 근무장소, 근무기간을 판단하는 양적 기준(Quantitative Test)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게 되면 거주자에 해당하게 된다.

1) 질적 기준

거주(Reside)의 의미는 법률에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의미에 의한다. 즉, 거주(Reside)의 의미는 영구적으로 또는 상당기간 사는 것, 정착된 또는 일상적인 거주지를 가지는 것, 특정한 장소에 사는 것이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성은 국내에 가족이 있는지, 국내에 그가 이용 가능한 숙소가 있는지, 싱가포르 국민이거나 임시 목적으로 해외에

있는지, 국내 또는 국외에 고정 거주지를 보유하는지, 국내 방문 빈도, 규칙성, 기간과 목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임시적 부재(Temporary Absences)는 반드시 단기간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의 부재도 국외에 머무르게 된 목적에 따라 ‘임시’ 여부를 판단한다. 싱가포르 시민(Citizen)인 학생이 3, 4년 동안 계속 유학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지 않는다. 물론 국내 부재의 기간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판례⁸⁾에서는 10년간 국내에 부재한 경우는 임시적 부재로 간주하기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국내 부재가 오직 임시적 목적 때문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2) 양적 기준

양적 기준은 질적 기준에 따라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 개인에 대해 적용된다. 예를 들어, 8월 1일부터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국내에 체류한 개인은 각 연도의 체류기간이 183일 이하이므로 모든 연도에 대해 거주자로 보지 않는다. 법률에 의하면 개인의 거주성 판단을 역년(Calendar Year)에 기초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동일한 시간을 보내면서 근무하더라도 근무개시일에 따라 세무결과가 달라진다. 이러한 불평등한 세무결과를 제거하기 위해 국세청은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 행정상 특례(Administrative Concessions)를 적용하고 있다.

2개 연도 행정상 특례는 2007년 1월 1일 이후에 싱가포르에 입국하여 2개 역년에 걸쳐 183일 이상 국내에 계속적으로 체류 또는 근무한 개인에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2개의 YA 모두 거주자로 간주된다.

3개 연도 행정상 특례는 2007년 1월 1일 이전에 싱가포르에 입국하여 최소한 연속 3개 연도에 걸쳐 국내에 체류한 개인에 적용된다. 이러한 경우 첫 번째 YA부터 거주자로 인정된다. 따라서 연속 3개 연도 동안 국내에 체류하거나 근무한 개인은 체류나 근무기간이 첫 번째 그리고(또는) 세 번째 연도에 183일 이하이더라도 3개 연도 모두 거주자로 인정된다⁹⁾.

8) Federal Commissioner of Taxation v Applegate 79 ATC 4307

9) IRAS Circular 2008/IT/4 “Not Ordinarily Resident Scheme”, July 2008.

나.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모든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반면,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수취한 국외원천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다(소득세법 § 13(7A)(a)). 비거주자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국제조세편에서 다루기로 한다.

3. 과세소득의 유형

가. 개요

싱가포르는 수익 성격의 수령액과 같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 수익적 수령액(Revenue Receipt)과 자본적 수령액(Capital Receipt)의 구별은 쉬운 작업이 아니지만¹⁰⁾, 수익적 성격의 수령액은 소득세법 §10(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한편, 동 조항은 소득의 유형을 사업소득, 근로소득, 투자소득, 연금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의 6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나. 사업소득

소득세법 §10(1)(a)는 과세소득의 한 유형으로 판매(Trade), 사업(Business), 전문직(Profession), 천직(Vocation)에서 발생한 이익 또는 수익을 규정하고 있다. 판매 및 사업, 전문직, 천직의 개념은 과세상 차이로 인해 구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0) 수익적 수령액과 자본적 수령액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에 의해 설명되고 있다. 첫 번째 '나무와 과일의 비유' 이다. 즉, 자본은 나무에 비유되고 나무에 열리는 과일이 소득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임대한 주택은 나무이고 그로 인한 임대소득은 과일에 비유되며, 예금한 원금은 나무이고 이자소득은 과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임대한 주택과 예금한 원금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임대소득과 이자소득만 과세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고정자본(Fixed Capital)과 유동자본(Circulating Capital) 이론이다.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사업에 유보된 자산은 고정자본을 구성하는 반면, 일상적인 거래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하거나 매각물품의 제조에 이용된 자산은 유동자본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 때 유동자본에 관한 수령액만이 소득으로 과세된다.

즉, 천직을 수행하는 자는 자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데,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Act의 인센티브는 판매 및 사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에서는 판매, 사업, 전문직, 천직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판례법에서 그 의미에 대해 일부 밝히고 있다.

판매(Trade)의 해당 여부는 ① 실행대상, ② 보유기간, ③ 동일인과의 유사거래량 또는 빈도, ④ 실현된 재산에 대한 또는 관련된 가공, ⑤ 실현의 원인이 된 상황, ⑥ 의도를 모두 고려하게 된다¹¹⁾. 첫째, 거래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제조품과 같은 재산뿐만 아니라 지분권을 포함한다. 개인 수집 용도의 물품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단 하나의 거래로 백만 개의 화장실 롤휴지를 사서 팔아 얻은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본 사례가 있다. 둘째, 재산의 보유기간이 길수록 판매로 볼 가능성이 적다. 셋째, 동일한 종류의 거래를 반복하게 되면 판매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자산의 가치나 시장성을 증대시키도록 가공하거나 구매자를 찾거나 구매자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도록 특별한 노력을 한 경우, 그러한 자산의 매각은 판매 목적의 거래일 수 있다. 다섯째, 긴급한 자금의 수요 또는 채권자의 추심압박에 따른 자산의 매각은 판매일 가능성이 적다. 재판매 목적으로 자산을 취득하려는 의도의 존재는 판매의 또 다른 요소이다.

사업(Business)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수익창출활동, 활동의 반복성과 규칙성, 조직적인 구조, 장부와 기록의 보관, 운영규모와 자본금액을 들 수 있다. 한편, 전문직(Profession)은 전적으로 전문적인 기술이나 전문가에 의해 통제되는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는 직업을 포함한다. 그러나 전문직(Profession)은 전문기술의 사용을 요하는 근로관계와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병원에 고용된 의사의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천직(Vocation)은 일생 동안 계속 영위한 수단을 의미하는 천직(Calling)과 유사한 개념이다¹²⁾.

다. 근로소득

소득세법 §10(1)(b)는 과세소득의 한 유형으로 근로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11) CCH, 앞의 책, pp. 42~44

12) CCH, 앞의 책, pp. 44~46

§10(2)에서 근로소득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다. 즉, ① 근로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부여된 급여(Wages and Salary), 휴가급여(Leave Pay), 보수(Fee), 수수료(Commission), 상여금, 팁, 특전(Perquisite) 또는 수당(Allowance) ② 고용주가 제공하거나 지급한 식료품, 의류, 숙소(Lodging)에 대한 가치 ③ 고용주가 제공한 거주지(Place of Residence)의 연간가치(Annual Value) ④ 근로자가 퇴직 시 수급자격이 있는 공적연금, 공제기금, 단체에 대한 고용주 부담분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한편, 동법 §10(6)은 근로를 원인으로 받은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함을 규정하고 있다.

1) 급여, 휴가급여, 보수, 상여금, 특전 또는 수당

대부분의 근로소득은 급여로 구성된다. 휴가급여(Leave Pay)는 휴가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한다. 한편, 보수(Fee)의 일반적인 예는 이사의 보수이다. 국내 법인이 이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역할이 국내에서 수행된 것이므로, 이사의 보수는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된다. 그러나 국외 법인이 이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에서 이사회에 참석한 부분에 해당하는 이사의 보수에 대해 국내원천 근로소득으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사가 국내에서 이사회 활동을 수행했다라도 국내에 실체(Presence)가 없는 국외 법인이 지급한 보수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¹³⁾.

상여금은 계약상 상여금인지 또는 계약에 없는 상여금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시기가 달라진다. 계약상 상여금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계약상 상여금은 서비스를 제공한 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반면, 계약에 없는 상여금은 고용주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서비스 제공시기와 상관없이 고용주가 상여금의 지급을 발표한 연도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13) IRAS e-Tax Guide 2004/IT/2 “Clarification on the Tax Treatment of Director’s Fees Derived by Non-Resident Directors of Companies that No Presence in Singapore”, March 2004

특전(Perquisite)란 용어는 근로자의 주머니에 들어가서 혜택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금일 수도 있고 이와 유사한 것일 수도 있다. 따라서 개인적인 비용에 대한 보상은 근로자에 대해 특전으로 과세될 수 있지만, 근로 제공과정에서 소요된 필수적인 비용에 대한 보상은 특전이 아니라 단지 고용주의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이를 상환 받은 것에 불과하다. 보통의 특전에는 ① 보험료 ② 학자금 ③ 의료혜택 ④ 할인구매 ⑤ 증여와 자발적 지급 ⑥ 고용주가 대납한 소득세 ⑦ 클럽 멤버십 ⑧ 자동차혜택 ⑨ Leave Passages ⑩ 무이자 대출 또는 이자보조 대출의 제공이 포함된다.

수당(Allowance)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정기적인 현금 지급분으로 지출내역을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수당은 최저생활, 이동, 운송 또는 접대 목적이면서 소득세법상 공제가 금지되지 않는 목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비과세된다. 예를 들어, 영업사원이 500싱가포르달러의 접대수당을 받아 고객을 접대하는 데에 400싱가포르달러를 지출한 경우 잔액 100싱가포르달러는 영업사원에게 과세된다. 그러나 근로자가 400싱가포르달러를 먼저 지출하고 고용주가 지출금액 만큼 상환한 경우 그 상환액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과세되지 않는다.

2) 식료품, 의류, 숙소(Lodging), 거주지(Place of residence)의 가치

국세청의 행정상 특례(Administrative Concessions)에 의하면,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무상급식 또는 식대보조는 비과세된다. 그러나 특정 근로자들을 위한 식대상환(Meal Reimbursement)과 식사쿠폰은 과세된다. 고용주가 제공하거나 지급한 의류는 과세대상이다. 실무적으로 국세청은 특정 산업의 근로자가 착용하는 보호의류나 고용주의 이미지를 구분하거나 보여주기 위해 근로자가 착용하는 유니폼은 과세하지 않는다. 한편, 숙소(Lodging)는 거주지(Place of Residence)와 달리 임시적으로 머무르는 장소를 의미하며, 거주수당(Lodging Allowance)은 전액 과세된다. 고용주가 근로자 및 그의 가족에게 제공하는 호텔 이용의 가치는 연령에 따른 기준액에 기본 급여의 2%를 합산하여 산출한다¹⁴⁾.

14)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1758#hotel>

- 어른 및 20세 이상 자녀 1인당 월 250싱가포르달러
- 8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0싱가포르달러
- 3세 이상 7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50싱가포르달러
- 3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5싱가포르달러

3) 공적 연금 및 공제기금에 대한 고용주 부담분

공적연금(Pension) 및 공제기금(Provident Fund)은 ① 중앙공제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 ② 승인된 지정 공적연금 또는 공제기금(Approved Designated Pension or Provident Fund; ADPPF) ③ 승인된 비지정 공적연금 또는 공제기금(Approved Non-designated Pension or Provident Fund) ④ 비승인 공적연금 또는 공제기금(Non-approved Pension or Provident Fund) ⑤ 국외 공적연금 또는 공제기금(Overseas Pension or Provident Fund)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① 중앙공제기금(CPF)과 ② 승인된 지정 공적연금 또는 공제기금(ADPPF)의 근로자 계정에 대한 고용주 부담분은 동일하게 과세된다. 이 때, 고용주의 법정부담분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만, 법정부담분을 초과한 고용주의 부담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둘째, 중앙공제기금(CPF)과 승인된 지정 공적연금 또는 공제기금(ADPPF)를 제외한 모든 공적연금 또는 공제기금의 개인 계정에 나타난 금액은 퇴직 시 수급자격이 부여된 날이나 퇴직 전 일부 금액을 인출한 날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 이전에는 근로자 계정에 대한 고용주의 부담분을 근로소득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퇴직 시 개인은 규정에 따라 인출 여부를 선택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인출된 금액만이 인출시점에 개인에 발생한 소득으로 간주한다.

셋째, ⑤ 국외 공적연금 또는 공제기금의 근로자 계정에 대한 고용주 부담분은 납입한 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다만, 실무적으로 승인된 의무적인 국외 공적연금 펀드(Approved Mandatory Overseas Pensions Fund)나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cheme)에 대한 고용주 부담분은 고용주가 부담분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과세되지 않는다.

4) 주식매입선택권(Stock option)

근로제공 과정에서 법인의 근로자는 Employee Stock Option(ESOP)과 Employee Share Ownership(ESOW) 제도의 다른 형태에 의해 당해 법인이나 모회사의 지분 또는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ESOP와 ESOW에 대한 과세는 2003년 이전에 부여된 경우와 2003년 이후에 부여된 경우를 나누어 다르게 취급한다.

〈표 2-1-1〉 ESOP와 ESOW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과세 여부

	국내 근로제공	국외 근로제공
2003년 1월 1일 이전에 ESOP/ESOW를 부여받은 경우	부여받은 자가 국내에 체류하거나 국내에서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ESOP/ESOW를 행사투자한 경우에 과세	좌동
2003년 1월 1일 이후에 ESOP/ESOW를 부여받은 경우	ESOP/ESOW의 행사투자여부에 관계없이 국내근로와 관련된 이익범위 내에서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받은 자의 국내 체류나 국내 근로관계 유지 여부 또는 ESOP/ESOW의 행사투자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 - 그러나 거주자이면서 2004년 1월 1일 이전에 국내로 송금된 이익은 과세(2004년 1월 1일 이후에 국내로 송금된 이익은 비과세)

자료: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186>

라. 이자·배당소득

소득세법 §10(1)(d)는 과세소득의 한 유형으로 배당소득, 이자소득, 증권의 할인액을 규정하고 있다.

1) 배당소득

배당소득은 법인의 수익에 대한 지분으로서 법인이 주주들에게 지급한 현금 또는 이와 유사한 등가물이며 자본의 환급을 제외한다. 청산인이 주주에게 지급한 잔여재산의

분배금도 배당소득이 아니라 자본의 환급에 해당한다. 또한 법인이 주주들에게 무상주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의 유보금을 자본화하여 주주들의 지분율에 변화가 없다면 지급된 무상주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¹⁵⁾. 거주자가 수취한 배당금은 국내의 원천 여부를 불문하고 비과세된다. 배당소득의 원천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이 국내 법인인지 국외 법인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국내원천 배당금에 대해서는 2003년 1월 1일부터 1단계 법인과세 방식(One-tier Corporate Tax System)이 도입되어 5년의 전환기를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하고 있다. 1단계 법인과세 방식에 의하면 배당금을 지급하는 국내법인 단계에서만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배당금을 수취한 주주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게 된다. 한편, 국외 법인이 지급하는 국외원천 배당금은 1단계 법인과세 방식과 상관없이 비과세되지만, 거주자가 국내 파트너십을 통해 국외원천 배당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과세된다.

2) 이자소득

이자소득의 개념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판례상 ‘금전의 사용에 대한 시간당 대가(Payment by time for the use of money)’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실무상 이자소득의 원천 여부를 판단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싱가포르 소득세법은 1970년대부터 간주원천규정¹⁶⁾(Deemed Source Rule)을 두고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다. 승인된 은행¹⁷⁾(Approved Bank)이나 인가받은 금융회사¹⁸⁾(Licensed Finance Company)에 예치한 예금이자 2005년 1월 1일부터 비과세된다¹⁹⁾. 따라서 비승인된 은행이나 인가받지 않은 금융회사에의 예금, 전당포,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또한 채무증권의 이자도 국내에서 파트너십을 통해 얻은 경우 또는 채무증권의 거래에서

15) CCH, 앞의 책, p. 106

16) 소득세법 §12(6), (6A)

17) 승인된 은행은 2010년 5월 현재 166개이다. 구체적인 목록은 다음 홈페이지에서 Commercial Banks, Merchant Banks에 열거되어 있다(http://www.mas.gov.sg/fi_directory/index.html).

18)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2010년 5월 현재 3개이다. 구체적인 목록은 다음 홈페이지에서 Finance Companies에 열거되어 있다(http://www.mas.gov.sg/fi_directory/index.html).

19) <http://iras.gov.sg/irasHome/page04.aspx?id=156>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한편, 이자소득은 실제 이자의 수취일이 아닌 이자를 수취 받을 자격이 부여된 날에 발생(Accrual)한 것으로 본다.

마. 연금소득

소득세법 §10(1)(e)는 과세소득의 한 유형으로 공적연금(Pension), Charge, 사적연금(Annuity)을 규정하고 있다. 공적연금은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급부로서 지급주기는 월, 분기, 년으로 나누어지며, 일시급으로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²⁰⁾. 개인별로 자산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공적연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반면, 근로자 집단별로 자산을 운용하는 확정급부형 공적연금은 연금소득에 포함된다.

Charge는 지급의무자의 소득에 대해 법적인 수단에 의해 담보된 지급금을 의미한다²¹⁾. 법원의 명령이나 별거증서(Deed of Separation)에 따라 지급받는 이혼수당(Alimony)이나 생활비는 Charge에 해당하여 과세된다. 그러나 유지명령이나 별거증서에 따라 아동이 지급받는 생활비와 Maintenance of Parents Act에 의한 유지명령에 따라 부모가 지급받는 생활비는 과세되지 않는다(소득세법 §10(13)).

사적연금(Annuity)은 매년 반복되어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보험계약, 증여나 유산, 자산매각이나 권리포기에 대한 대가로서 부여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의 환급에 대해 매년 반복되어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적연금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재산이나 사업의 양도금액을 10년간 고정급으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한편, Supplementary Retirement Scheme²²⁾에 의한 사적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²³⁾.

바. 재산소득

소득세법 §10(1)(f)는 과세소득의 한 유형으로 월세(Rent), 로열티, 보증금

20) CCH, 앞의 책, p. 97

21) CCH, 앞의 책, p. 118

22) 중앙공제기금(CPF)를 보조하는 자발적 추가 연금 제도이다.

23) CCH, 앞의 책, p. 119

(Premium)과 그 밖에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월세는 부동산이나 동산의 사용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반면, 보증금(Premium)은 임대 실행 또는 임대계약에 대한 동의를 위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로서 보통 일시불로 지급된다. 보통법(Common Law)에서 보증금은 일시불을 의미하지만, 일부 보증금은 실질적으로는 월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²⁴⁾. 임대소득은 월세를 실제 수령한 시점이 아닌 월세를 지급해야 할 시점에 과세된다.

한편, 로열티의 일반적인 의미는 특허권,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의 사용대가로 단위기준(Unit Basis)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재산권으로 분류하기엔 부족하지만, 비밀 절차와 노하우와 같이 비밀 정보로 보호되는 지적인 지식의 사용에 대한 대가도 로열티로 볼 수 있다. 나아가 로열티는 지적재산권의 양도에 대한 정기적인 지급을 말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한다²⁵⁾.

YA 2009까지 주택의 순연간가치(Net Annual Value)에 대해 ‘그 밖에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하던 것이 2009년말 세법개정으로 폐지되어 YA 2010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 기타소득

소득세법 §10(1)(g)는 앞에서 제시한 5가지의 소득 유형에 포함되지 않지만 ‘소득의 성격을 가진 모든 이익이나 수익(Any gains or profits of an income nature)’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사업을 수행할 의도 없이 단 하나의 판매행위에서 발생한 소득에 적용될 수 있고,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자에게 매각물건을 소개하는 자가 부동산 중개인으로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중개업무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를 포함한다²⁶⁾.

2004년 4월 30일에 발표한 소득세 심판위원회(Income Tax Board of Review)에서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소득세법 §10(1)(g)

24) CCH, 앞의 책, p. 126

25) CCH, 앞의 책, p. 122

26) CCH, 앞의 책, p. 127

의 문리적 해석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국세청은 사업의 일상적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활동이나 사건이 아닌 거래에서 창출된 수익에 소득세법 §10(1)(g)가 적용될 수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한편,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이나 수단은 외관상으로 특정되거나 정확하게 결정될 필요는 없다²⁷⁾. 그러나 4D 도박, 토토복권, 축구, Singapore Sweep, 경마, 슬롯머신 등 도박에서 발생한 상금은 우발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소득의 성격을 지니지 않아서 비과세된다²⁸⁾.

4. 비과세소득

가. 개요

싱가포르의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Exempt Income)은 소득세법 §13~13X에 규정되어 있다.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을 중심으로 비과세소득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관계에서 근로자가 받는 모든 혜택은 비과세소득이나 행정상 특례로 규정하지 않는 이상 과세대상이다. 이러한 혜택에는 현금이나 현물 모두를 포함한다. 현물혜택(Benefits-in-kind)이 국세청이 발표하는 ‘행정상 특례의 적용을 받거나 비과세인 현물혜택 목록(List of Benefits-in-kind Granted Administrative Concession or Exempt from Income Tax)’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고용주는 그러한 현물혜택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선택적 복지제도(Flexible Benefits Scheme)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지출항목이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따라 지출액에 대한 상환금에 대해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27) CCH, 앞의 책, p. 128

28)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164>

〈표 2-1-2〉 행정상 특례가 부여되거나 비과세인 현물혜택 목록

혜택의 유형	세부내역	
직원 간의 친선도모 또는 동지에 육성하기 위한 혜택	후원받은 단체여행	머그잔이나 티셔츠 같은 단체선물
	가족의 날 행사	무상급식 또는 식대보조 ¹⁾
	단체회식	무상통근수단 ¹⁾
	사회체육시설의 제공	국내관광지 단체입장 ²⁾
근로자의 건강과 관련된 혜택/특전 ³⁾	외래치료	치과치료
	입원치료	
창조성과 혁신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혜택/특전	직원 제안	
	QAC/WITS award	
기술의 업그레이드와 지식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혜택/특전 ⁴⁾	수강료 보조	장학금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비	응시료
증여(현금성/비현금성)	생일, 결혼, 출산, 사망과 같은 특별한 경우	
	구정, 이슬람 최대명절(Hari Raya), 힌두교축제(Deepavali), 크리스마스와 같은 축제기간	
허가받은 보육시설에 자녀를 위탁한 근로자에 대한 자녀양육보조		
사망위로금, 장애자지원금, 재해보상		
고용주가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여 근로자 일부가 민간클럽에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 전문·사교·오락 클럽 입장료		
근로자의 업무상 사용을 위해 법인이 지급한 클럽 가입비		
보험금	고용주가 수익자인 경우	단체의료보험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무이자 또는 이자보조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혜택	주택 대출	수리비 대출
	자동차 대출	생활비 대출
	컴퓨터 대출	
업무상 목적으로 고용주가 제공한	노트북, 초소형컴퓨터(Palmtop), 핸드폰	
포상금	퇴직포상(비현금)	우수서비스상(현금/비현금)
	장기근속상(비현금)	시험합격상금(현금/비현금)
	Zero 또는 low MC award(현금/비현금)	
직원 유니폼		
야식수당 및 야식비 상환		
출퇴근 관련 지급금	업무상 용도로 회의참석 또는 고객방문에 소요된 교통비지급	
	야간교통비(수당 및 상환)	
	국외출장 관련 자택과 공항 간 이동에 소요된 교통비	
	업무상 용도로 자택과 사업상 회의장소 간 이동에 소요된 교통비	
자택과 업무장소 간 이동에 버스 등을 대절할 경우 소요되는 주차비, 주유비 지급을 포함한 개인적 혜택 고용주 및 관련단체가 제공하는 직원할인(직원의 가족, 친척, 친구에 적용되는 할인을 포함)		

주: 1) 2004년 1월 1일 이후 제공분부터 적용

2) 2008 신고부터 적용

3) 근로자본인, 배우자, 자녀의 의료비지출에만 적용되며, 모든 직원에 적용되어야 함

4) 고용주가 제공한 훈련의 일부이고 모든 직원에 적용되는 경우에 비과세

자료: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1818>

〈표 2-1-3〉 근로자 보상의 유형별 과세여부

근로자 보상의 유형		과세 여부	
숙박제공	종업원에게 제공되는 숙박	과세	
	이사에게 제공되는 숙박		
	가구, 반고정세간 등 관련 혜택		
	아파트 제공		
	호텔(고용주가 방을 예약하거나 근로자가 먼저 호텔이용료를 납부한 후 고용주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경우)		
	주거수당		
	근로자가 임대계약에 서명하지만 고용주가 임대인에게 월세 납부를 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항공권	귀국휴가 항공권	근로자의 상태에 따라 다름	
	귀국휴가 항공권 대신의 현금지급분	과세	
	사업목적	비과세	
	국내에서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될 때 출국하는데 제공되는 항공권	근로자가 국내에 처음 임용된 경우 비과세	
포상금	내부 또는 외부 시험 합격에 대한 상금(현금/비현금)	과세 (YA 2008부터 혜택의 가치가 SGD 2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에 대해 과세)	
	학비보조금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상금이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적격근로자에게만 제공되는 경우	비과세
		특정근로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보상	과세
	혁신/개선	비과세	
	장기서비스/퇴직	현금보상/상품권	과세
		비현금보상	SGD 1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YA 2008부터 혜택의 가치가 SGD 2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에 대해 과세)
	우수서비스상(현금/비현금)	과세 (YA 2008부터 혜택의 가치가 SGD 2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에 대해 과세)	
	업무성과에 대한 인정(현금/비현금)	과세	
	직원채용에 친구나 친척을 성공적으로 추천한 데에 대한 지급금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과세	
	Zero/low Medical Leave(현금/비현금)	과세 (YA 2008부터 혜택의 가치가 SGD 2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에 대해 과세)	

자료: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2890>

〈표 2-1-3〉의 계속

근로자 보상의 유형		과세 여부
저녁, 파티 및 가족의 날 관련 혜택	Food, Door Gifts and Lucky Draw Prizes	비과세
	국외에서 개최된 저녁 및 파티	비과세 (국외여행 기간 중 휴일이 포함된 경우 휴일부분은 과세)
대출 관련 혜택	무이자 또는 이자보조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 혜택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직접 대여한 경우 고용주나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고용주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 이사에 제공되는 대출 관련 이자혜택	과세
	원금의 연기	연기된 금액만큼 과세
	양육비 관련 혜택	어린이보육시설에 있는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보조 아동센터에 있는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보조
중앙공제기금(CPF)에 대한 부담분	국내 근로와 관련한 근로자의 부담분	중앙공제기금법에 의한 법정부담분
	국외 근로와 관련하여 2004년 1월 1일 이후부터 납부된 부담분	임의부담분
	이사의 보수에 관련된 부담분	비과세 과세
선물	구정, 이슬람 최대명절, 힌두교축제, 크리스마스 와 같은 축제	비과세 (선물은 실질적인 가치가 없고 모든 직원에 일반적으로 이용될 것, 보통 SGD 200 이하는 실질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생일, 결혼기념일, 출산일과 같은 특별한 경우 (현금/비현금)	비과세
	상중 - 화환, 조의, 상품권 등	비과세
보험금	고용주가 수익자이거나 고용주가 보험계약자이면서 수익자 이름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비과세 (고용주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될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의료보험	과세
	사업상 여행 기간을 담보하는 여행보험	비과세
	산재보험	비과세
	의료보험, 산재보험 외의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수익자인 경우	과세
다양한 일시금 지급	사망위로금/상해 또는 장애보상/재해보상	비과세
	당해연도에 제공된 용역에 대한 사례금	과세
	회사입사를 유도하기 위한 입사지원자에 대한 지급금	과세
	실직에 대한 보상을 위한 감원 지급금	비과세

〈표 2-1-3〉의 계속

근로자 보상의 유형		과세 여부
식대지급 및 제공음식	매월 고정 식대수당	과세
	초과근무시 식대수당 또는 식비상환	비과세
	식료품(무상 또는 보조)	직원 대부분 이용가능시 비과세
	해외여행시 제공되는 식대수당/상환	일일 수당/상환에 해당
의료비 보장	의료비 상환금	근로자 본인, 배우자, 자녀 그 밖의 부양가족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시 비과세 과세
	성별 또는 나이에 기초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의료혜택(예: 40세 이상 근로자의 건강검진)	비과세
	의료보험을 통해 제공하는 의료지원	의료보험의 유형에 따라 다름
	의료상담에서 발생하는 이동비용의 상환	의료지원이 아니라 개인비용에 대한 상환으로 간주되는 경우 과세
다양한 지급금	기술재개발 프로그램에 따라 근무시간 중 또는 후에 훈련과정에 참석한 경우 결근자 급여	과세
	조기 지급되는 조건부 지급금	과세
	인플레이션 보너스(현금/상품권)	과세
	세탁수당	보호복과 같은 특수의류에 대한 세탁이 아닌 이상 과세
	출산휴가혜택	과세
	군인의 보수	과세
	기술개발부담분(Skills Development Levy)	비과세
국외휴일 여행	국외휴일여행	과세 (모든 직원에 혜택이 이용가능할 것)
	휴일보상(Holiday Reimbursement)	과세
초과근무에 대한 지급	초과근무수당	과세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	과세
국외발생비용 및 기타 부대비용에 대한 지급	일일 수당	국세청의 허용비율 초과분은 과세
	발생한 사업상 비용에 대한 일일 상환	비과세
	일일 수당과 상환의 결합	상환 부분은 비과세, 수당 부분은 국세청의 허용비율 초과분 과세
	근로자가 공항으로 자가운전하여 갈 경우 공항에서의 주차료	과세
	여행자보험료	근로자가 사업상 해외에 있는 기간을 보장하는 경우 비과세
	사업목적의 해외여행으로 인해 집과 공항 간에 이동	-2005년 이후에 지급된 상환은 비과세 -실제 여행을 위한 사전여행비용은 2007년부터 비과세
	사업목적의 여행을 위한 방한복 구입 비용	-수당은 비과세하며, 이 부분은 일일 수당에 포함되지 않음 -실발생비용에 근거한 상환은 비과세
사업목적의 여행을 위한 물품 구입비용	상등	

〈표 2-1-3〉의 계속

근로자 보상의 유형		과세 여부	
사회·여가시설	고용주가 소유하는 사회·여가시설	비과세 (YA 2008부터 고용주가 법인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제3자가 제공하는 시설도 비과세 적용, 그러나 고용주가 법인 컨트리클럽 회원이고 모든 직원에게 시설사용을 확대한 경우에는 과세)	
	직원의 별장 임대료에 대한 상환	과세	
	국내 위탁시설에 단체입장	비과세(YA 2008부터)	
직원할인		과세	
공과금	클럽	시설이 사업용·개인용 모두에 이용되는 경우 개인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	
	체육관/헬스클럽/스포츠클럽 개인회원	과세	
	핸드폰/인터넷-전부 또는 부분 상환	핸드폰 또는 인터넷이 업무상 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비과세	
	핸드폰 수당(매월 고정지급)	과세	
	케이블 TV	과세	
대납세금	전문가 단체	과세	
	고용주가 대납한 근로자의 소득세 전부 또는 일부	과세	
실제 세금에 대한 세금 수당 고정액		과세	
훈련비	직원 개발을 위한 수강료, 훈련비 및 응시료 보조, 장학금	고용주가 제공하는 훈련의 일부이고 혜택이 모든 직원에 제공되는 경우 비과세	
	장학금	항공료, 수강료, 교재수당, 방한복 수당, 최저생활 수당 명목으로 제공	비과세
		Study/Scholarship Leave 기간 지급분	과세
	수강료 보조 또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 장학금	과세	
해외훈련		비과세 (해외여행 기간 중 휴일에 대한 부분은 과세)	
교통비	매월 고정 수당	과세	
	공적 의무 이행비용에 대한 상환	비과세	
	개인용 차량의 주행거리에 대한 상환	개인 주행거리에 대해 과세, 일부 여행에 대한 주행거리 상환은 비과세	
	초과근무- 수당 또는 상환	비과세	
	지정장소 및 근무장소 간 셔틀버스 서비스	비과세	
	집과 사무실 간에 택시이용	근로자가 초과근무시 이용한 경우만 비과세	
	집과 공항 간에 이동	2005년 이후 상환은 비과세, 2007년부터 실제 여행을 위한 사전여행수당은 비과세	
	사업목적으로 집과 사업장소 간 이동	상동	
재택근무 근로자의 집과 외부 사업장소 간에 이동	사업목적상 이동에 대한 상환은 비과세		

자료: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2890>

그 밖에 비과세 근로소득은 다음과 같다.

- 2004년 1월 1일 이후 거주자가 받은 국외원천 근로소득(소득세법 §13(7A)(b))
 - 국내 파트너십을 통해 받은 소득 제외
- 외국 국가의 영사관과 영연방(Commonwealth Countries) 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공무원 보수(소득세법 §13(1)(b))
 - 단,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제를 허용한 경우에만 적용
- 싱가포르에 주둔하는 영연방 군인과 싱가포르에서 영연방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영연방기금에서 지급되는 공무원 보수(소득세법 §13(1)(c))
 - 단, 이러한 공무원 보수는 영연방 국가에서 과세되는 경우일 것
- 사망위로금,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한 통합보상(소득세법 §13(1)(i))
- 지역군인에 대해 공공재정에서 지출하는 연간 포상금으로서 장관이 명령에 의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선언한 경우(소득세법 §13(1)(s))
- 싱가포르 국적 선박에 승선하여 실질적으로 국외에서 근로가 제공된 경우의 근로소득(소득세법 §13(1)(w))

다. 비과세 이자·배당소득

1) 비과세 이자소득

승인된 은행²⁹⁾(Approved Bank)이나 인가받은 금융회사³⁰⁾(Licensed Finance Company)에 예치한 예금이자³¹⁾는 2005년 1월 1일부터 비과세된다(소득세법 §13(1)(zd)). 그 외에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의 예는 다음과 같다³¹⁾.

- 2004년 1월 1일 이후 채무증권에서 발생한 개인의 이자 중 사업소득의 성격을 가

29) 승인된 은행은 2010년 5월 현재 166개이다. 구체적인 목록은 다음 홈페이지에서 Commercial Banks, Merchant Banks에 열거되어 있다. http://www.mas.gov.sg/fi_directory/index.html

30)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2010년 5월 현재 3개이다. 구체적인 목록은 다음 홈페이지에서 Finance Companies에 열거되어 있다. http://www.mas.gov.sg/fi_directory/index.html

31) CCH, 앞의 책, pp. 115~117

지지 않는 것(소득세법 §13(1)(ze))

- 국내 파트너십을 통한 이자소득은 제외

- 승인된 Asian Dollar Bonds에서 비거주자가 수취한 이자(소득세법 §13(1)(v))
- 승인된 공적연금, 공제기금 또는 단체(Society)의 이자소득(소득세법 §13(1)(q))
- 1998년 2월 28일부터 2008년 2월 27일까지 발행한 적격채무증권에서 발생한 이자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소득세법 §13(1)(a))
- 싱가포르의 경제·기술 발전을 촉진하거나 강화할 목적으로 이자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장관이 견해를 밝힌 경우(소득세법 §13(4))
- EEIA, Pt VIII에 의해 승인된 차관에서 발생하는 경우
- 200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국내원천 투자소득으로서 증권 발행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인 채무증권의 할인액(소득세법 §13(1)(ze))
- 2004년 2월 27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되고 발행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인 적격채무증권의 할인액(소득세법 §13(1)(aa))

2) 비과세 배당소득

2004년 1월 1일 이후 싱가포르에서 수취한 국외원천 배당소득(파트너십을 통해 수취한 경우 제외), 증권선물법 §286에 따라 2004년 1월 1일 이후에 단위신탁(Unit Trusts) 및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으로부터 수취한 분배금, 1단계 법인과세 방식(One-tier Corporate Tax System)에 따라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1단계 면제 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라. 비과세 연금소득

다음과 같은 연금에서 지급받은 연금이나 연금의 일시금환산(Commutation)은 비과세된다.

- 싱가포르의 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된 공적연금(소득세법 §13(1)(x))
 - 단, 공보 고시에 의해 정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타 공적연금의 경우 1993

- 년 1월 1일 이전에 제공된 근로와 관련하여 거주자가 수취한 연금만 비과세
- 싱가포르의 공적연금 관련 법령에 따라 승인된 공적연금에서 일시금환산 방식으로 받은 금액(소득세법 §13(1)(h))
 - 단, 기타 공적연금의 경우 1993년 1월 1일 이전에 제공된 근로기간의 범위에서 일시금환산 방식으로 받은 금액만 비과세
 - 상해공적연금 또는 장애공적연금(소득세법 §13(1)(k))
 - 미망인공적연금과 고아공적연금(소득세법 §13(1)(l))

5. 각종 공제제도

위에서 살펴본 유형별 과세소득의 합계액으로부터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비용공제, 종합소득공제 등 각종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또한 과세표준의 계산 후에도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과세표준의 계산과정은 '6. 나. 세액의 계산'에 나타나 있다. 다음에서는 공제순서별로 공제항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비용공제 및 기부금공제

총소득(Total income)에서 다음과 같은 비용을 공제하여 과세가능소득(Assessable income)을 산출한다.

1) 사업비용공제

사업소득 창출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공제가능 사업비용(Allowable Business Expenses)'에 대해 사업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을 얻는 데 있어 전적이면서 배타적으로 발생된 비용은 사업소득에 대해 공제할 수 있다.

사업비용공제가 적용되려면 사업과 비용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자본성격 또는 사적 성격의 비용은 공제될 수 없다³²⁾.

2) 근로비용 공제

근로소득 창출과정에서 전적으로(Wholly) 그리고 배타적으로(Exclusively) 발생한 비용은 근로비용(Employment Expenses)으로서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로비용 공제의 요건은 다음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근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일 것
- 고용주에 의해 보상받지 못한 비용일 것
- 자본적 지출이나 개인적인 비용이 아닐 것
- 교통비는 자동차(자가운전)에서 발생한 비용이 아닐 것

고객에 대한 접대비, 대중교통비, 전문가협회 등록비 등이 공제가능한 근로비용에 포함되는 반면, 지인과의 식사에서 발생한 접대비, 자동차(자가운전)에서 발생한 교통비는 근로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

3) 순연간가치(Net Annual Value) 비용공제

보유기간 동안 재산에 대해 전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해당 재산의 연가치(Annual Value)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YA 2009까지 주택의 순연간가치(Net Annual Value)에 대해 ‘그 밖에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하던 것이 2009년 말 세법개정으로 폐지되어 YA 2010부터는 적용되지 않는다.

〈표 2-1-4〉 순연간가치 비용 공제

비용 유형	공제가능	공제불가능
주택대출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비용	대출상환금(월납)
세금	재산세	
보험	화재보험	
수리비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수리	· 가치의 향상을 가져오는 수리 · 고정세간, 반고정세간, 가구의 수리, 대체(예: 에어컨 수리, 가구 교체)
관리비	유지비(예: 페인팅, 해충박멸,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매월 관리비)	수리, 부가, 변경 비용(예: 주차공간 확장, 배수관 설치, 벽과 마루의 접착, 창문 안전망 설치)
감가상각		비품의 감가상각

자료: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1556>

4) 임대비용 공제

임대기간 동안 임대소득 창출과정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임대비용으로서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임대비용 유형별로 공제가능 여부에 대한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2-1-5〉 임대비용 공제

비용 유형	공제가능	공제불가능
주택대출	임대제공재산의 취득시 설정한 신용대출 이나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¹⁾	· 대출상환금(월납) · 지연상환시 부과되는 가산금
세금	재산세	가산세
보험	화재보험	
수리비	원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수리	가치의 향상을 가져오는 수리
관리비	유지비(예: 페인팅, 해충박멸,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매월 관리비)	수리, 부가, 변경 비용(예: 주차공 간 확장, 배수관 설치, 벽과 마루 의 접착, 창문 안전망 설치)
임차인 확보 비용	·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지출하는 중 개인에 대한 수수료, 광고료, 법률 비용 · 임대차 갱신 또는 임차인 변경 비용	최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지출하 는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 광고료, 법률 비용 ²⁾
감독 및 임차 료 징수 비용	· 소득창출 이후에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 에 원칙은 공제불가능 · 예외로서 많은 재산을 임대하고 제3자에 게 이들 재산의 관리와 임차료 징수를 위탁한 경우 Min[총임차료의 5%, 실제 비용]에 대해 공제가능	
감가상각		비품의 감가상각
인터넷 비용 및 공과금	임차인을 위해 지급한 비용 (다음 임차인에게서 보상받지 않는 경우)	임차인을 위해 지급했지만 다음 임 차인에게서 보상받는 비용

주: 1) B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A재산을 담보로 대출한 경우 B재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대출이자도 공제가능

2) 임차인을 둔 임대인이 다른 재산에 대해 최초 임차인을 두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임대소득에 대해 비용 공제가능

자료: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1556>

5) 기부금공제

기부금공제는 적격유형과 적격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의 2배까지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기부금공제가 허용되는 적격유형은 현금 기부, 지분 기부, 컴퓨터 기부, 가공품 기부, 공공미술 세제특례, 토지·건물 기부로 구분된다. 지분 기부에 대한 공제는 개인, 컴퓨터 기부에 대한 공제는 법인에만 적용되며, 나머지 유형에 대한 공제는 개인과 법

인 모두에 적용된다. 2005년 1월 1일 이후 기부금공제가 허용되는 적격기부금은 다음과 같다.

- 공익단체(Institutions of a Public Character; IPC), 공익단체의 시설, 이벤트, 프로그램에 대한 기부
- 다른 승인된 기부 프로그램에 의한 승인된 수익자 기관에 대한 기부
- 공익단체의 홍보자료상 기부자의 이름이나 로고에 의해 공익단체(IPC) 또는 승인된 수익자가 기부를 인식하는 경우에 모든 승인된 기부 프로그램에 의한 기부자가 기본적으로 공익단체의 시설, 이벤트, 프로그램에서 광고하는 경우에는 기부금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해외자선 목적을 위한 기부는 승인된 공익단체(IPC)에 의해 주최된 것이라도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받지 않은 기부금은 최장 5년까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법인인 기부자는 지분율 기준(Shareholding Test)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받지 않은 기부금은 사업손실과 자본공제를 적용한 이후에 공제할 수 있다. 한편, YA 2010, 2011에는 경제회복의 일환으로 국내에 대한 기부를 더욱 장려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기부금의 2.5배에 해당하는 기부금공제를 허용한다.

한편, 2002년 1월 1일 이후로 유산재단(Estate)이 공익단체(IPC)나 싱가포르 정부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유산세(Estate Duty)가 면제된다. 또한 2003년 3월 1일 이후 승인된 공익단체에 대한 부동산 및 지분 기부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나. 자본공제

법인세 파트 5. 자본공제제도에서 다루기로 한다.

다. 사업손실공제³³⁾

자영업자(Sole-Proprietor)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당기 사업손실금을 다른 소득

33) CCH, 앞의 책, pp. 261~262

에서 공제할 수 있다. 파트너십에 발생한 사업손실이 합의된 수익분배비율(Profit Sharing Ratio)에 따라 각 파트너에게 분배된 경우 각 파트너는 그의 다른 소득에 대해 사업손실금을 공제할 수 있다.

현 YA에 모두 공제될 수 없는 당기 사업손실금에 대해 자영업자는 배우자소득에 대한 공제, 소급공제, 이월공제의 세 가지 방식에 따라 공제할 수 있다. 첫째, 당기에 공제하지 못한 사업손실금은 동일한 YA에 배우자의 과세가능소득(Assessable Income)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이전할 수 있다. 둘째, 당기에 공제받지 못한 사업손실금을 직전 YA 1년간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과세가능소득에 대해 소급공제할 수 있다. 셋째, 당기에 공제받지 못한 사업손실금은 장래 YA의 법정소득(Statutory Income)에 대해 무제한으로 이월공제할 수 있다. 다만, 선입선출법(FIFO)에 따라 법정소득이 존재하는 첫 번째 연도부터 공제되어야 하고 납세의무자나 소득세 최고책임자 모두 공제시기를 연기할 수 없다.

파트너가 파트너십에서 탈퇴한 경우 파트너는 공제되지 않은 사업손실금을 장래 YA 동안 그의 법정소득(Statutory Income)에 대해 공제할 수 있다.

라. 종합소득공제

과세가능소득(Assessable Income)에서 다음과 같은 개인별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소득(Taxable income)을 산출한다.

1) 기본공제

기본공제(Earned Income Relief)는 전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의 성격을 갖는다. 공제금액은 55세 미만 1,000싱가포르달러, 55세 이상 60세 미만은 3,000싱가포르달러, 60세 이상은 4,000싱가포르달러이다. 한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영구적이면서 심각하게 근로능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공제액이 55세 미만 2,000싱가포르달러, 55세 이상 60세 미만은 5,000싱가포르달러, 60세 이상은 6,000싱가포르달러이다.

2) 배우자공제

배우자공제(Spouse Relief)는 종전에 가족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아내공제(Wife Relief)에서 확장된 것이다. 즉, YA 2009까지는 남성 신청자에 대해서만 아내공제를 적용했지만, YA 2010부터는 남성·여성을 불문하고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한 모든 신청자에 대해 배우자공제를 적용한다.

- 전년도 연소득(월급, 은행이자·배당금·연금과 같은 비과세소득)이 4,000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지 않고 신청자가 배우자와 함께 살거나 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 또는
- 신청자가 이혼했거나 법적으로 별거중이고 전년도에 이혼한 전부인에게 이혼수당 또는 생활비를 지급한 경우 그리고
- 신청자가 장애배우자공제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누구도 현배우자 또는 전부인에게 어떠한 공제(손자손녀 양육공제 제외)도 신청하지 않을 것

배우자공제액은 일반적인 경우 2,000싱가포르달러이며, 이혼하거나 법적으로 별거 중인 경우에는 2,000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전년도에도 지급한 이혼수당 또는 생활비이다.

한편, 장애자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장애배우자공제(Handicapped Spouse Relief)가 적용되는데, 배우자공제를 신청한 경우이거나 배우자 또는 전배우자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어떠한 공제(손자손녀 양육공제 제외)라도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장애배우자공제액은 일반적인 경우 3,500싱가포르달러이며, 이혼하거나 법적으로 별거 중인 경우에는 3,500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전년도에도 지급한 이혼수당 또는 생활비이다. 장애배우자공제 요건으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현배우자 또는 전배우자를 부양하는 경우이다.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을 것 그리고
- 전년도 소득(법원명령 또는 별거증서에 의해 신청자로부터 지급받은 이혼수당 또는 생활비 제외)이 2,000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단, YA 2010부터 소득요건 삭제

3) 자녀공제

자녀공제에는 적격자녀공제(Qualifying Child Relief), 장애자녀공제(Handicapped Child Relief), 워킹맘자녀공제(Working Mother's Child Relief)의 3종류가 있다. 적격자녀 1인에 대해 적격자녀공제와 장애자녀공제는 하나만 적용할 수 있지만, 워킹맘자녀공제는 모두 중복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적격자녀공제와 장애자녀공제는 모두 배우자와 분할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적격자녀공제에서 적격자녀의 요건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결혼하지 않을 것
- 친자, 의붓자식 또는 법적으로 입양된 자녀
- 16세 이하이거나 대학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할 것
- 전년도 연소득(월급, 군인의 보수, 은행이자·배당금·연금과 같은 비과세소득; 장학금 및 유사지원금은 제외)이 2,000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단, 2010 과세요건부터 소득기준이 2,000싱가포르달러에서 4,000싱가포르달러로 상향조정

한편, 장애자녀공제에서 적격자녀의 요건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결혼하지 않을 것
- 친자, 의붓자식 또는 법적으로 입양된 자녀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을 것
- 전년도 연소득(월급, 군인의 보수, 은행이자·배당금·연금과 같은 비과세소득; 장학금 및 유사지원금은 제외)이 2,000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단, YA 2010부터 소득요건 삭제

YA 2009부터 적격자녀공제는 자녀 1인당 4,000싱가포르달러, 장애자녀공제는 자녀 1인당 5,500싱가포르달러로 상향되었으며, 적격자녀공제는 모든 적격자녀로 확대되었다. 또한 모든 자녀공제의 합산액 한도도 자녀 1인당 50,000싱가포르달러로 상향조정되었다. 자녀공제액을 계산할 때 적격자녀공제 또는 장애자녀공제를 먼저 공제한

후 남은 한도에서 워킹맘자녀공제를 적용한다.

〈표 2- I -6〉 자녀 1인당 공제액

(단위: 싱가포르달러)

	YA 2009부터	
	적격자녀공제	장애자녀공제
첫째부터 셋째까지	4,000	5,500
넷째		
다섯째 이상		
자녀공제 합산액 ¹⁾ 한도	50,000	

주: 1) 적격자녀공제(또는 장애자녀공제)와 워킹맘자녀공제의 합산액을 의미
 자료: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214>

워킹맘자녀공제(Working Mother's Child Relief)는 출산, 육아 및 기혼여성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YA 2005부터 도입되었다. 따라서 독신자나 남성은 이 제도를 신청할 수 없다. 공제요건으로서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한 워킹맘이어야 한다.

- 거주자일 것
- 전년도에 결혼한 상태이거나 이혼 또는 사별한 상태인 경우
- 전년도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이 발생할 것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민권자인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적격자녀공제 또는 장애자녀공제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워킹맘자녀공제액은 다음 〈표 2- I -7〉과 같이 자녀 순서에 따라 워킹맘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합산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된다. YA 2009부터 워킹맘자녀공제는 모든 적격자녀로 확대되었으며,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합산액의 100%까지 공제될 수 있다. 또한 적격자녀공제 또는 장애자녀공제 및 워킹맘자녀공제의 합산액 한도는 자녀 1인당 50,000싱가포르달러이다.

〈표 2-1-7〉 워킹맘자녀공제율

	YA 2009부터
첫째	15%
둘째	20%
셋째	25%
넷째	
다섯째 이상	
자녀공제 합산액 ¹⁾ 한도	자녀 1인당 SGD 50,000

주: 1) 적격자녀공제(또는 장애자녀공제)와 워킹맘자녀공제의 합산액을 의미
 자료: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220>

4) 경로자공제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를 부양한 경우에는 경로자공제(Parent Relief) 또는 장애경로자공제(Handicapped Parent Relief)를 신청할 수 있다. 경로자공제와 장애경로자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피부양자가 전년도에 국내에 거주할 것
- 피부양자가 신청자와 동거할 것, 피부양자가 신청자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부양자를 부양하는 데 2,000싱가포르달러 이상을 지출해야 함
- 피부양자가 55세 이상일 것(단, 피부양자에게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55세 미만도 가능)
- 피부양자의 전년도 소득(월급, 은행이자·배당금·연금과 같은 비과세소득)이 2,000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
 - 단, YA 2010부터 경로자공제의 경우 소득기준이 2,000싱가포르달러에서 4,000싱가포르달러로 상향조정되고 장애경로자공제는 소득요건이 삭제됨
- 경로자공제 및 피부양자에 대해 손자손녀 양육공제를 제외한 다른 공제를 신청한 자가 없을 것

경로자공제는 경로자 2인까지 공제될 수 있고, 공제액은 경로자공제의 경우 경로자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7,000싱가포르달러 또는 11,000싱가포르달러이고, 장애경로자공제의 경우 경로자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11,000싱가포르달러 또는 8,000싱가포르달러이다. 한편, 전년도에 경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표 2-1-8〉 경로자 1인당 공제액

(단위: 싱가포르달러)

	YA 2010부터	
	경로자와 동거	경로자와 비동거
경로자공제	7,000	4,500
장애경로자공제	11,000	8,000

자료: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212>

5) 교육비공제

교육비공제(Course Fees Relief)는 평생 동안의 근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인의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인정되고 있다. 이는 종전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없는 자의 대학교육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 방학 중에 하는 일이나 인턴십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강의를 이수하거나 세미나 및 회의에 참석하고 다음과 같은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교육비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근로 또는 사업(Trade, Business, Professions, Vocation)과 관련 있는 세미나 또는 회의(2003년 1월 1일 이후 참석)
- 교육시점에 근로 또는 사업과 관련이 없지만 경력변경과 관련 있는 강의, 세미나 또는 회의(2003년 1월 1일 이후 완료)
- 승인된 학위 또는 전문자격을 부여하는 강의, 세미나 또는 회의
 - 지금까지 승인된 학위 또는 전문자격에 대한 특정한 리스트는 없음
- YA 2009부터는 승인된 직업자격을 부여하는 강의(2008년 1월 1일 이후 완료), 세

미나 또는 회의(2008년 1월 1일 이후 참석)도 공제가능

- 단, 취득한 기술 또는 지식이 직업 또는 특정 산업분야에 적용되어야 하며, 강의, 세미나 또는 회의를 공급하는 자가 국내에 등록(Accounting &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등록)된 실제일 것

2003년 1월 1일 이후에 지출한 실제 교육비는 강의·세미나·회의 참석횟수에 상관 없이 매년 3,500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공제된다. YA 2011부터 교육비공제 한도는 5,500싱가포르달러로 증가될 것이다. 공제신청항목은 오직 입학금, 등록금, 시험료, 수업료, 적성검사료만을 포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비를 지출한 후 다음 연도에 공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YA 2009 이후부터 과세가능소득(Assessable Income)이 22,000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지 않아 공제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이월될 수 있다. 또한 경력변경과 관련된 교육비는 강의를 이수하거나 세미나나 회의에 참석한 연도부터 2년 내에 경력이 변경된 경우에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6) 보험료공제

가) 중앙공제기금에 대한 법정부담분 등 공제

싱가포르 시민이거나 싱가포르 거주자인 모든 근로자는 중앙공제기금법(CPF Act)에 따라 중앙공제기금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중앙공제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사회보장저축제도이다. 일부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을 위한 저축제도로써 그들만의 공적연금 또는 공제기금을 설정할 수 있고, 이러한 기금 중 일부는 싱가포르 소득세법상 승인³⁴⁾된 기금이다.

거주자인 근로자는 중앙공제기금(CPF)이나 승인된 공적연금·공제기금(ADPPF)에 대한 법정부담분에 대해 전액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반면 비승인 공적연금·공제기금이나 국외 공적연금·공제기금에 대한 부담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중앙공제기

34) 소득세법상 공적연금 또는 공제기금에 대한 승인 여부는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결정한다(소득세법 §5).

금이나 지정 공적연금·공제기금에 추가하여 다른 승인된 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부담분은 공제되지 않는다(소득세법 §39(9)). 또한 승인된 공적연금·공제기금에 대한 법정부담분이 5,000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명보험료에 대한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2006년 이후로 50세 이하 근로자의 중앙공제기금에 대한 법정부담분 최고액은 15,300싱가포르달러이므로, 소득세법상 중앙공제기금 공제최고액도 15,300싱가포르달러가 된다.

나) 중앙공제기금 현금보충공제

중앙공제기금 현금보충공제(CPF Cash Top-up Relief)는 본인 또는 피부양자의 퇴직에 대비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공제기금 현금보충공제는 신청자가 싱가포르 NRIC holder이고 CPF Minimum Sum Topping-Up Scheme에 따라 신청자 계좌에 본인 또는 고용주가 현금보충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신청자의 조부모·부모 또는 배우자/장애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장애형제자매(연소득 2,000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에 대한 현금보충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공제가 인정된다.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은 YA 2011부터 4,000싱가포르달러로 상향조정되고, 장애배우자나 장애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삭제될 예정이다.

공제금액은 7,000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실제 현금보충액을 공제하는데, 본인에 대한 공제와 피부양자의 공제를 합산하여 총 14,000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한다. 단, 자금이체를 통해 본인의 중앙공제기금 계좌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퇴직계좌로 계좌보충한 경우는 공제할 수 없다.

다) 생명보험공제

생명보험공제(Life Insurance Relief)는 본인 또는 아내의 생명보험계약에 지급된 연보험료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생명보험공제가 가능하다.

- 근로자의 중앙공제기금 법정부담분, 자영업자의 의료보험(Medisave) 및 중앙공

제기금 임의부담분 또는 두 가지 모두의 합계액이 5,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일 것

- 본인 또는 아내의 생명보험계약에 보험료를 지급했을 것
- 해당 보험계약이 1973년 8월 10일 이후에 체결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국내에 사무소나 지점을 보유해야 함

기혼여성자는 남편의 생명보험계약 보험료에 대해 공제신청할 수 없고, 자녀가 있는 부모도 자녀의 생명보험계약 보험료에 대해 공제신청할 수 없다. 공제금액은 다음 2가지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중앙공제기금(CPF) 납입금 - 5,000싱가포르달러
- 본인 또는 아내의 보장금액의 7%와 보험료금액 중 적은 금액

라) Supplementary Retirement Scheme Relief

Supplementary Retirement Scheme(SRS)³⁵⁾ Relief는 거주자 본인 또는 고용주의 SRS 실제 부담분을 공제하는 제도이다. 2008년 기준으로 SRS 납입금 공제 상한은 거주자의 경우 11,475싱가포르달러이고, 비거주자는 26,775싱가포르달러이다.

7) 군인공제

군인공제(NSman Relief)는 군인 본인, 군인의 아내, 군인의 부모에 대해 적용된다. 군인 본인은 풀타임 군복무를 완성했을 때 군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은 매년 본인의 운영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한 합숙훈련 및 기타 활동에 소집되는지 여부와 본인이 Key command and staff appointment holder(KAH)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35) SRS는 퇴직을 대비하여 중앙공제기금(CPF) 이외에 개인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한 자발적인 제도로서 상당한 조세혜택이 부여된다. 즉, SRS 납입금은 공제대상이며, 투자수익금도 인출 전에 비과세하고, 인출금의 50%만 퇴직시 과세된다.

〈표 2-1-9〉 군인공제(본인) 금액

(단위: 싱가포르달러)

유형	Non-KAH	KAH
전년도 합숙훈련이 없는 경우	1,500	3,500
전년도 합숙훈련에 참석한 경우	3,000	5,000

자료: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210>

군인의 아내와 부모가 시민이면서 남편 또는 아들이 operationally ready NSmen 인 경우 7,500싱가포르달러의 군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군인의 부모는 군인인 아들이 여러 명이어도 동일한 공제금액이 적용된다. 한편, 사망한 군인의 부모나 재혼하지 않은 미망인도 공제자격이 있다.

8) 기타공제

가) 외국인 가정부 징수요금 공제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가정부를 고용하려면 월급 외에도 정부에 일정 금액의 징수요금(Levy)을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 가정부에 대해 YA 2009 이후에 적용되는 징수요금은 일반적으로 월 265싱가포르달러이고, 특례³⁶⁾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월 170싱가

36)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징수요금은 노동부(Ministry of Manpower)에 고시되어 있다. 특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 A. 고용주 또는 배우자가 12세 이하 싱가포르 시민인 자녀 또는 손자손녀와 동거하는 경우
- B. (i) 고용주 또는 동거하는 배우자가 65세 이상의 싱가포르 시민인 경우 또는
(ii) 고용주 또는 배우자가 싱가포르 시민이고 상대 배우자가 65세 이상 싱가포르 영주권자로서 부부가 주민등록(NRIC)상 같은 주소에 등록되어 거주하는 경우
- C. 고용주 또는 배우자가 65세 이상 싱가포르 시민인 부모,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록되어 거주하는 경우 또는
(ii) 고용주 또는 배우자가 싱가포르 시민으로서 65세 이상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부모, 조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등록되어 거주하는 경우
- D. 2007년 9월 15일부터 외국인 국내근로자에 대한 징수요금 특례는 장애인 고용주 또는 장애인 가족을 둔 고용주가 그들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풀타임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포르달러이다. 외국인 가정부 징수요금 공제(Foreign Maid Levy Relief)는 기혼여성의 고용을 유지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기혼여성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독신이나 남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남편과 동거하는 기혼여성 또는
- 남편이 거주자가 아닌 경우 기혼여성 또는
- 남편과 별거하거나 이혼·사별한 기혼여성으로서 자녀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동거자녀가 있는 경우

외국인 가정부 징수요금 공제는 기혼여성의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Earned Income)에 대해서만 공제할 수 있다. 공제금액은 1명의 외국인 가정부에게 지급한 총비용의 2배를 신청할 수 있는데, YA 2009부터 6,360싱가포르달러 또는 4,080싱가포르달러의 공제한도³⁷⁾가 있다.

나) 조부모 양육공제

조부모 양육공제(Grandparent Caregiver Relief)는 양육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조부모를 인정하고 기혼여성의 육아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 또한 일하는 기혼여성만 공제받을 수 있고 독신이나 남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다.

- 결혼·이혼·사별한 여성근로자일 것, 그리고
- 본인이나 배우자(전배우자 포함)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국내에 거주하고, 12세 이하 시민인 아동을 돌보며, 근로 또는 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것

본인이 동일한 조부모에 대해 경로자공제나 외국인 가정부 비용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조부모 양육공제가 적용되지만, 다른 사람이 조부모 양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조부모 양육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공제금액은 조부모 1인당 3,000싱가포르달러이다.

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37) $6,360 = 265 \times 12\text{개월} \times 2\text{배}$, $4,080 = 170 \times 12\text{개월} \times 2\text{배}$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202>)

다) 장애형제자매 공제

장애형제자매 공제(Handicapped Brother/sister Relief)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 공제할 수 있다. 장애형제자매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연소득이 2,000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지 않을 것, 그리고
 - YA 2010부터 소득기준은 삭제됨
- 동일 세대에 공제신청자와 동거할 것, 그렇지 않은 경우 공제신청자는 장애형제자매를 부양하기 위해 2,000싱가포르달러 이상 지출할 것

공제금액은 1인당 3,500싱가포르달러이며, 다른 사람과 동일한 장애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3,500싱가포르달러를 공유할 수 있다. 한편, 다른 사람이 동일한 형제자매에 대해 어떠한 공제라도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형제자매 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마. 세액공제

1) 부모세액공제

부모세액공제(Parenthood tax rebate; PTR)는 세액공제제도로서 공제액을 배우자와 분할하여 공제받을 수 있고,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이월되어 전액공제될 때까지 차년도 소득세액에서 공제된다.

공제요건으로서 신청자가 결혼한 거주자(이혼·사별한 거주자 포함)이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YA 2009부터 다음과 같은 자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친자(Legitimate Child)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그리고
 - 출생일 또는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시민의 자격을 갖출 것
- 혼외자
 -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으로서 친부모의 결혼 이전에 출생할 것 그리고
 - 자녀가 6세 되기 전에 친부모가 법적으로 결혼할 것 그리고

- 친부모의 결혼일 또는 결혼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시민의 자격을 갖출 것
- 입양자
 - 2008년 1월 1일 이후 또한 자녀가 6세 되기 전에 법적으로 입양할 것 그리고
 - 법적 입양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시민의 자격을 갖출 것

〈표 2-1-10〉 부모세액공제액

(단위: 싱가포르달러)

	YA 2009부터
첫째 자녀	5,000
둘째 자녀	10,000
셋째, 넷째 자녀	20,000
다섯째 자녀 이상	20,000

자료: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1528>

부모세액공제는 친자의 출생일, 입양일, 혼외자의 경우 친부모 혼인일을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제되지 않은 부분은 자동적으로 이월되어 새로운 공제신청을 할 필요 없이 차년도 소득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

2) 일회개인세액공제(One-off personal tax rebate)

YA 2008, 2009에 경제위기로 인해 개인이 받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거주자는 2,000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2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이러한 20% 세액공제는 이중세액공제(DTR)와 다른 공제를 적용하고 부모세액공제(PTR)를 공제하기 전의 세액을 기초로 계산된다. 일회개인세액공제는 별도로 공제신청을 할 필요없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6. 세율 및 세액의 계산

가. 세율

YA 2007부터 거주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표 2-1-11〉 개인소득세 세율

(단위: 싱가포르달러, %)

과세표준	세율
~20,000	0
20,001 ~ 30,000	3.5
30,001 ~ 40,000	5.5
40,001 ~ 80,000	8.5
80,001 ~ 160,000	14.0
160,001 ~ 320,000	17.0
320,001 ~	20.0

자료: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1190>

나. 세액의 계산

소득세액은 과세표준(Chargeable Income)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총소득(Total Income), 법정소득(Statutory Income), 과세가능소득(Assessable Income)의 단계를 거쳐 산출된다. 먼저 총소득은 직전 YA 동안 소득 종류별로 발생한 소득의 합으로서 국내에서 수취한 국외원천소득을 포함하는 반면 비과세소득(Exempt Income)은 제외된다. 둘째, 총소득에서 소득의 종류별로 허용되는 비용(Expense)과 적용 가능한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를 차감한 것이 법정소득이다. 셋째, 과세가능소득(Assessable Income)은 법정소득에서 사업상 발생한 모든 손실과 적격 기부금을 차감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세가능소득에서 법률상 허용되는 각종 공제들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산출된다.

[그림 2-1-1] 소득세 과세표준 계산과정

총소득(Total Income)
- <u>비용(Expenses),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u>
= 법정소득(Statutory Income)
- <u>기부(Donation), 사업손실(Loss) 이월분</u>
= 과세가능소득(Assessable Income)
- <u>종합소득공제(Reliefs), 사업손실 소급분, 자본공제 소급분</u>
= 과세표준(Chargeable Income)

7. 소득세 행정

가. 신고

소득세 최고책임자는 납세자에게 총소득에 대한 신고서와 관련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지서를 발부할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신고서 양식(Return Form)을 발부받으면 납세의무자는 과세 여부에 상관없이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완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은 매년 공보(Government Gazette)에 고시된다. 법인을 제외한 모든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기한은 4월 15일이며,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 신고기한 연장은 3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법인에 대한 소득세 신고는 10월 30일까지이고 신고기한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일 3월 31일까지 신고서 양식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당해 연도에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자는 4월 14일까지 납세대상자임을 소득세 최고책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련 회계연도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추정액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추정과세표준(Estimated Chargeable Income; ECI) 제출대상자는 YA 2008까지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만을 포함했지만, YA 2009부터 개인과 Hindu Joint Families를 제외한 나머지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사업수행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되어 그 대상자가 확대되었다. 제출된 추정과세표준은 합리적인 정확성이 인정되는 경우 추정액대로 과세될 수 있다. 반면, 납세의무자가 추정과세표준을 제출하지 않으면 소득세 최고책임자의 추정에 근거하여 과세하게 된다. 법인은 과세표준이 없어도 추정과세표준을 '0'으로 하여 신고해야 한다.

나. 부과

1) 부과고지서

소득세 최고책임자는 부과권을 가지는데,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제공한 신고서상의 정보에 기초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신고서 양식이 제출되지 않거나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제출된 정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세 최고책임자는 최적판단(Best Judgment)에 따라 부과하게 된다. 부과고지서(Notice of Assessment)는 법정 서식으로서 개인에게 직접, 우편 또는 전자기록 전송에 의해 부과고지서를 송달받을 수 있다. 납세고지서의 종류는 최초 납세고지서, 감액고지서, 증액고지서로 구분된다.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라도 소득세 최고책임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러한 효과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이러한 고지서는 공제받지 않은 손실과 공제액이 있는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한 이의신청에 의해 그에 대한 부과처분을 심사하고 수정해 줄 것을 신청할 때 필요하다.

2) 추계과세

납세의무자가 법률에서 정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허위 또는 미완성 신고서가 제출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있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특정 원천에서 발생한 이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도 추계과세를 할 수 있다. 추계과세를 할 경우에는 과거연도의 부과내역, 과거연도에 신고와 부과에 관련한 업무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태

도, 납세의무자와 관련된 주민들의 인식과 평판,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납세의무자가 얻는 평균 수익률 및 인적 사항, 납세의무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관찰 및 평가를 포함하여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이용 가능한 기타 정보들을 고려하게 된다.

또한 다음과 같은 원칙이 최적판단에 의한 추계과세에 적용된다.

- 먼저 납세의무가 있다는 합리적인 주장이 있어야 함
- 그러한 주장이 성립되면 불가피하게 주관적인 추정에 근거하더라도 부과액은 합리적이고 적법해야 함
- 주관적인 추정은 전년도에 발생한 이득이나 손실, 공제되지 않은 손실과 자본공제, 시장조건 등과 같이 이용가능한 사실과 자료에 근거해야 함

추계과세 시 소득세 최고책임자는 부과고지서에 소득의 원천을 특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신고서와 계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하는 이유나 과세근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발부한 부과고지서는 적법한 것으로 보며, 그러한 부과가 과도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된다.

3) 사전부과

세수손실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부과(Advance Assessment)를 할 수 있다.

- 납세의무자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근무를 종료한 경우
- 납세의무자가 출국할 계획이 있고, 출국으로 인해 국내원천소득의 보유를 단절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 비거주자인 선박소유주, 용선주 또는 항공사 운영자에게 국내소득을 얻는 경우
- 근로관계 종료시점에 싱가포르 시민이 아닌 근로자가 주식매입권에서 이득을 얻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리고
 -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개인의 고용주로부터 이득을 보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기로 약속(Undertaking)한 경우 또는
 - 고용주가 약속의 부분으로서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지정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

은 경우

- 법인의 비거주자 이사에 대해 주식매입권의 이득이 발생한 경우
-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사전에 부과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추정과세표준(ECI)을 사용하거나 소득세 최고책임자의 최적판단에 따라 부과할 수 있음

사전부과는 사전부과가 개시되는 연도에 적용되는 법령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정 변경에 따라 사전부과가 수정되거나 경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4) 제척기간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신고기한이 속한 연도 말로부터 4년³⁸⁾이다. 다만, 포탈이나 고의적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권의 제척기간에 제한이 없다. 한편, 제척기간만으로 임박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만 조사가 불충분하거나 납부세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수손실을 막기 위해 방어부과(Protective Assessments)를 할 수 있다.

다. 이의신청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납세의무자는 부과처분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식적으로 부과처분에 대해 반대할 수 있다. 소득세 최고책임자는 질병 또는 국내 부재 등의 특정한 상황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Objection) 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경정처분(Amended Assessment)을 하지만, 기각되는 경우 소득세 최고책임자는 납세의무자에게 경정거부통지서(Notice of Refusal to Amend)를 송달하게 된다. 이 통지서를 수령한 이후에만 납세의무자는 심판위원회(Board of Review)에 심판청구(Appeal)을 할 수 있다.

38)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YA 2007까지는 6년이다.

부과고지서상에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하더라도 소득세 최고책임자는 경정거부통지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으며, 공제받지 못한 자본공제나 손실에 대해 심판위원회에 절차를 진행할 수도 없다. 다만 이러한 쟁점사항이 차년도의 납세액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차년도에 경정거부통지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인용 또는 철회될 경우에는 부과처분이 확정된다. 반면,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심판청구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러한 심판청구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때에 부과처분이 확정된다. 한편, 소득세 최고책임자는 심판청구에서 결정된 쟁점이 아닌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확정된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정할 수 없지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확정된 부과처분에 대해 경정할 수 있다.

- 부과처분에서 과세소득이 누락된 경우
- 잘못 공제된 경우
- 납세의무자의 실수에 의한 경우 그리고
- 소득세 최고책임자의 실수에 의한 경우

라. 징수, 납부 및 환급

1) 징수와 납부

부과된 세액은 부과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 최고책임자는 납세의무자의 출국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는데, 납부기한의 연장 시 가산금의 납부를 포함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고용주이면서 출국하려는 경우에는 즉시납부 또는 부과고지서 발급일로부터 7일 내에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소득세 최고책임자는 납부세액 또는 추가적으로 부과된 세액이 15싱가포르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면제할 권한이 있다.

가) 분납

국세청은 은행간의 지로(GIRO)에 의해 납부세액을 분할납부하는 것을 허용한다. 분할납부방식을 선택한 개인 납세의무자는 최대 12개월간 무이자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 한편, 2008년 또는 2009년에 실직한 개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무이자 분할납부 기간이 최장 24개월까지 허용된다. 법인은 계약상 기초(Contracting Basis)에 따라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분납 횟수는 추정과세표준(ECI)을 국세청에 제출한 시기와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YA 2008부터 최장 분납횟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 <표 2- I -12>과 같이 회계연도말에 즉시 추정과세표준을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표 2- I -12> 법인의 분납 가능 횟수

추정과세표준이 제출된 시점	추정과세표준 신고방식	
	인터넷신고	서면신고
회계연도말로부터 1개월 내	10 ¹⁾	5 ²⁾
회계연도말로부터 2개월 내	8	4
회계연도말로부터 3개월 내	6	3
회계연도말로부터 3개월 이후	분납 불허	

주: 1) 인터넷신고자는 회계연도말로부터 1개월 되는 달의 26일까지 신고해야 함(예를 들어, 12월 말 법인은 인터넷신고시 1월 27일 이전에 신고해야 10개월 분납혜택을 누릴 수 있음)

2) 서면신고자는 회계연도말로부터 1개월 되는 달의 첫째 주까지 추정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함(예를 들어, 12월 말 법인은 서면신고시 1월 31일로부터 3주 이전에 신고해야 5개월 분납혜택을 누릴 수 있음)

자료: CCH, 앞의 책, p. 579

나) 납세대리인

비거주자·국외법인(Non-resident taxpayer)에 대해서는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징수 원활화를 위해 납세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납세대리인은 소득세 최고책임자로부터 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안에 납부를 해야 한다.

다) 납세증명서

싱가포르 시민이 아닌 근로자가 근로를 중단하거나 중단하려고 할 때 고용주는 모든 근로소득(초과근무수당, 휴가수당, 교통비, 접대비 등)을 지급하지 않고 유보해야 한다. 이 때 고용주는 Form IR21(유보된 금액을 표시)을 작성해야 하며,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납세증명서를 주거나 근로자로부터 근로중단 고지서를 제출받은 후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만 고용주는 유보된 근로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만일 납세증명서가 발급되기 이전에 고용주가 근로소득을 지급했다면 이로 인해 징수할 수 없게 된 세금을 고용주가 납부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싱가포르 시민이 아닌 근로자 중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 1역년 중 총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싱가포르에서 근무한 자
 - 그러나 이사, 연예인, 전문직 종사자 및 종전 근무를 싱가포르에서 수행한 것을 현재 고용주가 인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납세증명서가 요구됨
 - 1역년 중 183일 이상 싱가포르에서 근무했지만, 연간 총소득이 20,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인 경우
 - 종전 근무를 싱가포르에서 수행했고 해당 역년에 근로자의 총소득이 20,000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현재 고용주가 알고 있는 경우에도 납세증명서가 요구됨
 - 3년 연속 싱가포르에서 근무했지만, 매 역년 총소득이 20,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인 경우 또는
 - 종전 싱가포르 고용주에 대한 Re-structuring, Re-engineering, 합병 또는 인수로 인해 싱가포르에서 다른 고용주를 위해 업무를 재배치받거나 이전된 자
 - 그러나 새로운 싱가포르 고용주에 의해 재고용이 개시되기 전에 전고용주와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출국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납세증명서를 요건으로 함
- 또한 거주자인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그가 영구적으로 국내를 떠나는 것이 아닌 이상 납세증명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 Stand-over orders

납부기한이 지나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라도 일정한 사정이 있어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납기 내에 납부한 것으로 지시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세 최고책임자는 강제집행 부서에 징수절차를 개시하지 않도록 지시하게 된다. 납기 내 납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 징수절차가 개시되면 납세의무자에게 심각한 재정상 곤란이 발생하는 경우
- 파산 규모가 파산 사건에서 알려지지 않은 경우
- 납세의무자가 탈세 사건에서 정부에 협조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납세의무자와 국세청 간에 중요한 세무 쟁점에 대한 의견교환이 진행중이고 세액의 크기가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경우

2) 환급

공제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기납부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은 환급된다. 이러한 과다납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 부과처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한 이후 해당 부과액이 감소된 경우
- 기납부세액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적용한 것보다 높은 공제율로 공제해야 할 경우
- 특히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해 세액이 납부된 경우
- 각종 공제가 고려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 부과처분에 오류나 과실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기한은 환급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2007년 이전에 부과된 경우에는 부과연도로부터 6년, 2008년 이후에는 부과연도로부터 4년간 가능하다. 한편,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환급신청에 대한 심판위원회(Board of Review)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최고책임자의 불복이 최종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과납세액을 유보할 수 있다. 불복 결과 최종적으로 결정된 환급세액에 대해 심판위원회의 결정일로부터 연 5%의 이자를 납세의무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3) 오류 및 실수 공제(Error and Mistake Relief)

우리나라의 경정청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세액 계산상 오류나 실수에 의해 부과처분이 과다해진 경우 납세의무자는 공제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오류나 실수는 불운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의도적인 오류나 실수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된 자도 부과고지서상의 오류 또는 실수에 의한 과도한 부과처분에 대해 공제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한은 YA 2007 이전에는 그러한 부과가 있는 YA 말로부터 6년, 2008년 이후에는 4년이다.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공제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다양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소득에 대한 신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
- 신고서를 보조할 첨부서류나 장부가 제출되었는지 여부
- 신고서 또는 첨부서류가 법률상 정확한지 여부
-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결정한 부과처분을 수락 및 동의했는지 여부
그리고
- 그러한 상황에서 이용가능하고 관련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결정한 부과처분이 정당하고 합리적인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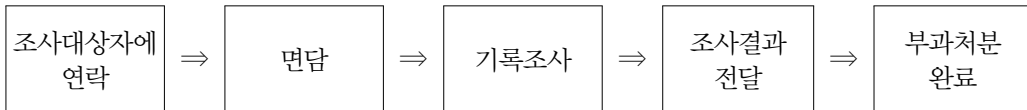
신고서나 서류가 제출 당시 소득세 최고책임자의 지배적인 관행에 기초하여 계산된 경우에는 위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직전 YA에 손실공제가 신청되지 않았고 그 후 그러한 관행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도 ‘오류 및 실수’ 규정에 의한 공제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전년도에 가속상각률로 자본공제를 신청했다가 그 후 공제를 취소하거나 일반상각률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오류 및 실수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마. 세무조사³⁹⁾

세무조사는 과거에 발생한 오류를 발견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해 보다 나은 납세순응을 지도하기 위한 것이다. 세무조사 대상자는 매년 선별하고 있다.

세무조사 절차는 다음 [그림 2-1-2]와 같다. 첫 번째 단계로 조사공무원이 직접 또는 전화로 납세의무자에게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음을 알린다. 사업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의무자와 협의하게 된다. 그 다음으로 세무조사 대상자의 사업운영과 회계시스템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면담을 시작한다. 세무조사 대상자와의 면담 후 장부와 기록에 대한 조사가 사업장⁴⁰⁾ 또는 국세청에서 이루어진다. 조사공무원은 원장, 일지, 원문서와 은행 계좌와 같은 사업관련 기록과 회계장부를 세금신고서와 대조한다. 보통 최근 YA와 관련한 세무신고서와 장부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조사범위가 과거 YA의 세무신고서와 장부까지 확대될 수도 있다. 세무조사가 종료되면 부과처분에 대한 조정사항을 고지하고 경정처분고지서(Notice of Additional/Amended Assessment)를 발부하게 된다. 현재 사업자의 기록보존의 무기간은 5년⁴¹⁾이다.

[그림 2-1-2] 세무조사 절차



자료: IRAS e-Tax Guide 2003/IT/15 "Taxpayer Audit," Revised on July 2007, p. 3

39) IRAS e-Tax Guide 2003/IT/15 "Taxpayer Audit," Revised on July 2007

40) 과거에 싱가포르 국세청은 제출된 세금신고서와 장부에 대해 서면조사만을 실시하여 왔다. 시간 소모적이면서 힘든 작업인 점 이외에도 이러한 시스템은 항상 투입된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 납세의무자 수와 행정인력 부족에 따른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국세청은 1992년 8월부터 현장조사부서(Field Audit Branch)를 설치하였다(CCH, 앞의 책, p. 683).

41) YA 2007이전에는 7년이였다.

바. 불복

1) 소득세 심판위원회(Income Tax Board of Review)⁴²⁾

경정거부통지서(Notice of Refusal to Amend)를 수령하면 납세의무자는 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심판통지서(Notice of Appeal)는 경정거부통지서의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불복의 이유를 기재한 심판신청서(Petition of Appeal)는 심판통지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심판위원회 위원은 재무부 장관이 임명하며, 인원은 30명 이하이다. 심판을 위한 정족수는 3명 이하는 금지되며, 위원들 중 1인은 위원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부재 시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재하는 경우에는 일반 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변호사나 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와 소득세 최고책임자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의 선임에 대해 반대할 수 없다. 납세의무자는 위원회 위원들의 1/3까지 반대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와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반대한 위원들의 합은 위원회 전체 인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위원에 대한 반대 이유의 타당성 여부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반대 이유가 타당하면 그 위원은 심판에 참석이 금지되지만, 반대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반대 요청이 거절되고 그러한 뜻을 신청자나 소득세 최고책임자에 전달해야 한다.

심판결과 위원회는 심판대상이 된 부과를 확정, 감액경정, 증액경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심판결과는 위원들의 과반수 의사에 의하며 그 결과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전달될 수 있다. 한편, 부과가 과도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데, 심판대상이 된 부과처분이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한 추정에 근거한 사실이 있더라도 동일하다.

42) 심판위원회는 평가심판위원회(Valuation Review Board), 소득세심판위원회(Income Tax Board of Review), GST심판위원회(Goods and Services Tax Board of Review)로 나뉜다 (http://app.mof.gov.sg/notice_of_appeal_personal.aspx#property).

2) 고등법원(High Court)⁴³⁾

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법률상 의문이 없는 경우에 확정된다. 법률상 쟁점이 있거나 법률과 사실관계가 혼합된 쟁점이 있는 경우로서 다툼이 있는 납세액이 200싱가포르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나 소득세 최고책임자 모두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상소법원(Court of Appeal)

납세의무자와 소득세 최고책임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소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다만, 사실관계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사. 가산세

1) 소득세법 규정 위반 가산세

소득세법 규정 위반 가산세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에 의한다. 동일한 YA에 소득세법 §44(16) 위반을 유죄선고 받고 난 후 소득세법 §44(15) 위반으로 유죄선고한 경우, 소득세법 §65C 위반으로 유죄선고 받고 난 후 동일 기간 동안 요구되는 동일한 정보에 대해 유죄선고가 난 경우에는 처음의 유죄선고 이후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매일 50싱가포르달러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43) 싱가포르의 사법권은 헌법에 의거하여 최고법원(Supreme Court)과 부속법원(Subordinate Courts)에 귀속된다. 최고법원은 고등법원(High Court)과 상소법원(Court of Appeal)로 구성되는데, 상소법원은 고등법원의 상급심이다. 부속법원은 지역법원(District Courts),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s), 특별법원(Specialised Courts), The Small Claims Tribunals로 구성된다. 지역법원과 치안판사법원은 모두 민사법원과 형사법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법원에는 가족법원, 청소년법원 등 9개의 법원으로 구성된다(<http://app.subcourts.gov.sg//subcourts/page.aspx?pageid=4393>).

2) 무신고 가산세

1개 YA에 대해 1회 발생된 무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과규정이 없다. 그러나 동일한 YA에 무신고행위가 2회 이상 있는 경우 즉, Notice of Chargeability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요청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무신고행위에 대해 유죄선고가 나고 연이어 동일한 무신고행위에 대해 유죄선고가 된 경우에는 처음의 유죄선고 이후로 위반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매일 50싱가포르달러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위반행위가 2개⁴⁴⁾ 이상 YA에 대해 발생한 경우에는 부과세액의 2배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3) 허위신고 가산세

허위신고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경우 허위신고 결과 미납된 세액만큼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과실에 의한 허위신고 시에는 미납된 세액의 2배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4) 조세포탈 가산세

조세포탈의 경우 위반행위의 결과 미납된 세액의 3배(중조세포탈은 4배)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아. 조세범처벌

1) 범칙조사

세무조사와 달리 범칙조사는 조세포탈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범칙조사는

44) 2008년 1월 1일 이전에는 3년이였다.

예비조사를 통해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고 관련기관이 조사에 승인한 경우에 진행된다. 예비조사(Preliminary Inquiries)는 일반적으로 신고서에 오류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소득의 누락 또는 과소신고를 인정한 경우에 착수된다. 조사의 범위는 위반행위의 성격, 관련된 소득의 원천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인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후에 소득세 최고책임자는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를 국세청에 소환하여 과거 및 현재 신고서에서 모든 위반에 대한 완전한 공개를 요구하게 된다. 소득세 최고책임자의 질문검사권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질문(Specific Queries)
 - 자산, 주식 등의 취득원가 및 양도가격, 자금원천 등에 대한 특별질문을 제기
- 인터뷰 요청
 - 인터뷰에서 소득세 최고책임자는 범칙조사 개시의 원인이 된 정보를 공개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완전공개를 하도록 권유함
- 계좌 및 서면조사
 -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련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개인 자산에 대한 기록을 요청받게 되고, 그 밖에 은행 기록, 자금원천에 대한 증거, 생활비 지출내역 등도 요청받을 수 있음
- 소득세 최고책임자 대리인의 방문
 - 일반적으로 조세포탈의 강한 혐의가 있고 형사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심층검사의 대상이 되고 범칙조사가 가능하다.

- 적절하지 않은 총수익(Gross Profit) 비율
- 설명할 수 없는 사업상 사업손실
-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수리비
- 과도한 여행 및 접대비
- 다른 소득에 대한 비율을 벗어나는 투자소득
- 생활비 또는 기타 개인 비용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Drawings

- 당기순이익의 비율을 벗어나는 자본의 도입
- round sum debits to expense accounts
- 파트너의 소득, 이자, Drawings, 보험 등의 분배에서 불규칙성 또는 불일치
- 2개의 연속되는 사업연도 말에 대차대조표와 손익항목의 금액에서 중대한 변동
- 회계연도 말에 미지급 상태로 있는 unusual accrued liabilities

납세의무자는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작성한 누락소득의 계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최고책임자의 계산액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추가세액 및 가산세에 대한 재판외 합의(Out-of-court Settlement)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 때 가산세는 위반행위의 정도, 범칙조사 동안 납세의무자의 협력수준 및 납세의무자의 재정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일부 사건에서는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본세 및 가산세의 분납을 인정할 수 있다. 재판외 합의는 소득세 최고책임자의 제안서(Letter of Offer)를 납세의무자가 수락한 때 확정된다. 조세포탈사건은 자주 형사소송으로 진행되지만, 재판외 합의가 불가능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소송에 의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오직 다른 조세포탈자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납세의무자에 대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2) 조세형사법⁴⁵⁾

가) 소득세법 규정 위반죄

소득세법상 어떠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해 유죄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 §65C(Failure to comply with notices issued by income tax comptroller)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법 §64, 65, 65A 또는 65B에 의해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교부한 고지서를 따르지 않은 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해 유죄임을 규정한다. 이렇게 위반행위를 명시한 규정에서 제재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1,000싱가포

45) 소득세법 §94~98을 참조하였다.

르달러 이하의 벌금에 의하고 만일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의한다. 다만, 고지서가 공보에 게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지서가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전달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상 교부된 고지서상 조건을 위반한 데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할 수 없다.

나) 무신고죄

정당한 사유 없이 소득세법 §62(Notice of chargeability and returns), 71(1) (Return to be made by partnership)을 불이행한 자는 1,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에 의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의한다. 다만, 고지서가 공보에 게재된 경우를 제외하고 고지서가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전달되지 않은 이상 소득세법상 교부된 고지서상 조건을 위반한 데 따른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할 수 없다.

다) 허위신고죄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부주의하게 세금신고서에 소득을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와 관련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또는 소득세법 §76(8)(Service of notices of assessment and revision of assessment)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에 의한다.

라) 조세포탈죄

조세포탈죄는 일반조세포탈(Tax Evasion)과 중조세포탈(Serious Fraudulent Tax Evasion)로 구분된다.

일반조세포탈은 고의적으로 직접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거나 조세포탈을 위해 다른 자를 도우려는 의도가 있는 자로서 ① 세금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소득을 누락한 경우 ② 세금신고서나 고지서에 잘못된 서술이나 입력을 한 경우 ③ 소득세법에 의한

질문이나 정보요청에 대해 잘못된 대답을 준 경우 또는 ④ 소득세법 §76(8)을 위반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 때, 형벌은 10,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에 의한다. 만일 일반조세포탈을 3회 이상 하거나 1회의 일반조세포탈과 1회의 중조세포탈을 한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징역에 의한다. 또한 제3자를 위해 세금신고서나 고지서에 잘못된 서술이나 기입을 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에는 반증이 있을 때까지 조세포탈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조세포탈은 고의적으로 직접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거나 조세포탈을 위해 다른 자를 도우려는 의도가 있는 자로서 ① 허위의 장부나 기록을 준비·관리하거나 장부와 기록을 위·변조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또는 ② 사기나 조작에 의하거나 그러한 수법의 이용에 대해 권한을 부여한 경우에 성립한다. 이 때, 형벌은 50,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에 의한다. 만일 중조세포탈을 2회 하거나 1회의 일반조세포탈과 1회의 중조세포탈을 한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의 징역에 의한다. 또한 조세포탈의도에 대한 추정규정은 일반조세포탈과 동일하다.

마) 공무수탁사인 등의 범죄

소득세법의 집행을 위해 선임된 자나 소득세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고용된 보조자가 ① 권한이 부여된 부과세액을 초과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② 개인 사용 또는 기타 목적으로 징수한 세액의 일부를 유보하는 경우 ③ 그가 징수하거나 받은 세액에 대한 잘못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④ 누군가를 속이거나 돈을 횡령하거나 소득세 최고책임자 또는 다른 개인과 함께 불법하게 처리하기 위해 그의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10,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병과 가능)에 의한다.

소득세법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자가 세금을 징수하거나 징수 시도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한다.

바) 세무공무원 방해죄

세무공무원의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1,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에 의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의한다.

자. 세법해석 사전답변

세법해석 사전답변(Advanced Ruling)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제도이다. 모든 납세의무자는 세법 규정이 본인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소득세 최고책임자에 신청을 할 수 있다. 답변 결과는 사적이고 비밀이 보장되는 것이므로,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1) 신청대상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의도하는 거래방식’ (Proposed Arrangement)에 적용되는 특정 법조항에 대한 서면해석이다.

다만 세법에서 소득세 최고책임자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한 권한을 주거나 의무를 부여한 규정에 대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제공할 수 없다.

- 가산세 부과 및 면제, 신고서나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검사, 고발, 징수
- 신청자가 의도하는 거래방식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판단하는 경우
- 신청이 경솔하거나 짜증에 의한 경우
- 신청사건이 납부해야 할 세금, 국외법률의 해석 또는 이중과세방지조약의 당사국이 처리해야 할 문제를 쟁점으로 하는 경우
- 관련 법령이 신청자 본인과 신청대상인 거래방식에 대해 적용되는 방법에 대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이 이미 존재하고, 신청사건이 기존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효력이 미치는 YA에 적용되는 경우
- 신청자 본인, 신청대상인 거래방식 및 적용 YA에 대한 부과처분이 있을 후에 세법

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한 경우

-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추가 정보를 요청한 후에 신청사건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신청자가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이용 가능한 자원에 고려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신청자가 회계원칙 또는 상업적으로 인정되는 실무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 사실관계의 확정을 요구하는 경우
-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정확성이 미래 사건이나 다른 문제에 대한 가정에 의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신청이 신청자나 다른 자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불복사건을 쟁점으로 하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예전에 신청한 세법해석 사전답변 사건에 대해 체납한 상태인 경우
- 신청사건이 이미 제출된 세금신고서를 쟁점으로 하는 경우

2) 신청절차

일반적인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청기한은 의도하는 거래일로부터 2달 전까지, 신속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청기한은 의도하는 거래일로부터 1달 전까지이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서면으로 신청하고 다음과 같은 신청수수를 부담해야 한다.

- 환급되지 않는 신청수수료 525싱가포르달러
- 추가수수료, 시간당 131.25싱가포르달러
 - 신청자와의 상담을 포함하여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신청사건을 판단하는 데 소비한 최초 4시간은 제외
- 추가수수료, 신청사건에 우선권을 부여해 판단을 속행하는 경우 위 2개의 수수료 총액의 2배까지
- 외부전문가의 자문이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 외부전문가에 지급된 수수료

- 소득세 최고책임자에 발생한 모든 비용과 지출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제공하기 전에 신청자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제공한 이후에 소득세 최고책임자도 언제든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고 취소이유를 밝혀 해당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답변내용의 의미상 변화가 없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 소득세 최고책임자는 자구 수정 또는 중요하지 않은 수정을 위해 기존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취소하고 새로운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3)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효력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법적으로 기속력이 있고 답변 내용에 기재된 특정 기간 동안의 거래방식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소득세 최고책임자는 답변 내용에 언급된 방식으로 법조항을 적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받은 자도 신고서를 준비할 때 언급한 거래방식에 대해 답변 내용대로 적용해야만 한다. 만일 언급된 거래방식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다면 그러한 변경사항은 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제공된 세법해석 사전답변은 최종적인 판단이므로, 답변 내용에 대한 불복은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제공된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답변 내용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신고서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서를 준비할 때는 그가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동의하지 않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근거하여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부과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불복할 수 있다.

답변 내용에 명시된 거래방식과 실질적으로 다른 방식이거나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신청과 관련하여 중대한 생략 또는 오해가 있었던 경우, 답변 내용의 도출에 결정적인 미래 발생할 사건이나 다른 문제에 대한 소득세 최고책임자의 가정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방식과 관련된 자에게 제공된 세법해석 사전답변이 적용되지 않는다.

8. 원천징수제도

싱가포르는 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납세증명서가 발급될 때까지 싱가포르에서 근로관계를 중단하려는 근로자로부터 고용주는 충분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Ⅱ. 법인소득세

1. 서론

싱가포르의 경우 법인소득 또는 개인소득의 과세에 관하여 소득세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소득세법 중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private limited companies), 외국법인과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과세대상소득은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계소득이 아닌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지만 국외원천소득의 경우에도 싱가포르로 송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또한 싱가포르는 자본이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싱가포르는 법인이 지급한 모든 배당은 주주의 단계에서는 과세가 면제되는데 그 이유는 2003년 1월 1일부터 1단계 법인세과세방식(one-tier corporate tax system)을 채택하였기 때문이다. 1단계 과세방식(one-tier system)에 의하면, 기업이 자신의 과세표준(chargeable income)에 대해 납부한 세금이 최종 세액이 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임퓨테이션 시스템은 거주자의 과세표준(chargeable income)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배당의 분배에 따라 주주들에게 분배되어 주주단계에서 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이다. 싱가포르도 2003년 1월 1일 이전까지 임퓨테이션 시스템을 채택했었다. 2003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경과기간(transition period)으로 하여 과거와 같이 임퓨테이션 시스템을 유지할 수도 있고 해당 기간중에는 언제라도 1단계 과세방식으로 전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임퓨테이션 시스템을 유지하던 모든 기업이 1단계 과세방식으로 전환되었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모든 배당은 과세 면제된다.

법인세의 과세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며 법인세가 신고되고 세액이 부과되는 연도(statutory tax year)를 'Year of Assessment' (이하 'YA' 라 함)라 한다. 모든 YA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 특정 YA에 세금이 부과될 소

득이 발생한 기간을 'basis period' 라고 하는데 이는 과세대상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과세대상기간은 일반적으로 YA의 직전 연도가 된다. 예를 들면, 'YA 2009'의 과세대상기간은 2008년 1월 1일~2008년 12월 31일의 기간이다.

2. 납세의무자

법인세는 회사(Companies)와 신탁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소득세법에서 정의하는 회사란 싱가포르 및 그 외의 지역에서 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등록된 회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법인'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법인의 정의는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외국법인도 자회사 또는 지점의 형태로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실체를 포함하는 것이다. 자회사와 지점은 과세상 차이가 있는데 즉, 외국법인의 자회사가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경우 싱가포르의 거주자이지만 지점은 비거주자이다.

정부기관, 협동조합(friendly and cooperative societies), 자선단체(charities), 노동조합(trade union)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단체에 해당한다. 파트너십은 별도의 납세 주체가 아니며 각각의 파트너가 자신의 파트너십으로부터의 소득부분에 대해 납세할 의무가 있다.

거주법인이란 싱가포르에서 사업에 대한 경영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법인을 말한다. 경영과 통제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는 소득세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보통 의사결정은 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경영과 통제라는 것이 일상적인 사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거래활동이나 물리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지역에서 경영과 통제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거주법인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등록된 장소나 등록된 사무소가 있는 장소는 중요하지 않고 외국에서 설립된 회사라도 경영과 통제가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다면, 싱가포르에서 과세상 거주법인이 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에서 설립되었다고 경영과 통제가 국외에서 이루어진다면, 과세목적상 싱가포르의 비거주법인이 될 수 있다. 개인과 달리 법인의 거주지의 판단은 과세대상소득이 발생하는 기간이 아닌 신

고 및 부과연도(YA)의 상황에 따라 이루어진다.

거주법인과 비거주법인 모두 싱가포르 원천소득과 싱가포르로 송금된 국외원천소득(국외원천소득이 비과세소득인 경우 제외)을 과세대상소득으로 한다.

3. 과세소득 및 비과세소득

가. 과세소득

거주법인은 싱가포르의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 중 싱가포르에서 수취한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한다. 소득의 유형은 ① 사업(trade, business, profession)에서 발생한 이익 ② 배당·이자·임대와 같은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③ 로열티, 프리미엄 등 기타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 ④ 소득 성격의 기타 이익으로 구분된다.

싱가포르는 자본이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으므로 고정자산 판매이익,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과 같은 자본이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나. 비과세소득

싱가포르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으로는 요건을 만족하는 거주자가 수취하는 국외원천 배당소득, 외국자회사 이익 및 용역 소득과 선박회사에서 발생하는 선박이익(shipping income)이 있다.

1) 국외원천소득

싱가포르의 거주자는 국외원천배당, 해외자회사이익, 국외원천용역소득에 대해서 2003년 1월 1일 이후 싱가포르로 송금된 것에 대하여 요건을 만족하면 비과세된다. 요건이란 소득의 원천 국가의 최고 법인세율이 적어도 15% 이상이고 외국원천소득이 원천지 국가에서 과세대상이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외원천소득에 실제로 적용한 세율이 최고세율은 아니어도 된다.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수취한 소득의 성격과 금액, 소득을 수취한 국가, 해당 국가의 최고세율, 수취한 소득에 대하여 해당 국가에 납부한 세액의 확인 등의 정보를 소득세 신고서인 Form C와 Appendix를 통해 제공해야 한다.

2009예산안에 따르면, 거주자의 경우 과세면제는 2009년 1월 21일 이전에 발생하고 2009년 1월 22일부터 2010년 1월 21일 기간에 싱가포르에서 수취 또는 수취로 간주되는 모든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싱가포르로 송금하는 소득의 과세면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득세법 §13(9)의 두 가지 적용요건인 ‘과세대상’ 이어야 한다는 것과 ‘외국의 최고세율’ 요건은 일시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면제가 적용되는 싱가포르에서 수취한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은 국외원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다른 과세소득으로부터 공제할 수는 없다.

2) 선박회사의 선박이익

소득세법 §13A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선박회사의 선박이익은 다음과 같다. 싱가포르에 등록된 국제선박의 경우 ① 승객, 우편, 가축 및 물품의 운송 ② 예인 및 인양 작업의 수행 ③ 선박의 임대 ④ 준설선, 또는 오일 및 가스 활동에 사용되는 대형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이다.

비과세에 대하여 국세청(IRAS)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소득이 발생한 법인은 소득세 신고서인 Form C와 세금계산서(Tax Computation)를 통해 해당 소득의 성격과 금액을 신고하면 된다.

소득세법 §13A에 해당하는 비과세소득이 있는 선박회사는 선박별로 소득과 비용을 기록한 별도의 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서는 선박별 소득과 비용,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구분, 관리비 등과 같이 공통으로 발생한 비용의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으로의 분배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선박회사에서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 자본공제는 공통으로 사용된 고정자산에 대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만일 고정자산이 과세소득 또는 비과세소득 중 어느 하나에 직접적으로 속하는 경우 자본공제는 해당 원천

소득에서 공제한다. 또한 선박회사는 비과세소득에 사용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자본공제는 청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만일 선박회사가 과세소득에 대하여 자본공제를 청구할 것으로 결정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는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선박회사가 과세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부터 손실(loss)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 금액은 비과세소득과 상계하거나 미래의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상계할 수 없다.

4. 비용공제 및 세액공제 등

소득세법 §10(1)에서는 소득의 성격을 지니는 이득 및 이익(gains or profits)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세는 총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세법에서 정하는 비용 및 기타 항목들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비용으로 처리한 것이라도 세법상 공제할 수 있는 비용과 공제할 수 없는 비용이 있을 수 있다. ‘소득(income)’에 대해서는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자본이득(capital gain)’과는 상대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자본이득은 싱가포르에서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자본적 지출도 법인세 과세목적상 공제되는 비용이 아닌 것이다.

소득세법 §14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제되는 비용을 정의하고 있고 소득세법 §14A~14Q에서는 특별한 공제항목을 열거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15에서는 공제되지 않는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상 소득에서 공제하려면 소득세법 §14에 열거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15에 의해 공제가 금지되지 않아야 한다. 소득세법 §15에서 공제를 금지하고 있는 비용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된 지출, 자본의 인출 및 자본적 지출과 ① 보험계약 등으로부터 보상이 되는 비용 ② 소득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부지의 임대료 및 수선비 ③ 국내·외에서 납부한 소득세 ④ GST법에 의해 등록이 요구되지만 등록을 하지 않은 납세자 또는 매입세액(input tax)으로 납부할 세액을 차감할 자격이 있는 납세자의 GST 납부할 금액 등이다⁴⁶⁾.

사업과 관련된 비용(Business expenses)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을 유발하는 데 발

46) 소득세법 §15(1)(e)~§15(1)(q)

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가 허용된다. 이러한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① 경상비 성격이어야 하므로 자본적 지출은 공제대상이 아니고 ② 소득세법에서 공제가 금지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③ 발생한 비용이어야 하므로 우발부채와 같은 것은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 일반적으로 공제되는 비용의 정의

소득세법 §14(1)에서는 일반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원천으로부터 특정 기간의 특정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납세자에 의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발생한 모든 지출과 비용은 공제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비용으로서 소득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출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 비용 성격의 공제항목

1) 이자비용

이자비용의 경우 공제가능한 비용이 되려면, 이자비용이 소득을 획득하는 데 사용된 자본에 대해 지급할 이자이어야 한다. 즉, 대출 원금의 사용목적이 이자비용의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발생한 이자비용은 소득과 관련된 이자로 보지 않는다.

YA 2008부터 소득의 창출에 사용될 자본자산의 취득을 위한 대출과 관련된 적격한 대출비용(이자비용 제외)은 공제할 수 있다. 적격한 대출비용이란 담보수수료, 은행수수료(bank option fee) 등이 포함된다.

2) 임대료

소득의 창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의 임대료는 공제가능하다⁴⁷⁾. 부지

의 일부를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배분하여야 한다.

3) 수선비 등

수선(repair)비용과 개조(renewal)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14(1)(c)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득을 획득하는 데 사용되는 부지, 시설, 기계장치, 부착물의 수선을 위해 발생한 비용 또는 시설물 등(implement, utensil, article)을 수선, 개조하는 데 발생한 비용은 소득공제한다. 그러나 최초 구입 시 자본적 지출이 적용된 시설 및 기계장치와 부착물에 대한 개조비용과 영구시설물의 성격을 지니는 건물, 구축물 등의 재건축(reconstruction or rebuilding)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수선과 개조의 구분에 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는데, 부수적인 부분에 대한 대체는 수선이고 전체적인 부분의 대체는 개조라는 판결이 있는가 하면, 자본적인 성격을 지니면 개조라는 판결도 있다.

4) 대손금

거래에서 발생한 대손금의 경우 요건을 만족하면 공제가능하다. 요건을 만족하려면, 대손금이 사업 등(trade, business, profession or vocation)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그 대손금은 거래수익에 포함된 금액이어야 하며 매출채권이 해당 과세기간에 대손으로 전환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납세자가 해당 매출채권을 수취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예: 법률적 행위)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정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납세자는 사업을 영위했어야 한다.

5) 연금분담금

종업원을 위해 연금(pension) 또는 연금기금(provident fund)에 납부하는 연금분

47) 소득세법 §14(1)(b)

담금은 공제 가능하다. 공제대상은 승인된 연금 및 연금기금과 국외에서 설립된 펀드로서 고용계약상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에 한한다. 공제금액은 법률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6)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 대한 지급금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임금 및 이와 유사한 지급금, 상해 및 사망 시 지급금, 퇴직금은 종업원에 의해 수행되는 용역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금액까지 공제할 수 있다⁴⁸⁾. 이러한 합리적인 금액이라는 제한은 종업원이 고용주 또는 고용주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개인의 가족 관계(배우자 및 자녀)에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인 종업원에 대한 지급금(Payments to related employees)은 합리적인 금액 범위에서 비용으로 인정한다.

7) 차량비용

소득을 발생시키는 데 사용된 차량비용은 전액 공제대상이며⁴⁹⁾ 차량 종류별 과세처리는 다음과 같다.

법인이 싱가포르에 등록된 차량(Singapore registered cars, 이하 ‘S-plate’ 라 함)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S-plate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공제대상이다⁵⁰⁾. 그러나 종업원이 개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의 유지비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다.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고 싱가포르 외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외국에 등록된 차량에서 발생한 비용은, 만일 그 차량의 원가가 35,000싱가포르달러 이하면 차량의 운행 및 유지와 관련된 비용이 전액 공제되고 차량 가격이 35,000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면 실제 발생한 비용 중 차량 가격에서 35,000싱가포르달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공제한

48) 소득세법 §14(2)

49) 소득세법 §14(3), §14(3A), §14(4), §15(1)(k)

50) 소득세법 §15(1)(k)

다. 예를 들면, 법인이 싱가포르 외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차량에서 10,000싱가포르달러의 차량 유지비가 발생하였고 차량 가격이 45,000싱가포르달러인 경우, 공제되는 금액은 7,778(= 10,000 × (35,000/45,000))싱가포르달러가 된다. 잔액 2,222싱가포르달러는 공제되지 않는다.

차량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임대용 차량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전액 공제된다.

8) 의료비용

고용주가 종업원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용은 일정 한도 내에서 공제가능하다⁵¹⁾.

2004년 4월 1일부터 공제가능한 의료비용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총보수의 1%를 한도로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기업이 PMBS(Portable Medical Benefits Scheme) 또는 TMIS(Transferable Medical Insurance Scheme)을 시행하고 있고 각 제도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의료비용 공제한도는 총보수의 2%가 된다.

YA 2008부터는 고용주가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총보수의 2%를 의료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다.

첫째, 고용주가 관련 과세기간(basis period) 동안 종업원의 20%까지의 의료계정(Medisave accounts)에 임시 분담금(Medisave accounts에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종업원 1인당 연간 1,500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한다)을 납부

둘째, 고용주가 PMBS 또는 TMIS을 시행하고 적격요건⁵²⁾을 만족

셋째, 고용주가 Portable medical shield plans의 형태인 inpatient medical insurance benefits을 종업원에게 제공하고 적격요건을 만족

만일 PMBS 또는 TMIS가 아니거나 Portable medical shield plans 또는 ad-hoc medisave contribution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공제한도는 총보수의 1%이다. 따라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의료비용으로 공제가능한 금액 상한은 총보수의 1%와 2% 사이의

51) 소득세법 §14, §14(5)

52) PMBS, TMIS, Shield Plan의 적격요건은 Ministry of Manpower(MOM)의 circular 'Additional Avenues for Higher Tax Deduction for Medical Expenses' 참조

금액이다.

의료비용 계산 시 총보수에 포함되는 것은 종업원의 급여, 보조금 및 보너스, 이사의 보수, CPF 분담금(Central Provident Fund contributions)이다. 총보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사의 수수료, 의료비용, 의료비용과 현물급부(benefits-in-kind)를 대신하는 현금보조금이다.

의료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건강관리, 출산관리, 예방 및 치료비용, 고용주에 의한 의료시설 제공, 의료비를 위한 현금보조, 치과비용, 의료 및 치과 보험의 보험료, 회사가 납부하는 종업원의 CPF 의료계정 납부금으로서 연간 1인당 1,500싱가포르달러를 공제한도로 하는 금액이다.

9) 접대비

소득세법 §14(1)에서 정의한 일반적인 공제 원칙에 따르면 접대비는 공제대상이다. 그러나 공제 가능한 비용이 되려면 접대 활동은 반드시 사업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사업관련 비용이란 현재 또는 미래의 사업 관련자와 고객에게 접대하는 것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술집이나 납세자가 회원인 컨트리클럽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음식과 음료 제공 등이 해당된다.

납세자는 사업과 비용의 관련성을 기록한 적절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기록할 내용은 예를 들면, 접대 날짜 및 장소, 접대한 자의 이름, 지출비용, 사업관련 회의 내용 등이다.

클럽 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되어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클럽회비는 공제대상이다.

10) 종업원에 대한 지출

종업원에 대한 지출(Payments made to employees)은 급여, 임금, 수수료, 퇴직금, 현금보조금, 연차수당, 출장비, 종업원의 생명보험료, 음식제공비, 연금분담금 등이다. 이러한 종업원에 대한 지출은 공제대상이다. 그러나 특정 지출은 공제가 제한된

다. 공제되지 않는 종업원에 대한 지출은 종업원과의 계약으로 인해 지불하는 것, 사업 폐쇄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 싱가포르에서 승인되지 않은 연금에의 분담금 (premiums or contributions) 등이다.

11) 분실 등으로 인한 손실

도난, 횡령, 유용, 부정 등으로 인한 손실은 그 손실이 자본적 성격이 아니고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다.

12) 법률비용

일반적으로 소송 및 자문을 위한 법률비용은, 그것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준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세 최고책임자도 사업(trade, business, profession or vocation)을 하는 납세자가 세금신고서 작성 및 세금관련 자문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13) 세금

납부한 세금 중 일부는 소득세 산출 시 공제가 금지되고 일부는 공제가 허용된다. 공제가 금지되는 것은 국내원천소득 및 국외원천소득과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GST법에 의해 등록을 해야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납세자가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GST 금액 등이다. 한편, 재산세(property tax), 인지세 납부금은 공제가 가능하다.

14) 기타 지출

기타 지출로는 사업 개시 이전에 발생한 비용과 회사설립비용, 해외출장비, 환율손실, 회의비 등이 있다.

다. 특별공제

1) 개요

소득세법 §14(1)에서 정의하는 비용으로서 공제하는 성격을 지니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는 지출을 소득세법 §14A~§14Q에서 열거하고 있다. 이들 항목은 대부분 연구개발 활동이나 해외시장개척 및 투자 촉진 등 특별한 목적에 의해 공제하는 것으로 조세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부 항목의 경우, 지출액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금액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표 2-11-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특별공제항목

	공제항목	근거조항
특별공제	Deduction for patenting costs	§14A
	Expenditur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14D
	Management expenses of investment companies	§14F
	Expenditure on building modifications for benefit of disabled employees	§14H
	Provisions by banks and qualifying finance companies for doubtful debts and diminution in value of investments	§14I
	Deduction for hotel refurbishment expenditure	§14M
	Deduction for upfront land premium	§14N
	Deduction for special reserve of approved general insurer	§14O
	Deduction for treasury shares transferred under employee equity - based remuneration scheme	§14P
추가공제	Deduction for renovation of refurbishment expenditure	§14Q
	Further deduction for expenses relating to approved trade fairs, exhibitions or trade missions or to maintenance of overseas trade office	§14B
	Further deduction for logistics expenses	§14C
	Enhanced deduction for qualifying expenditur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14DA
	Further deduction for expenditur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14E
	Further deduction for expenditure o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new financial activities	§14J
이중공제	Further deduction for expenses incurred in relocation or recruitment of overseas talent	§14L
	Further or double deduction for overseas investment expenditure	§14K

2) 연구개발비⁵³⁾

‘연구개발비(research and development, 이하 ‘R&D’ 라 한다)’에 관하여 소득세법 §2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새로운 지식의 획득이나 재료, 장치, 제품, 생산 및 공정의 생산 및 개선을 위하여 연구 결과를 사용할 목적으로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수행되는 기술적 위험을 수반하는 체계적·분석적·실험적 연구로서 다음의 활동을 제외한다. ① 재료, 장치 및 제품의 품질관리 및 반복적인 검사 ② 사회과학 및 인문학에서의 조사 ③ 반복적인 자료 수집 ④ 효율성 조사 및 경영연구 ⑤ 시장조사 및 판매 촉진 ⑥ 재료, 장치, 제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반복적인 수정 ⑦ 재료, 장치, 제품, 공정 및 생산방법에 대한 외형적인 수정 ⑧ 판매 및 임대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개발”

과거에는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직접 연구개발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거나 또는 싱가포르 내에 있는 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한 연구개발 활동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에 한해 소득공제를 적용하였다. 그러나 YA 2003부터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한 연구개발용역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100%의 공제가 적용된다. 단, 창출된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이 반드시 해당 법인에 귀속되어야 한다. EDB(Economic Development Board)에 의해 승인을 얻은 연구개발비는 200% 공제가 적용된다.

2008예산안을 통해 싱가포르에서의 보다 폭넓은 R&D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새로운 R&D 정책을 도입하였다. 새로운 정책은 자유로운 R&D 소득공제(tax deduction), 새로운 RDA(R&D tax allowance) 제도, 창업기업을 위한 새로운 R&D 조세지원제도로 구성된다. 새로운 R&D 조세정책은 싱가포르에서의 R&D 능력을 개발하도록 기업들을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새로운 R&D 정책을 적용하려면, 싱가포르에서 수행한 R&D 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어야 하고 특정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새로운 R&D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3) 소득세법 §14D, §14DA, §14E, §14J

첫째, 자유로운 R&D 소득공제란 R&D 지출의 확대된 2가지 공제제도이다. 싱가포르에서 적절한 R&D 활동을 수행한 납세자는 다음의 두 가지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 ① 모든 업종에서 R&D 수행으로 발생한 비용의 공제이다. 과거에는 소득공제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납세자에 의해 발생한 비용이거나 R&D 지출이 납세자가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성이 있을 때에 한해 허용되었다.
- ② 적격 R&D 지출의 50%를 추가적으로 공제한다.

둘째, RDA(R&D Tax Allowance) 제도는 싱가포르에서의 적절한 R&D 활동에 의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 중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동 제도에 따르면, 매 신고 및 부과연도마다 300,000싱가포르달러까지의 과세표준(chargeable income)의 50%를 공제(tax allowance)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YA 2016까지 과세가능소득(assessable income)에서 공제할 수 있다.

셋째, 창업기업을 위한 새로운 R&D 조세지원제도(RISE: R&D Incentive for Start-Up Enterprise)는 설립 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창업기업에 R&D 보조금을 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동 제도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의 적절한 R&D 활동에 대해 연간 150,000싱가포르달러까지 지출하였고 손실이 발생한 창업기업은 225,000싱가포르달러(150,000싱가포르달러의 150%)까지의 조정된 손실(adjusted tax loss)을 9%의 적용률에 의해 현금보조금(cash grant)으로 전환할 수 있다. 따라서 수취할 수 있는 최고 현금보조금은 20,250싱가포르달러(225,000싱가포르달러 × 9%)이다. 이는 설립 후 최초 3년간 적용할 수 있다.

3) 수출촉진 및 시장개발 관련 지출⁵⁴⁾

대상이 되는 지출은 승인된 무역박람회, 무역 전시회, 무역사절단 및 무역 홍보 활동의 설립, 운영 및 참여, 승인된 해외무역사무소 운영, 승인된 마켓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한 시장개척과 관련된 비용이다. 대상비용을 공제하려면, 법인(company or firm)으로서 물품의 매매 및 용역의 제공을 촉진하나 프랜차이즈권이나 라이선스를

54) 소득세법 §14B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프랜차이즈 및 지적재산권의 사용과 관련한 용역의 제공을 목적으로 발생한 비용이어야 한다.

4) 해외투자 개발 관련 지출⁵⁵⁾

해외로 진출하고자 하는 법인 등에 대한 조세지원으로서 해외투자개발비에 대하여 추가적인 공제 및 이중공제를 적용한다. 추가적인 공제는 일반적인 공제 원칙에 부합하여 공제가능한 비용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고, 일반원칙에 의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에는 2배 공제(double deduction)를 적용한다.

적격한 비용은 해외에서의 승인된 투자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한 투자개발지출과 승인된 프로젝트의 해외사무실 운영비이다. '투자개발지출'이란 해외투자처에 대한 파악 및 승인된 해외투자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다.

이러한 추가 및 2배 공제는 사무소 설립 후 최초 6개월간 발생한 비용에 한해서 적용한다. 사무소가 위치한 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설치된 이후에는 더 이상 추가공제 및 2배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5) 기타

가) 개보수비용

현재 사업장의 개보수(renovation or refurbishment) 작업에서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개보수비용은 또한 자본공제의 대상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시설 및 기계장치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14Q에 의해 2008년 2월 16일~2013년 2월 15일 기간에 발생한 개보수비용에 대해 공제를 허용한다.

55) 소득세법 §14K

공제가 적용되는 적격한 개보수비용의 대상은 비용이 발생하고 공제를 신청한 해를 시작으로 하여 매 3년당 150,000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한다. 처음 개보수비용이 발생한 기간과 관련된 신고 및 부과연도(YA)를 시작으로 하여 3개의 연속된 신고연도에 걸쳐 청구되어야 한다. 즉, 개보수비용의 1/3을 3개의 연속된 신고연도에 걸쳐 공제신청하여야 한다. 처음 비용이 발생한 기간에 관련된 신고연도에 공제 신청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신고연도에도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 3개의 신고연도가 종료되기 전에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경우 공제하지 못하고 남은 비용은 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

YA 2010과 YA 2011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이 적용된다. 경제 하강기에 사업장의 수리를 장려하기 위하여 YA 2010과 YA 2011의 과세기간(basis period)에 발생한 적격한 보수비용은 3년이 아닌 1년에 전액 공제하도록 하였다. 3년에서 1년으로의 공제 기간 단축(가속상각)은 세액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고 따라서 기업이 직면한 유동성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관련된 매 3년당 150,000싱가포르달러라는 한도금액은 변화가 없다.

개보수비용은 조정소득(adjusted profit and loss)에서 공제된다. 개보수비용 공제액이 조정소득보다 큰 경우 결손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사용하지 못한 개보수비용은 그룹법인 간 손실이전제도(group relief system)에 의해 그룹 내 타 법인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적격한 지출은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며 디자인 수수료 및 전문가 수수료, 골동품, 그림·조각 등의 예술품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례: 개보수비용 연간 공제한도 적용 관련〉

회계기간이 역년을 따르는 납세자가 2008년 2월 16일~2013년 2월 15일 기간 중에 자신의 사업장에서 다음과 같은 개보수비용이 발생한 경우 관련 신고연도별 금액은 다음과 같다.

신고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발생한 보수비용	90,000	-	70,000	-	100,000	60,000
적격한 보수비용	90,000	-	60,000	-	100,000	50,000

최초비용이 2008년 2월 16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최초 3년의 한도적용 기간은 2009~2011년 신고연도 기간이고 두 번째 한도적용 기간은 2012~2014년 신고연도 기간이다. 매 3년 단위로 150,000싱가포르달러까지만 적용되므로 2011년과 2014년에는 각각 60,000싱가포르달러, 50,000싱가포르달러까지로 제한된다. 만일 최초로 보수비용이 발생하고 신고한 연도가 2010년이라면, 최초 3년이 2010~2012년이고 두 번째 3년은 2013~2014년이 된다. 왜냐하면 동 조세지원제도는 2013년 2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한해 적용되므로 2015년 신고연도에는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자료: IRAS, "Deduction for Expenditure Incurred on Renovation or Refurbishment works"
2008년 6월 18일.

나) 특허비용

기업들의 특허권 취득을 권장하고 싱가포르에서의 지적재산권 유치를 유인하기 위하여 특허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였다. 사업(trade or business)을 운영하는 자는 2003년 6월 1일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특허비용을 소득공제할 수 있다. 특허비용이란 싱가포르 및 국외의 특허 등록청에 특허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납부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소득공제를 할 수 있는 자는 특허권이 주어졌을 때 해당 특허를 소유하는 자이어야 한다. 특허권을 판매 및 이전하거나 외국에서 특허권 취득에 실패한 경우 등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환수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2010년 예산안에서는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의 등록과 관련된 적격한 비용에 대해서 최초 300,000싱가포르달러까지는 250%까지 소득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100% 소득공제하도록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하였다.

다) 장애인 종업원을 위한 건물 개조비용

부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자신의 부지에서 사업 및 전문직업(trade, business or profession)을 수행하는 자가 장애가 있는 종업원의 기동성 및 업무를 위해 부지를 개조하거나 설비를 추가하는 데 적격한 비용이 발생했다면, 그 지출은 특별공제 대상이다. 최고 공제액은 누적금액으로 100,000싱가포르달러이고 해당 지출에 대하여 다른 명목으로 중복해서 공제할 수는 없다.

라) 호텔 개보수비용

호텔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만일 승인된 프로젝트에 의한 것이라면, 호텔의 개보수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이 이루어졌고 해당 프로젝트가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완성되는 것이어야 한다.

라. 기부금

기부금은 소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제대상 비용이 아니다. 그러나 공익성이 인정된 기관(Institution of a Public Character, 이하 'IPC' 라 한다) 또는 싱가포르 정부에 기부한 경우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2005년 1월 1일부터 다음의 기부에 대해 2배 공제가 적용되었다. ① 공익성 기관(IPC: Institutions of a Public Character), 공익성 기관의 설비, 행사 및 프로그램을 지정한 기부 ② 승인된 기부 프로그램에서 승인된 수혜자(artifacts와 public sculptures 포함)의 설비를 지정하는 기부 ③ 기부자의 이름이나 로고를 IPC의 물품(예: 배너, 출판물, 광고물)에 포함함으로써 IPC 또는 승인된 수혜자가 기부자를 알 수 있는 승인된 기부 프로그램에 대한 기부

기부자가 IPC 시설, 행사 및 프로그램에서 광고를 하는 경우에 2배 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기부자는 자신의 배너, 제품, 기타 물품을 자신이 기부하는 IPC 시설, 행사 및 프로그램에서 전시할 수 없다. 그러한 경우에는 조세목적상 기부금이

아닌 광고비로 처리된다.

만일 기부나 증여가 '외국에서의 자선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승인된 IPC라 하더라도 과세목적상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부금 공제액이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최고 5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2002년도의 기부는 YA 2003년에 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YA 2008년까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사용하지 못한 기부금은 거래손실 및 자본공제 다음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월공제제도는 2002년도의 기부부터 적용된다.

2009년 예산안에서 확대된 기부금공제제도(Enhanced of Tax Deduction)를 도입하였다. 이는 경제하강기에 싱가포르에서 더 많은 자선기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기간에 있었던 승인된 기관에 대한 기부에 대해 2.5배까지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2010년 예산안에서는 경제회복을 위한 자선기부 증진을 위하여 확대된 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010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였다.

1) 현금기부

승인된 IPC 또는 지역사회를 위한 정부기관에 대한 현금 기부는 공제가능하다. 모든 등록된 단체가 승인된 IPC는 아니다. 승인된 IPC가 아닌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기부자에게 물질적인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완전한 기부만이 공제대상이 된다. 그러나 2006년 5월 1일 이후에 IPC에 대한 기부는 비록 기부에 대한 대가가 있더라도 순수한 기부로 간주한다. 이러한 특별조치가 적용되려면, 그 대가가 상업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것이란 대가로 받은 것이 기부에 대한 답례로 받은 것이고 재판매 가치가 없는 것임을 의미한다.

2) 주식기부

싱가포르주식거래소(SGX)에 상장된 주식 또는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신탁자산의 형태를 승인된 IPC에 증여하는 것은 공제가능하다. 승인된 IPC는 기부된 주식 및 신탁자산의 가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부가 이루어진 마지막 날의 거래시장에서의 유사한 주식 및 신탁자산의 가격을 기초로 결정된다.

기부일은 승인된 IPC로 법적인 권한이 넘어간 날이다. 옵션 및 보유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는 주식의 기부는 주식기부에 해당되지 않으며 주식 기부는 개인에 한해 적용된다.

3) 컴퓨터기부

컴퓨터(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주변기기 포함)를 교육·연구기관과 싱가포르에 있는 모든 승인된 IPC에 증여한 경우 공제대상이다. 기부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IDA(Infocomm Development Authority)에 의해 승인된 것이어야 한다. 기부자는 기부한 컴퓨터의 가치 평가를 IDA에 신청하여야 한다. 컴퓨터 기부는 법인에게만 적용된다.

4) 문화재 기부

싱가포르 국립유산위원회(National Heritage Board, 이하 'NHB'라 함)로부터 승인된 박물관의 지위를 얻은 박물관에 문화재를 기부하는 경우 공제가능하다. 문화재는 수집품으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NHB에 의해 지원된다. 기부자는 박물관 또는 NHB에 기부한 문화재의 가치 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박물관이 승인된 박물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NHB에 신청하여야 한다. 문화재 기부는 개인과 법인 모두에 적용된다.

5) 공공예술 조세지원제도

2006년 4월 1일 이후에 조각품 또는 예술작품을 공공장소에 전시하기 위하여 NHB 또는 승인된 수취기관에 기부하는 경우 2배 공제가 적용된다. 기부자는 기부한 조각품 및 예술품에 대한 가치 평가를 NHB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공예술 조세지원제도(Public Art Tax Incentive Scheme, 이하 'PATIS' 라 함)는 NHB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법인과 개인 모두 적용할 수 있다. PATIS에 의해 적격된 기부는 다음과 같다.

- ① NHB에 의해 요구되는 예술적 가치 또는 유산으로의 가치를 지니는 공공예술품
- ② 승인된 박물관이 아닌 승인된 기관에 실내용 공공전시를 위한 조각품의 기부
- ③ 공공전시를 위한 조각품 및 예술품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현금 및 용역의 기부

6) 토지와 건물의 기부

2003년 4월 1일 이후 승인된 IPC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의 증여는 공제가능하다. 기부자 또는 승인된 IPC는 기부된 자산의 시장가치 평가를 위해 조정하여야 한다. IPC는 기부된 자산의 시장가치의 공증을 위해 국세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기부금액은 자산의 원가가 아닌 국세청에 의해 공증된 자산의 시장가치를 기초로 한다. 세제상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기부일자는 해당 자산이 법적으로 승인된 IPC로 이전되는 날이다.

5. 자본공제제도

고정자산의 원가는 비용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성격을 지니므로 과세목적상 공제되지 않는다. 회계적 관점에서 볼 때 자산은 잠재적 효익 즉,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위해 취득된다. 기업회계에서의 감가상각이란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원가를 배분하는 것이고 각 법인은 자신의 회계정책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산출한다. 그러나 이는 실제 현금흐름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이 기록한 감가상각비는 과세

목적상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정자산의 감가(마모)로 나타나는 실질적인 사업 원가의 발생에 대하여 과세목적상 특정 자산에서 발생한 자본적 지출을 공제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소득세법에서는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라는 방식으로 과세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공제는 그 대상자산별로 시설 및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공제, 산업용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한 자본공제, 특정 무형자산에 대한 자본공제로 이루어져 있다.

가. 시설 및 기계장치

1) 적용대상

자본공제란 사업에 사용되는 고정자산의 가치하락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이다. 소득세 목적상 공제대상이 아닌 감가상각과 기타 자본비용 대신 자본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자본공제 신청을 금지하고 있는 특정 자산을 제외하고는 사업에 사용된 시설 및 기계장치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자본공제로 신청할 수 있다.

시설 및 기계장치란 일반적으로 다음의 특성을 지닌 고정자산을 의미한다. ① 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고자산이 아니어야 한다. ② 회사의 사업 및 거래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사업을 수행하는 부지의 일부가 아니어야 한다.

적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은 카펫, 제품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용기, 전기장치(예: 에어컨시스템, 보안시스템, 스프링클러시스템, 전기장치), 가구 및 부착물, 산업 공장 및 기계, 오토바이, 자전거, 자동차(밴, 트럭, 버스 등), 이동 가능한 파티션, 사무실 집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및 통신설비), 전사용 가구 및 전등, 간판, 베니션 블라인드 등이다.

2) 공제액

자본공제는 ① 1차 연도에 100% 공제하는 자산과 ② 3개 연도에 걸쳐 공제하는 자산, ③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공제하는 자산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가) 100% 공제

1차 연도에 100%공제가 적용되는 자산은 컴퓨터, 사무자동화기기(팩스, 프린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기발전기, 로봇, 오염통제설비, 에너지효율화설비, 소음통제설비, 화학적 위험 통제설비, 기존 디젤차량을 대체하는 신형차량, 1,000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소액자산이다⁵⁶⁾.

2010년 발표한 예산안에서 새로 도입된 생산성 및 혁신지원제도(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⁵⁷⁾)의 대상자산에 사무자동화기기가 포함됨에 따라 최초 300,000싱가포르달러까지 250%를 공제하고 잔액에 대해서 100% 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소액자산의 경우에는 연간 합계액 30,000싱가포르달러 이내에서만 허용된다.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연간공제액(annual allowance)은 구입 가격의 100%이고 할부로 구입한 경우에는 할부원금의 100%가 연간공제액이 된다.

56) 소득세법 §19A

57) 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세지원 부분에서 다룬다.

〈사례 1〉 현금구입

2007 과세연도에 컴퓨터 SGD 2,000, 전화기 SGD 200을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 컴퓨터에 대한 연간공제액은 SGD 2,000, 전화기에 대한 연간공제액은 SGD 200이다.

〈연간공제액 및 공제적용 후 자산의 가치〉

	컴퓨터	전화기
원가	2,000	200
2008 과세연도의 연간공제액	2,000	200
공제적용 후 자산의 가치	0	0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9250>

〈사례 2〉 100% 공제대상 자산의 할부구입

컴퓨터를 SGD 2,000에 할부로 구입한 경우 연간 공제액은 할부원금이며, 할부원금에는 선급금(deposit)도 포함된다. 할부구입조건은 다음과 같다.

구입가격 SGD 2,000

선급금 : 100

할부이자 : 50(할부금 1회당 SGD 10)

할부회수 : 5회

할부금 : 390(할부원금 = 390 - 10 = 380)

SGD 100의 선급금과 2회의 할부금이 2007년 중에 지급되었고 나머지 할부금은 2008년에 지급되었다고 가정하면, YA 2008년과 YA 2009년의 연간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2008년 연간공제액 = 100% × (100 + (2 × 380)) = 860

2009년 연간공제액 = 100% × (3 × 380) = 1,140

〈연간공제액 및 공제적용 후 자산의 가치〉

	컴퓨터
구입원가	SGD 2,000
2008년 연간공제	860
공제적용후 자산의 가치	1,140
2009년 연간공제	1,140
공제적용후 자산의 가치	0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9250>

나) 3년 공제

YA 2009부터는 자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 및 기계장치에 대해서 3년에 걸친 자본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YA 2008년과 그 이전 과세연도에는 3년 자본공제는 3,000kg 미만의 사업용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제외한 모든 적격자산에 대하여 적용해 왔다.

3년에 걸쳐 공제하는 경우의 연간공제액은 현금구입의 경우 구입가격의 1/3이고 할부구입인 경우 할부원금의 1/3이다. 현금구매인 경우 자본공제금액의 산출은 간단하므로 할부구입의 사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3〉 3년 공제대상 자산의 할부구입

SGD 2,000의 사무기기를 2007년에 할부로 구매하였고 구매조건은 〈사례 2〉와 동일하고 2007년과 2008년의 지급금은 각각 SGD 860, SGD 1,140인 경우 연간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지출연도	선급금 및 할부원금 지급액	연도별 연간공제액			
		YA 2008	YA 2009	YA 2010	YA 2011
2007	860	287	287	286	
2008	1,140		380	380	380
계		287	667	666	380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9250>

2009년 예산안에 의해, YA 2010과 YA 2011의 과세대상기간에 취득한 시설 및 기계장치(plant and machinery)에서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3년이 아닌 2년에 걸친 가속상각이 허용된다. 이는 해당 기간 동안 새로운 공장 및 설비에 투자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신규 취득 시설 및 기계장치에 대해서는 취득 연도에 75%, 2차 연도에 25%를 공제하여 2년 이내에 원가를 회수하게 된다.

다) 내용연수 공제

YA 2009에 모든 시설 및 기계장치에 대하여 3년 공제를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소득세법의 6th Schedule에 따른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자본공제하였다. 이는 최초공제(initial allowance)와 연간공제(annual allowance)로 구분되는데, 최초공제란 구입한 해에 구입원가의 20%를 공제하는 것이고 연간공제액은 구입원가의 80%를 내용연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따라서 구입 첫해에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최초공제와 연간공제의 합계액이고 2차연도부터는 연간공제액만 공제할 수 있다. 최초공제액과 연간공제액을 식으로 나타내며 다음과 같다.

〈현금구입의 경우〉

$$\text{최초공제액} = \text{자산의 구입가격} \times 20\%$$

$$\text{연간공제액} = (\text{자산의 구입가격} \times 80\%) / \text{내용연수}$$

〈할부구입의 경우〉

$$\text{최초공제액} = \text{원금(선급금 포함)} \times 20\%$$

$$\text{연간공제액} = (\text{자산의 구입가격} \times 80\%) / \text{내용연수}$$

자동차 및 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의 내용연수는 6년이고 오토바이의 내용연수는 8년이다. 자동차란 7인승 이하이고 무게가 3,000kg을 넘지 않는 자동차를 의미한다.

‘S’-plated private passenger cars는 자본공제 적용대상 차량이 아니다.

에 대해서는 3년 공제 대신 2년 가속공제도 신청할 수 있다.

나. 산업용 건물

1) 적용대상

산업용 건물에 대한 자본공제(Industrial Building Allowance: IBA)는 산업용 건물 및 구축물에 대하여 과세기간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하여 공제하는 것이다. 자본공제가 허용되는 산업용 건물 및 구축물은 ① 제분소, 공장 및 기타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trade) ② 항만, 터널, 교량 건설 관련업 ③ 제품 및 원재료 생산 관련업 ④ 제품 및 원재료의 저장 관련업 ⑤ 집약적 가금류생산업 ⑥ 연구개발업 ⑦ 센토사섬에 있는 호텔용 건물 ⑧ 관광산업 발전 프로젝트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 적용한다⁵⁸⁾.

거주주택, 소매상, 전시장, 호텔(센토사섬 이외의 호텔) 및 부수적 목적의 사무실로 전부 또는 일부가 사용되는 건물 및 구축물은 산업용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⁵⁹⁾.

2) 공제액

가) 신축 건물

공제액은 초년도공제와 연간공제로 구분된다.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및 구축물의 건설에 대해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첫해에 지출액의 25%를 초년도공제로 차감한다. 승인된 센토사섬에 있는 호텔과 관광산업용 건물의 경우 초년도공제 적용율은 20%이다.

연간공제액은 지출액의 3%씩 지출액이 다 공제될 때까지 매년 동일액을 공제한다. 집약적 가금류업에 대해서는 5%, 센토사섬에 있는 호텔 및 관광산업(호텔 이외) 발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2%를 적용한다.

58) 소득세법 §18(1)

59) 소득세법 §18(3)

초년도공제액은 건설중인 기간에도 적용하지만 연간공제는 건축이 완료되어 사용이 시작된 후부터 적용한다.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에 대한 연간공제는 50년 이내로 공제기간이 제한된다.

〈사례 4〉 산업용건물의 신축

제조업을 하는 XYZ사는 2007년에 건물의 건축을 시작하였고 완성되어 사용이 시작된 것은 2009년 6월 1일이다. XYZ의 회계기간 종료일은 12월 31일이고 비용은 다음과 같이 발생하였다.

2007.1.1 ~ 2007.12.31.	토지구입비	SGD 270,000
	건축비	500,000
	건축사수수료	5,000
	법률비용	10,000
2008.1.1 ~ 2008.12.31.	건축비	270,000
	건축사수수료	3,000
2009.1.1 ~ 2009.6.30	건축비	730,000
	건축사수수료	8,000

토지구입비와 법률비용은 적격한 지출이 아니므로 연도별 적격한 지출금액은 다음과 같다.

2007	SGD 505,000
2008	273,000
2009	738,000
	1,516,000

① XYZ가 건물 건축이 시작되기 전에 적격한 활동(예를 들면, 제조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경우 자본적 공제 적용례

YA 2008	초년도공제(SGD 505,000×25%)	SGD 126,250
YA 2009	초년도공제(273,000×25%)	68,250
YA 2010	초년도공제(738,000×25%)	184,500
	연간공제 (1,516,000×3%)	45,480 229,980

② 건물이 사용에 들어간 2009.6.1.에 제조업을 시작한 경우 자본적 공제 적용례

YA 2010	초년도공제 (SGD 1,516,000×25%)	SGD 379,000
	연간공제 (1,516,000× 3%)	45,480 424,480

자료: CCH, *Singapore Master Tax Guide Handbook* 2010/11, 2010.

나) 취득한 건물

기존의 산업용 건물을 구입한 경우에는 적격한 건물이라도 초년도공제는 적용할 수

없다. 연간공제는 건물의 구입 시 발생한 비용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 무형자산

1) 대상자산

싱가포르를 지적재산의 중심지 및 지식기반경제로 성장시키고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이 취득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자본공제(write-down allowance: WDA)를 허용한다⁶⁰⁾. 대상이 되는 지적재산권에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등록의장,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집적회로의 레이아웃설계(layout designs of integrated circuit), 기업비밀(trade secrets), 상업적 가치가 있는 정보 등이다.

싱가포르 법인이 법적인 소유권을 갖는 것이라면 2003년 11월 1일~2013년 10월 31일 기간에 발생한 지출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자본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취득한 지적재산권이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로부터 200만싱가포르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구입하였거나 특수관계가 있는 제3자로부터 500,000싱가포르달러 이상을 지출하고 구입한 경우에는 제3자의 독립적인 평가보고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2) 공제액

지적재산권에서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5년간 정액법으로 상각할 수 있다. 자본적 지출에는 법률비용, 등록비용, 인지세, 기타 취득과 관련된 비용은 제외된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생한 지출은 사업이 시작된 날에 발생한 것으로 처리한다.

2009년 예산안에서는 방송 및 디지털 오락산업(Media and Digital Entertainment, 이하 'MDE' 라 함)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해당 산업 관련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가속상각하도록 하였다. 가속상각의 상각기간은 일반 지적재산권이 5년인 데 반해 2년으로 줄어든다. 가속상각은 2009년 1월 22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의 기

60) 소득세법 §19B

간에 취득한 MDE 콘텐츠에 대한 적절한 지적재산권을 승인한 과세기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원가공동부담계약(cost-sharing agreement)에 의한 연구개발에서 발생한 자본적 지출의 자본공제 기간은 2006년 2월 17일 이후에 시작된 1년의 원가공동부담계약의 경우 발생한 연도에 100% 공제되고 2006년 2월 17일 이전에 있었던 5년의 원가공동부담계약은 연간 20%씩 공제한다. 1년에 100% 공제하는 제도는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법인들과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지원제도이며,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활동은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6. 조세지원제도

싱가포르는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액 또는 일부 과세면제, 저율과세, 투자공제, 특별공제 등이 있다. 다양한 산업에 대해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금융산업에 대해 많은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주사무소⁶¹⁾(headquarters)에서 벌어들인 적격 소득에 대해서는 5% 또는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직접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한 주요 조세지원은 신설법인에 대해 5년에서 15년까지 과세면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비거주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수출 업무에 해당되는 조세지원제도인 적격소득의 90% 과세면제가 적용된다.

연구개발비용, 지적재산비용, 수출 및 시장개발 촉진비용, 해외투자개발 및 금융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서는 특별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가. 신설법인에 대한 과세면제제도⁶²⁾

신설법인에 대한 과세면제제도(partial tax exempt)는 2004년 예산안을 통해 도입

61) 주사무소에는 operational headquarters, global headquarters, business headquarters, manufacturing headquarters 등이 있다.

62) CCH, *Singapore Master Tax Guide Handbook 2009/10*, 2009, p. 28

된 것으로 신설법인은 그들의 소득 중 상당부분을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상적으로 산출된 과세표준(chargeable income)의 최초 100,000싱가포르달러는 전액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표준 200,000싱가포르달러까지의 금액에 대해서는 50%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대 과세면제되는 금액은 200,000싱가포르달러가 된다.

이러한 과세면제제도는 최초 3개 과세연도에 대해서 적용된다. 최초 적용 과세연도는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과세연도이다.

신설법인이 과세면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싱가포르 내에서 설립된 법인이어야 함
- ② 해당 과세연도에 싱가포르의 과세주체인 거주자이어야 함
- ③ 관련 과세연도 기간에 총주주지분을 직·간접적으로 20명 이하의 주주가 보유하여야 함
- ④ 관련 과세연도 기간에 모든 주주가 개인이어야 함

YA 2009부터 모든 주주가 개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관련 과세기간에 있어서 1인의 주주가 보통주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않는 한 법인주주가 있는 신설법인도 과세면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개정사항은 기존에 설립 후 3개연도 이내에 있는 기존 법인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면, 2006년 7월 1일에 설립되었고 2007년 6월 30일에 1차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법인인 주주가 있더라도 YA 2009와 YA 2010에 신설법인으로서의 과세면제 자격이 있다.

나. 생산성 및 혁신 지원제도

1) 개관

생산성 및 혁신 지원제도(Productivity and Innovation Credit)는 2010년 예산안을 통해 도입된 것으로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의 투자에 대하여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다. 공제대상 지출은 ① 연구개발 ② 지적재산권 등록(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plant 등 포함) ③ 지적재산권의 취득(예를 들면, 회사가 사업 목적상 특허권 및 저작

권의 구입) ④ 자동화 ⑤ 종업원 훈련 ⑥ 디자인에의 투자 등이다.

모든 법인은 YA 2011부터 YA 2015까지 위의 6가지 분야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지출한 금액의 250%를 공제할 수 있다. YA 2011과 YA 2012의 경우, 6가지 분야에 대하여 각 분야별 종합 공제한도가 600,000싱가포르달러이고 YA 2013~2015의 기간에는 분야별 연간 공제한도가 300,000싱가포르달러이다. 따라서 2011년과 2012년에는 각 활동별로 2년간 총 600,000싱가포르달러까지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고 2013~2015년 기간 동안 6개의 각 분야에 대해 매년 300,000싱가포르달러까지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대상활동	적격 지출 범위	공제액	적격지출 사례
연구개발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적격한 R&D활동을 위한 직원 및 소모품 비용	최초 SGD 300,000 ²⁾ 에 대해 250% 공제, 초과액은 150% 공제	신제품개발을 위한 싱가포르에서의 연구인력 급여와 연구기관 수수료
지적재산권 등록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설비(plant) 등의 등록에 발생한 비용	최초 SGD 300,000 ²⁾ 에 대해 250% 공제, 초과액은 100% 공제	상표권 등록을 위해 IPOS ³⁾ 에 납부한 수수료
지적재산권 취득	사업에 사용될 지적재산권 취득에 발생한 비용	최초 SGD 300,000 ²⁾ 에 대해 250% 공제, 초과액은 100% 공제	제조공정에 사용하기 위한 특허된 기술 구입비용, 해외상표권 구입비용
자동화	자동화설비 취득에 발생한 비용	최초 SGD 300,000 ²⁾ 에 대해 250% 공제, 초과액은 100% 공제	팩스, 레이저프린터, 컴퓨터 등 IT설비 비용
종업원 훈련	종업원을 위한 외부훈련 및 WDA ¹⁾ 가 승인한 사내훈련에 발생한 비용	최초 SGD 300,000 ²⁾ 에 대해 250% 공제, 초과액은 100% 공제	직원을 위한 외부교육 비용
디자인	신제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에 발생한 비용	최초 SGD 300,000 ²⁾ 에 대해 250% 공제, 초과액은 100% 공제	신제품디자인 개발을 위한 디자이너 비용

주: 1) Workforce Development Agency

2) YA 2011과 YA 2012의 각 활동에 지출한 2개 연도의 총한도는 600,000싱가포르달러이다.

3)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of Singapore

2) 적용기한

생산성 및 혁신 지원제도는 YA 2011부터 YA 2015까지 5년간 유효하다. 적격지출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발생하여야 한다. 즉, 신고연도 이전 연도에 종료하는 회계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기초로 한다. 예를 들면, 회계연도가 9월 30일에 종료하는 경우, 2011신고연도에서 공제를 받으려면 2009년 10월 1일부터 2010년 9월 30일의 기간에 발생한 비용이어야 한다.

3) 현금보조금으로의 전환

소규모법인이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에 유동성 측면에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제액 300,000싱가포르달러까지(1,500싱가포르달러 미만은 제외)의 금액에 대하여 7%를 적용하여 현금보조금(cash grant)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매년 전환 가능한 최대 금액은 21,000싱가포르달러이다. YA 2011과 YA 2012에는 600,000싱가포르달러에 대해 7%까지 전환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2개 연도 동안 연간 총 42,000싱가포르달러까지의 현금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금보조금으로의 전환은 과세소득은 낮지만 기술 또는 사업의 확장에 투자함으로써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이다. 현금보조금으로의 전환은 YA 2011부터 YA 2013까지 3년간 유효하다.

현금보조금으로의 전환의 적용요건은 적격한 비용이 발생했고 해당 기간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어야 하며 최소 3명의 현지인(싱가포르 시민 또는 CPF contributions을 납부하는 자) 종업원이 있어야 한다.

〈사례〉

회계기간이 9월 30일에 종료하고 CPF contribution을 납부하는 25명의 종업원이 있는 A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적격한 비용이 발생하였다.

YA 2011: SGD 400,000의 자동화 설비

YA 2012: SGD 350,000의 자동화 설비

YA 2013: 연구개발활동에 SGD 600,000 지출하였고, 그 중 SGD 500,000이 §14DA에 의해 적격한 지출이다.

각 연도별 A 법인이 신청한 공제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SGD)

	YA 2011	YA2012	YA 2013
적격한 지출 발생액	400,000	350,000	총지출: 600,000 §14DA 지출: 500,000
적격지출에 대한 공제한도 ¹⁾	한도 600,000를 넘지 않음	200,000(=600,000-400,000)	300,000
공제액	400,000×250% = 1,000,000	(200,000×250%)+(150,000×100%)= 650,000	(300,000×250%)+(200,000×150%)+(100,000×100%)= 1,150,000
차감: 현금보조금으로 전환할 금액 ²⁾	450,000	150,000	300,000
소득에서 공제할 금액(현금보조금 전환 후 잔액)	550,000	500,000	
총현금보조금 ³⁾	450,000×7%=31,500	150,000×7%=10,500	300,000×7% = 21,000

주: 1) YA2011과 YA2012에는 적격지출에 대하여 활동별 종합한도 SGD 600,000이 적용되고 YA2013~2015 기간에는 각 활동별 연간 한도 SGD 300,000이 적용된다.

2) YA2011과 YA2012에 현금보조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총액은 SGD 600,000이고 2013년에 전환될 수 있는 총액은 SGD 300,000이다.

3) YA2011과 YA2012년의 현금보조금 종합한도는 SGD 42,000, YA2013년의 연간한도는 SGD 21,000이다.

위의 사례의 경우 국세청은 A법인으로부터 현금보조금으로의 전환 신청을 받고 각 해당연도에 31,500싱가포르달러, 10,500싱가포르달러, 21,000싱가포르달러를 A법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현금보조금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후 소득세 신고서 제출기한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손실

가. 사업손실

사업활동(trade, business, profession, 이하 'TBP' 라 한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그 소득의 원천에서 공제한다. 또한 비용이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사업손실이라 하고 TBP로부터의 손실은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손실금액의 이월은 주식보유테스트(shareholding test)에 부합하는 경우 무기한 이월이 가능하다. 주식보유테스트란 회사의 주주가 손실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손실을 상계하는 과세연도 사이에 50%를 초과하여 변경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제하지 못한 자본공제의 이월공제를 하는 경우에도 역시 주식보유테스트를 만족하여야 하고 또한 추가적으로 동일사업테스트(same business test)도 요구된다.

100,000싱가포르달러까지의 손실은 자본공제가 허용된 해 또는 사업손실이 발생한 해의 직전 연도인 1개 연도로 소급하여 과세가능소득(assessable income)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100,000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공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YA 2009와 YA 2010 동안 공제하지 못한 200,000싱가포르달러까지의 손실은 자본공제가 허용된 해 또는 사업손실이 발생한 해의 직전 3년까지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소급공제를 적용하려면, 동일사업테스트와 실질적인 주식보유테스트를 만족하여야 한다.

1) 손실의 전기이월공제

YA 2006 이전에는 공제하지 않은 자본공제와 사업손실을 미래의 이익과 상계하기 위해 이월하거나 그룹 내 회사로 이전하는 것이 허용되었다(예: group relief).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특히 경기 하강기에 있어서 현금흐름에 문제가 있는 소규모 법인에게에는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YA 2006부터 소규모 법인의 요구에 따라 공제하지 못한 자본공제와 사업손실에 대한 1년의 전기이월공제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손실의 전기이월공제제도는 오로지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것 중 공제하지 못한 자본공제와 사업손실에 대해 직전 1개연도로의 이월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월할 수 있는 자본공제와 손실 금액은 100,000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한다. 손실의 전기이월공제제도는 자영업자(sole proprietors)와 파트너십에도 적용한다. 동 제도를 적용하려면 실질적인 주식보유테스트와 동일사업테스트를 만족하여야 한다. 이는 사용하지 않은 자본공제와 사업손실의 차기이월공제 요건과 유사하다. 전기이월공제는 해당 법인이 신청한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2009예산안에서 확대된 전기이월 공제제도(Enhanced Carry-Back Relief System)를 도입하였다. 이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YA 2009와 YA 2010에 대해 손실의 전기이월공제제도의 이월기간을 일시적으로 직전 3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소급하여 공제하는 순서는 먼저 직전 3년의 소득과 상계하고, 그 다음으로 직전 2년, 직전연도 순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YA 2009에 사용하지 않은 사업손실은 우선 YA 2006의 소득과 상계하고 그 다음으로 YA 2007, YA 2008의 소득과 상계한다. 전기로 이월하여 공제하는 금액은 100,000싱가포르달러에서 200,000싱가포르달러로 인상하였다. 확대 적용되는 이월제도 역시 주식보유테스트와 동일사업테스트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신설법인에 대한 전기이월공제제도

신설법인에 대한 과세면제제도(Tax Exemption Scheme New Start-up companies)가 적용되는 회사는 YA 2009와 YA 2010 기간의 적절한 공제(사용하지 못한 자본공제와 사업손실)를 손실이 발생한 신고연도 직전 3개 연도에 대한 과세소득(assessable income)과 상계할 수 있다. 손실의 전기이월공제를 적용한 후에, 만일 과세표준(chargeable income)이 0이면, 그 기업은 신설법인에 대한 과세면제제도로 인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만일 과세표준이 있으면, 신설법인에 대한 과세면제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에 대해 최초 100,000싱가포르달러까지 청구할 수 있고 추가적인 50% 과세면제는 다음 200,000싱가포르달러의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한다(YA 2008부터 적용).

확대된 전기이월공제제도는 신설법인에 대한 과세면제제도를 선택하지 않은 기업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일단 적용을 선택하면 취소할 수 없다.

3) 적용신청

전기이월공제제도의 적용은 소득세신고서(Form C)를 제출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적용 선택 여부를 소득세 신고서에 표시하고 전년도의 수정된 세액을 산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 신고서 제출일 이전에 전기이월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자본공제 및 자본공제의 이월 신청서(Election Form for Carry-Back of Capital Allowance & Trade Losses)를 제출한다.

확대된 손실의 전기이월을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새로운 손실이월신청서(Election Form for Loss Carry-Back)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신청양식은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부터 당해연도 소득세신고서 제출일 전까지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나. 자본손실

자본손실금액은 과세소득 산출 시 공제하지 않는다.

다. 그룹법인 간 손실이전제도

그룹법인 간 손실이전제도(Group relief)란 그룹기업을 하나의 단일 기업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손실이전제도에 따르면, 당해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자본공제, 사업손실⁶³⁾, 기부금이 있는 경우, 동일 그룹 내에 있는 다른 기업의 과세가능소득(assessable income)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하지 못한 자본공제, 사업손실, 기부금을 ‘손실항목(loss items)’ 이라고 한다.

63) business losses including further ded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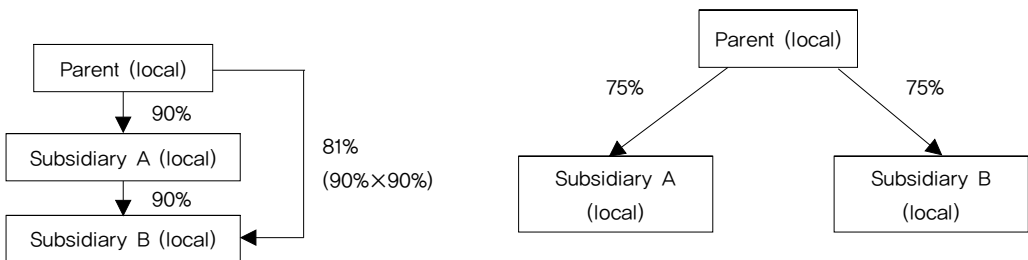
이러한 손실항목을 이전하는 기업은 ‘양도자(transferor)’가 되고 손실항목을 수취하는 기업은 ‘청구자(claimant)’가 된다.

동 제도는 YA 2003부터 도입되었고 양도자는 자신의 손실항목을 청구자에게 넘길 수 있으며, 양도자와 청구자는 반드시 동일 그룹 내의 기업이어야 한다.

1) 손실이전제도의 적용 범위

양도자와 청구자의 요건은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법인으로 동일 그룹에 속한 법인이어야 하고 주주 보유율 75%를 유지하며 회계기간이 동일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2개의 법인 중 하나의 법인의 보통주 지분의 75% 이상을 다른 하나의 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면 그 2개의 법인은 동일그룹 내의 법인에 해당한다. 동일그룹의 유형은 [그림 2-Ⅱ-1]과 같다.

[그림 2-Ⅱ-1] 동일그룹 유형



손실이전제도에서 주식보유비율을 결정할 때 비거주자인 법인에 의한 주식 보유는 제외된다. 다시 말해서, 소유권의 연결관계에서 외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직·간접적인 주식 보유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법인이 아닌 실체, 예를 들면 협회(trade association), 개인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주식보유도 제외한다.

75% 이상의 보통주 보유율은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지분보유와 관련하여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첫 번째 요건은 보통주 주식보유 요건(Ordinary shareholding requirement)이다. 이는 법인의 자본지분의 75%의 소유권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주(Ordinary shares)란 변동하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 모든 주식이고 배당에 대한 고정된 권리를 갖는 주식은 제외된다.

두 번째 요건은 이익 및 자산 분배 요건(Profits and assets available for distribution)이다. 보통주 보유자는 법인의 지분 보유자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잔여지분과 청산시 지분 보유자에게 분배할 수 있는 잔여자산의 75%까지 직·간접적인 권한이 있음을 제시하여야 한다⁶⁴).

동일 그룹 내의 법인들은 손실이전을 신청하려면 회계연도가 동일하여야 한다. 이 요건은 양도자와 청구자 사이에만 필요한 요건이다. 예를 들어, A법인이 양도자이고 B법인은 청구자이며 두 법인은 모두 C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동일그룹에 속해 있는 경우, C법인은 손실항목의 양도자도 아니고 청구자도 아니라면 동일한 회계연도를 가질 필요는 없다.

2) 이전 가능한 손실항목 및 금액

이전 가능한 손실항목은 당해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자본공제, 사업손실, 기부금이다. 그러나 다음의 항목은 손실이전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① 외국 지사(branch)의 손실항목
- ② 투자공제(investment allowance)
- ③ 과세가 전액 면제되는 소득과 관련된 손실항목(예: pioneer trade로부터의 손실)
- ④ 공제하지 못한 손실과 자본공제를 격리하는 규정이 있는 활동 및 거래와 관련된 손실항목(예: 소득세법 §10D에 의한 금융리스에서 발생한 이익, 소득세법 §10H에 의한 자동차 대여로부터의 소득)
- ⑤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 Act에 의한 조세지원을 적용받는 법인의 손실

64) 손실이전제도의 목적상 잔여이익이란 모든 주식에 대해 고정된 배당을 차감하고 난 후의 법인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고 잔여자산이란 commercial loan 채권자와 보통주 외의 주주에게 분배한 후 청산(notional winding-up)에 따른 법인의 순자산을 의미한다.

항목

⑥ §10E 법인의 손실항목

⑦ 공제하지 못한 §14Q 특별공제

손실항목을 이전하는 법인은 자신의 손실항목의 100%를 청구자인 법인에 의해 공제될 수만 있다면 이전할 수 있으며 75% 이상의 주식보유비율은 과세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3) 손실항목의 이전 방법

손실항목의 양도 법인이 하나 이상의 청구 법인에게 손실항목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첫 번째 청구 법인의 과세가능소득(assessable income)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을 전액 공제하고 공제 가능한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에 한해 두 번째 청구 법인으로 이전한다. 마찬가지로, 청구 법인도 하나 이상의 양도 법인으로부터 손실항목을 넘겨받을 수 있지만, 첫 번째 양도 법인으로부터 이전된 손실항목이 청구 법인의 과세가능소득에서 전액 공제된 후에 두 번째 양도 법인으로부터 이전된 손실항목을 공제할 수 있다.

4) 손실이전의 신청

손실항목을 이전하려면, 양도 법인은 Form GR-A를 작성하고 청구 법인은 GR-B를 작성하여 소득세신고서인 Form C와 함께 제출한다.

일단 신청서를 제출하면 취소할 수 없으며, 만일 GR-A 또는 GR-B를 Form C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당해 연도에는 손실이전을 적용할 수 없다.

청구 법인이 손실항목을 하나 이상의 양도 법인으로부터 받길 원하거나 또는 양도 법인이 하나 이상의 청구 법인에게 손실항목을 이전하기 원하는 경우, 양도 법인 또는 청구 법인의 우선순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양도 법인이 제출한 우선순위가 청구 법인이 제출한 우선순위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양도 법인이 제출한 우선순위를 사용한다.

일단 신청서가 제출된 후에는 손실이전 신청서를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서 제출 시 우선순위 등을 정확히 기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과 결정 시 과세소득에서 결손으로 또는 결손에서 과세소득으로 변경되는 등 해당 법인의 과세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된 신청서(GR form)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된 신청서(GR form)는 부과(amended/additional assessment)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구 법인의 과세소득 부과 결정 시 과세소득에서 결손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자신이 새로운 양도 법인이 되면서 부과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Form GR-A를 제출할 수 있다. 새로운 양도 법인으로부터 손실항목을 이전받게 되는 청구 법인도 부과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Form GR-B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해당 청구 법인이 이미 Form GR-B를 제출한 상태라면, 과거에 제출한 우선순위는 변경할 수 없지만 새로운 양도 법인을 추가할 수는 있다.

마찬가지로 양도 법인의 과세소득 부과 결정 시 결손에서 과세소득으로 전환된 경우, 과거에 제출한 Form GR-A는 취소된다. 따라서 새로운 청구 법인이 되어 부과일 이후 30일 이내에 Form GR-A를 제출함으로써 손실항목을 이전받을 수 있다. 새로운 청구 법인에 의해 청구된 손실항목을 이전하는 양도 법인도 부과일 이후 30일 이내에 Form GR-A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양도 법인이 이미 Form GR-A를 제출한 법인이면, 과거에 정한 순위는 변경할 수 없고 새로운 청구 법인을 추가할 수는 있다.

8. 세율 및 세액의 계산

가. 세율 및 과세면제제도

법인의 경우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로 과세한다. YA 2010년 세율은 17%로 YA 2009 세율인 18%에 비해 1%포인트 인하되었다. 그러나 300,000싱가포르달러까지는 부분적인 과세 면제(partial tax exempt)가 적용되기 때문에 300,000싱가포르달러 미만 소득에 대한 실질적인 세율은 약 8.5%이다. 과세면제 금액은 최초 10,000싱가포르달러까지는 75%, 이후 290,000

싱가포르달러까지는 50%이므로 300,000싱가포르달러까지의 소득에 대한 총과세면제 금액 152,500싱가포르달러 $(=(10,000 \times 0.75) + (290,000 \times 0.5))$ 이다.

싱가포르는 YA 2001 이후 최근까지 세율을 계속 인하시키고 과세면제 금액의 규모도 증가시킴으로써 세부담을 상당히 완화시키고 있다. 세율은 YA 2001에 25.5%이었으나 계속 인하하여 YA 2010 현재는 17%이다. YA 2004에 종전의 납부세액의 일정부분을 환급(rebate)하는 방식에서 과세소득의 일정부분을 비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하였고 도입시점인 YA 2004에 최고 52,500싱가포르달러까지 허용되던 과세면제 금액이 YA 2008에는 152,500싱가포르달러로 대폭 상향조정되었다.

〈표 2-11-3〉 세율 및 부분과세면제제도

	세율	세액환급 및 부분과세면제 금액
YA 2001	25.5%	- 세액환급액: 납부할 세액 SGD 25,000의 50% + SGD 25,000 초과액의 5%
YA 2002	24.5%	- 세액환급액: 납부할 세액의 5%
YA 2003~YA 2004	22%	- 과세면제액: 과세표준 SGD 10,000의 75%+ SGD 90,000의 50%(최대 SGD 52,500)
YA 2005~YA 2007	20%	- 과세면제액: 상동 - 적격한 신설법인의 최초 3년간 과세면제액: SGD 100,000까지 100%
YA 2008~YA 2009	18%	- 과세면제액: 과세표준 SGD 10,000의 75% + SGD 290,000의 50%(최대 SGD 152,500) - 적격한 신설법인의 과세면제액: SGD 100,000까지 100%+ SGD 200,000의 50%(최대 SGD 200,000)
YA 2010	17%	상동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410>

나. 세액의 계산

사업(trade, business or profession: TBP)을 수행하는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납부할 세액의 산출은 회계상의 세전 순이익에서 시작하여 다음의 과정을 거쳐 산출된다.

- ① 세전순이익으로부터 다음의 조정을 거쳐 자본공제 차감 전 조정소득(tax

adjusted profit from TBP)을 산출한다.

- 손익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10(1)(a)에 의한 과세소득⁶⁵⁾ 이외의 소득(싱가포르의 송금 여부와 관계없이 국외원천소득도 포함)을 차감한다.
- 손익계정에 포함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다.
- 손익계정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과세대상인 금액을 가산한다(예: 전년도의 국외원천소득 중 당해연도 수취분).
- 손익계정에 포함된 비용이지만 과세목적상 공제대상이 아닌 비용을 가산한다(예: 감가상각비, 자본성격의 손실, §15에 의해 공제가 금지되는 비용).
- 적격한 공제항목이지만 손익계정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을 차감한다(예: §14D에 의한 연구개발비 특별공제).
- 추가적인 공제가 허용되는 공제항목을 차감한다(예: §14E에 의한 연구개발비 추가공제).

② 자본공제 차감 후 조정소득을 산출하기 위하여 다음 순서로 차감한다.

- 과거 연도에 공제하지 못한 자본공제를 선입선출 방식에 따라 차감한다.
- 당기에 발생한 자본공제 금액 차감한다.

③ ②에서 산출된 조정소득에 다른 원천 순소득을 가산한 후 공제하지 못하고 남은 자본공제를 차감하면 법정소득(statutory income)이 된다.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ext{법정소득} = A + B - C$$

A: ②에서 산출한 조정소득

B: 다른 원천 순소득(비용을 차감한 순소득)

C: ②에서 공제하지 못한 자본공제

C 금액이 (A+B) 금액보다 크면, 법정소득은 0이 되고 공제하지 못한 자본공제는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당해연도의 공제와 관련하여 공제하지 못한 자본공제는 그룹 법인 간 손실이전제도(loss system of group relief)에 의해 그룹 내의 법인으로 이전하거나 직전 신고 및 부과연도(YA)로 소급하여 이월하는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적

65) TBP로부터 발생한 gains or profit을 의미한다.

용할 수 있다.

- ④ 전년도에서 공제하지 못한 사업손실(TBP loss)과 기부금을 차감하여 과세가능소득(assessable income)을 산출한다. 사업손실이란 자본공제 차감전 조정소득(tax adjusted profit from TBP)의 산출 결과가 음(-)인 경우, 그 손실 금액을 의미하며, 전기에서 이월된 사업손실은 법정소득에서 차감하도록 한다. 사업손실은 동일 사업의 법정소득, 다른 사업의 법정소득, 기타 다른 원천 소득의 순서로 서로 상계한다.
- ⑤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적용되는 과세면제제도(partial tax exemption scheme)에 의한 과세면제액을 차감한 후 과세표준(chargeable income)을 산출한다.
- ⑥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세액에서 국내세법 등에 의해 공제 가능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된다.

[그림 2-11-2] 법인세 세액 산출과정

<p style="text-align: center;">회계상 순이익(당기순이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상 비과세소득 및 손익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 + 세무상 공제대상이 아닌 비용, 손익에 포함되지 않는 과세소득 = CA 차감전 조정소득(tax adjusted profit from TBP before CA) - 전기에서 이월된 CA, 당기 CA = CA 차감후 조정소득(tax adjusted profit from TBP after CA) + 기타원천 순소득 - 공제하지 못하고 남은 CA = 법정소득(statutory income) - 전기에서 이월된 사업손실(TBP loss), 기부금 = 과세가능소득(Assessable income) - 과세면제소득(partial tax exemption), 사업손실 소급분 = 과세표준(Chargeable income) × 세율 = 산출세액(tax liability) - 외국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tax payable)

9. 법인세 행정

법인세와 소득세는 모두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 행정에서 다른 내용이 법인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내용만 소개하고 있다.

가. 과세기간

일반적으로 과세대상기간은 역력을 따르지만 법인의 소득은 법인의 회계연도를 기초로 계산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은 전년도를 기초로 계산되는데, 예를 들면, 당해 신고 및 부과연도(YA)의 납부할 세액은 싱가포르 내에서 직전 역년 또는 회계연도에 발생하였거나 수취한 소득을 기초로 산출된다.

나. 세금신고서 제출

세금계산서(tax computation)는 법인의 회계자료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산출하기까지의 조정과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러한 세금계산서 자료는 법인의 회계자료, Form C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법인의 과세표준(chargeable income)은 회계상의 순손익과 차이가 있다. 이는 법인 단계에서의 비용이 세무 목적상 공제되지 않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법인단계에서 소득이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비거래원천소득(non-trade source income)으로 분리되어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자본공제(capital allowance)를 신청하거나 전년도로부터 이월된 사용하지 못한 손실 및 자본공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조정이 발생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과세되지 않는 소득의 차감
- 비거래소득(non-trade income)으로 분리되어 과세되는 투자소득(예: 이자, 배당, 임대소득)의 차감

-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의 가산
- 투자소득과 관련된 직접 비용의 가산
- 적용가능한 작업장의 개조(renovation or refurbishment)에서 발생하는 지출에 대한 소득세법 §14Q 공제액의 차감
- 이자, 배당, 임대료와 같은 순투자소득(투자소득 관련된 직접비용 차감 후) 가산
- 이전 신고 및 부과연도에서 이월된 공제하지 못한 자본공제의 차감
- 고정자산에 대하여 청구하고자 하는 당기의 자본공제의 차감
- 이전 신고 및 부과연도에서 이월된 공제하지 못한 손실과 기부금의 차감
- 공익성이 인정되는 단체에 대한 기부금액의 차감

순손익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도 세금계산서의 작성이 포함된다.

세금신고서 제출에 따라, 소득세 최고책임자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절차가 이루어진다. 업무가 중단된 회사는 소득세 신고서 제출 포기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 세액의 납부

세금을 미리 중간납부하는 제도는 없고 세금의 부과고지가 있을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과 내용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 납부한 금액은 환급된다.

라. 사전답변제도

납세자들은 국세청(IRAS)에 사전답변(advance ruling)을 요청할 수 있다. 사전답변 제도는 특정 납세자에게 어떻게 소득세법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법령 해석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다.

마. 회계기간의 변경

회계기간에 변경이 있거나 회계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조정된 손익을 각 신고 및 부과연도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기간(basis period)에 속하는 일수 또는 월수를 기초로 서로 다른 신고 및 부과연도로 배분하여야 한다.

Ⅲ. 파트너십

1. 파트너십의 특성과 유형

가. 파트너십의 특성

파트너십은 회사와 달리, 법인격을 갖지 않고 과세목적상 별도의 과세 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파트너십의 파트너에 대해서는 파트너십으로부터의 분배받은 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과세한다. 파트너가 개인인 경우, 파트너십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은 소득세 세율에 따라 과세하고 파트너가 법인인 경우에는 파트너십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율에 따라 과세한다. 파트너십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지만 매년 파트너십이 벌어들인 소득과 파트너십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 공제를 보여주기 위한 세금신고서를 제출한다.

파트너십이란 파트너 전원 또는 파트너 중 1인에 의해 수행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분배할 것에 동의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파트너십은 개인으로 국한시킬 수 없고 두 회사 간의 조인트벤처 또는 회사와 개인의 조인트벤처도 파트너십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주택과 같은 부동산의 공동소유만으로 파트너십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이익추구라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모임만으로 파트너십이 될 수는 없다.

파트너십은 ACRA(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에 등록되어야 한다. 그러나 파트너십의 존재 여부는 법적인 측면보다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파트너십 합의가 존재하는지, 파트너십이 ACRA에 등록되었는지, 이익과 손실의 분배기준은 무엇인지, 파트너십이 은행계좌를 갖고 있는지, 모든 파트너가 사업에 참여하는지 또는 일부 파트너가 사업에 참여하는지와 같은 사항으로 파트너십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나. 파트너의 유형

파트너의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각 파트너 유형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세목적상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파트너의 유형을 보면, 사업참여파트너(full partner), 급여파트너(salaried partner), 대표파트너(precedent partner), 지분파트너(sleeping partner), 법인파트너(corporate partner) 등이 있다.

사업참여파트너라 함은 파트너십의 사업을 완전히 그리고 실제로 수행하고 이익과 손실을 분담하는 파트너이다. 사업참여파트너는 사업소득 및 전문가 소득(income from a business or professional source) 형태로 과세한다. 급여파트너란 파트너십에 단순히 고용되어서 고정된 급여와 일정 부분의 보너스를 받는 파트너이다. 급여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손실을 분배받지 않고 영업권에 대한 권리가 없고 파트너십에 직접적인 권한을 갖지 않는다. 이들은 근로소득(income from employment source) 형태로 과세된다. 그러나 일부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소득(carrying on a business) 형태로 과세되기도 한다. 대표파트너(precedent partner)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모든 파트너들 중에 파트너십 합의에 맨 처음으로 지명되는 파트너이다. 만일 파트너십 합의가 없다면, 대표파트너는 파트너십의 다른 파트너들의 합의에 의해 선출된 파트너이다. 지분파트너란 오로지 자본만을 파트너십에 투자하고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는 파트너이다. 이들은 사업소득 형태로 과세되지만 근로소득감면(earned income relief)은 받을 수 없다. 법인파트너란 파트너십의 파트너로 참여한 법인을 말한다.

다. 파트너십의 유형

파트너십의 종류는 일반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 유한책임파트너십(LLP: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과 유한파트너십(LP: Limited Partnership)으로 구분된다.

유한책임파트너십이란 별도의 법인격 지위를 갖고 파트너십으로서의 사업 운영이 허용되는 사업체이다. 그러나 과세목적상 유한책임파트너십은 별도의 과세실체는 아

니다. 이것은 유한책임파트너십이 납세의무가 없음을 의미한다. 대신 각 파트너들은 유한책임파트너십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닌다. 유한책임파트너십으로부터 분배받은 자본공제와 사업손실은 당해연도 파트너의 다른 소득과 상계할 수 있다.

파트너가 유한책임파트너십에 출자한 자본은 파트너가 현금 등의 형태로 파트너십에 출자한 금액과 파트너로 있었던 과거 과세기간에 유한책임파트너십에 의해 수행된 사업(trade, business, profession, vocation)으로부터의 이익 중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합계이다. 부동산, 주식, 유가증권, 지적재산권(가치가 500,000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등의 출자에 대하여 파트너는 세금신고서 제출과 함께 별도의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한책임파트너십의 파트너의 출자자본금은 출자한 자본의 인출이나 과거에 사업에서 발생하였으나 인출하지 않았던 이익을 인출하는 경우 감소한다.

무한책임파트너십의 소득세 신고절차는 파트너십과 동일하다. 그러나 사업손실이 발생한 무한책임파트너십은 손실이 발생한 해에 Capital Contribution Form을 제출하여야 한다.

유한파트너십은 파트너로부터 분리된 법인격 없이 파트너십으로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체이다. 유한파트너십은 최소한 1인의 무한책임파트너(general partner)와 1인의 유한책임파트너(limited partner)로 구성된다.

유한책임파트너십과 마찬가지로 유한파트너십도 파트너십 단계에서의 납세의무는 없다. 대신, 각 파트너가 파트너십으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에 대하여 과세한다. 파트너가 개인인 경우 개인소득세율을, 파트너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유한파트너십의 유한책임파트너는 과세목적상 유한책임파트너십의 파트너들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한편, 유한파트너십의 사업손실, 산업용 건물 공제 및 자본공제(IBA/CA) 중 유한책임파트너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제 가능성은 유한책임파트너십의 파트너에게 적용되는 공제제한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유한파트너십의 무한책임파트너는 과세목적상 일반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의 파트너와 동일하게 처리된다. 무한책임파트너에게는 공제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2. 파트너십 과세방식

가. 과세표준

파트너십은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파트너십 자체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각 파트너가 파트너십 소득에서 자신의 지분만큼 별도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⁶⁶⁾. 각 파트너는 자신의 세금신고서에 파트너십 소득에서 자신의 분배받은 이익을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 파트너의 지분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과세목적상 파트너십의 이익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YA 2005부터, 거주자인 개인이 싱가포르에서 수취한 모든 국외원천소득은 과세가 면제된다. 이러한 과세면제는 국외원천소득이 싱가포르 내에 있는 파트너십을 통해서 수취된 것이라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파트너십을 통해 거주자인 개인이 수취한 국외원천소득 중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과세면제될 수도 있다. 요건이란, 수취한 소득이 발생한 지역에서 소득세 성격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고 싱가포르에서 수취한 시점에 원천지의 소득세 최고 세율이 15%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싱가포르 거주자에게 이로운 방식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⁶⁷⁾.

나. 파트너십 단계의 세금 계산

1) 분배가능한 손익의 결정

파트너십의 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과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과세표준을 근거로 산출된 후 파트너의 급여와 보너스, 자본에 대한 이자와 파트너십 계정에서 지출된 기타 비용으로서 개인적으로 차감할 항목들을 차후적으로 조정하게 된다.

파트너십은 법인격을 갖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고정자산을 소유할 수 없다. 자산은 파트너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다. 따라서 자본공제는 파트너들의 이익분배비용

66) 소득세법 §36(1)

67) 소득세법 §13(9)

에 따라 파트너에게 분배된다.

[그림 2-III-1] 파트너십의 소득계산과정

파트너십 계정의 순손익 - 사업소득 외의 소득 + 공제되지 않는 비용 <hr style="width: 50%; margin: 0 auto;"/> = 분배가능한 손익 ¹⁾ + 파트너의 급여 및 보너스 자본에 대한 이자 <hr style="width: 50%; margin: 0 auto;"/> 개인적인 비용 ²⁾ = 조정된 손익

주: 1) 파트너십의 분배비율에 따라 각 파트너에게 분배되는 금액임.

2) 보험료 등과 같은 개인적인 지출을 파트너십의 합의에 의해 파트너십이 부담할 수 있음. 이러한 파트너십이 부담한 비용은 파트너에게는 소득(additional income from partnership)으로 간주됨.

2) 손익의 분배

파트너십의 분배가능한 이익(손실)은 파트너들에게 분배된다. 파트너의 급여, 보너스, 자본에 대한 이자도 파트너 각각에게 분배된다.

자본공제와 승인된 단체에 지출한 기부도 각 파트너에게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파트너십에게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은 이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그림 2-III-2] 파트너의 소득계산과정

	파트너 A	파트너 B
급여와 보너스	XXX	XXX
+ 자본에 대한 이자	XXX	XXX
+ 개인적인 비용	XXX	XXX
+ 분배가능한 손익	XXX	XXX
= 조정된 손익	XXX	XXX
+ 사업소득 외의 소득	XXX	XXX
- 자본공제	XXX	XXX
- 기부금 등 §37(3)(b)~(f)에 의한 공제	XXX	XXX

파트너의 구체적인 소득산출과정은 다음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다.

〈사례〉

Low와 Lee는 2009년 12월 31일에 재무보고상 순손실 SGD 25,000을 보고한 파트너십의 파트너들이다. 소득세 목적상 파트너십 단계에서 공제되지 않는 항목은 감가상각 SGD 1,700과 기부금 SGD 1,300이다. 파트너십 합의에 의해 연간 급여로 Low와 Lee가 각각 SGD 3,600을 받고 자본에 대한 이자로 Low는 SGD 2,000, Lee는 SGD 400을 받는다. 자본공제는 SGD 2,400이고 승인된 기관에 대한 현금기부는 SGD 1,000이었다. 두 파트너의 이익분배비율은 동일하다.

파트너십의 YA 2010의 세금 계산

순손실	(25,000)
가산: 감가상각과 기부금	<u>3,000</u>
분배가능한 손실	(22,000)
가산: 파트너의 급여와 이자	<u>9,600</u>
조정손실	<u>(12,400)</u>

파트너십 손실의 파트너 지분

	Low	Lee	계
급여	3,600	3,600	7,200
이자	2,000	400	2,400
분배가능손실	<u>(11,000)</u>	<u>(11,000)</u>	<u>(22,000)</u>
조정손실	(5,400)	(7,000)	(12,400)
자본공제 ¹⁾	1,200	1,200	2,400
기부금 ²⁾	1,500	1,500	3,000

* Low와 Lee는 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한다.

1) 자본공제와 조정손실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소득과 상계할 수 있다.

2) 2009년에 승인된 기관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YA 2010에 공제하는 금액은 적절한 기부금액의 2.5배이다. 과세소득이 없는 파트너의 경우, 기부금은 5개 과세연도까지 이월할 수 있다.

자료: CCH, *Singapore Master Tax Guide Handbook* 2010/11, 2010. 2.

3) 파트너십 변경

과세기간 동안 파트너십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있어서 구파트

너십과 신탁파트너십 모두 별도의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파트너십의 세금신고서는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변경 발생일까지를 회계기간으로 하여 소득을 산출하고 신탁파트너십의 세금신고서는 변경 발생일부터 회계연도 말일까지를 회계기간으로 하여 소득을 산출한다. 그러나 신탁파트너십은 구파트너십과는 다른 회계연도를 채택할 수도 있다.

4) 개인 파트너의 세금신고

매출이 500,000싱가포르달러 미만인 자영업자 및 파트너십의 파트너들은 세금신고서 제출 시 승인된 회계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다. 다만, 세금신고서에서 매출, 총이익(총손실), 공제항목, 조정이익(손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승인된 회계자료를 제출할 의무는 없지만, 국세청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에 대한 적절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할 의무는 있다.

3. 파트너십 신고의무

파트너십은 회계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러나 파트너십의 소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회계기록을 적절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소득세 최고책임자는 기록양식과 보관 방식을 규정할 권한이 있고 감사받은 회계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

파트너십 세금신고서(Form P)는 대표파트너가 작성하고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YA 2009부터, 만일 파트너십 세금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파트너십 세금신고서 신고의무가 있는 대표파트너가 회계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파트너십 소득을 추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YA 2008까지는 신고서 제출기한 연장신청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소득을 추정하여 제출할 의무는 없었다.

파트너십 세금신고서의 제출 의무는 대표파트너에게 있다. 대표파트너가 되는 사람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모든 파트너 중에 파트너십 합의에서 가장 먼저 지명된 자,

만일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회사이름에서 다른 파트너들보다 앞에 이름이 들어있는 자, 또는 이름이 가장 앞에 놓인 파트너가 근무파트너(acting partner)가 아닌 경우에는 이름이 앞에 놓인 근무파트너가 대표파트너가 된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파트너가 없는 경우에는, 세금신고서는 법률가, 대리인 등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 납세의무가 있을 수 있는 파트너가 파트너를 그만두거나 그만 두려고 할 경우,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파트너들은 파트너를 그만 두기 1개월 전에 소득세 최고책임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파트너는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싱가포르를 떠나고자 하는 자가 싱가포르에서 납세의무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도 최고책임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업무로 인한 것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출국이라면 고지할 의무가 없다.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특정 소득에 대하여 §45(이자), §45A(수수료 등), §45F(전문가 소득)에서 원천징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원천징수 규정은 파트너십을 통해 비거주자인 파트너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비거주자가 파트너로 있는 파트너십의 경우 과세상의 거주지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비거주자가 파트너로 있는 파트너십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ICPAS(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of Singapore)에 권고하고 있다. 요건이라 함은 파트너십이 최소한 1인의 거주자인 파트너가 있는 경우, 파트너십이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고 매년 원천징수세를 포함한 모든 소득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모든 파트너가 비거주자인 파트너십의 경우, 주사무소(head office)로부터 원천징수 면제된 세금의 납부 의무가 주사무소에 있음을 기재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이다.

IV. 국제조세

1. 국제조세의 체계

가. 국내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세조약은 상대국의 국내세법의 적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중과세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두 국가 간에 체결하는 조약이다. 즉, 국제거래에서 조세권한을 결정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러한 조세조약과 국내세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이 우선한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과세하지 않는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나. 국제조세의 구성

싱가포르는 국제조세에 대한 법률을 별도로 두지 않고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거주자 또는 국외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에 의한다. 또한, 소득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외국세액공제제도는 소득세법 제14장에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다.

국제조세 분야의 조세회피방지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득세법 §34D에서는 이전가격 거래에 대해 소득세가 조정될 수 있음을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가격 가이드라인(Transfer Pricing Guidelines)에서 밝히고 있다. 한편,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와 특정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는 운영되지 않는다.

2. 비거주자·국외법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가. 개요

비거주자는 당해 소득이 비과세 또는 면세대상이 아닌 이상 모든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고, 비거주자가 받은 국외원천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원천소득은 경감세율의 적용대상이거나 면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한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은 종합과세, 원천징수분리과세, 신고납부분리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원천징수분리과세는 총지급금 또는 총소득(Gross Payment or Gross Income)에 대한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액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신고납부분리과세는 원천징수 시에는 납세액이 확정되지 않고 총지급금에서 관련비용을 제외한 순소득(Net Income)이 결정될 때 납세액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나. 간주국내원천소득

싱가포르 소득세법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는 소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⁶⁸⁾.

- 싱가포르에서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사업운영에서 발생한 수익
- 사람과 물건을 싱가포르에서 외국으로 이동시키는 선박과 항공기의 비거주자 운영인의 수익
- 해당 수익이 싱가포르에서 메시지의 전송에서 발생한 경우 케이블 또는 무선사업을 영위하는 비거주자의 수익
- 국내에서 근무한 경우 발생한 소득(국내 수취여부 불문)
- 정부를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여 발생한 소득
- 이자 관련 수입

68) 소득세법 §12

- 로열티, 노하우, 기술서비스료, 사업관리료, 동산의 임대소득

다.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 일반

국내원천소득은 경감세율의 적용대상이거나 면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한 20%의 단일세율(Flat Rate)이 적용된다⁶⁹⁾.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거주자에 적용되는 인적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싱가포르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거주자인 싱가포르 시민의 모든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20%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거주자였다면 납부해야 할 소득세에서 국내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부분만큼 부담하도록 공제를 허용한다⁷⁰⁾.

69) CCH, 앞의 책, p. 23

70) 소득세법 §40(1)

〈사례〉

Albert는 말레이시아 거주자인 싱가포르 시민이다. YA 2009에 싱가포르에 소유하던 아파트에서 SGD 5,000의 순임대소득이 발생되었다. 싱가포르 국내원천소득을 제외한 Albert의 전 세계소득은 SGD 35,000이다. YA 2009에 Albert의 싱가포르 소득세는 다음 단계에 따라 계산된다.

1. Albert가 싱가포르 거주자로 가정하고, 전 세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한다.

순임대소득	SGD 5,000
+ 국외원천소득	35,000
= Assessable Income	40,000
- 인적공제(가정)	(8,500)
= Chargeable Income	31,500
× 세율	
= 소득세	SGD 4,350

2. Albert가 싱가포르 거주자일 경우 부담해야 할 소득세에서 순임대소득이 차지하는 금액을 계산한다.

$$\text{SGD } 4,350 \times \frac{\text{SGD } 5,000}{\text{SGD } 40,000} = \text{SGD } 544$$

3. Albert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세액을 계산한다.

임대소득	SGD 5,000
× 세율(20%)	
= 공제전 소득세	1,000
- 공제액	(456)
= 공제후 소득세	SGD 544

자료: CCH, *Singapore Master Tax Guide Handbook* 2009/10, p. 349

라.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1) 60일 이하 근무한 경우

60일 이하의 단기근로소득은 과세대상에서 면제된다. 다만, 회사의 이사, 연예인,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61일 이상 182일 이하 근무한 경우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15%를 적용한 금액과 거주자와 동일하게 종합과세에 의해 계산한 금액 중 높은 금액으로 과세한다⁷¹⁾. 이 경우 각종 공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례〉

미혼 외국인인 Michael은 2008년에 5개월간 싱가포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그의 싱가포르 근로소득은 SGD 81,000인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15% 단일세율을 적용했을 때 소득세를 계산한다.

$$\begin{array}{r} \text{근로소득 SGD 81,000} \\ \times \text{세율} \\ \hline = \text{소득세 SGD 12,150} \end{array}$$

2. Michael이 싱가포르 거주자라고 가정할 경우 소득세를 계산한다.

$$\begin{array}{r} \text{근로소득} \qquad \qquad \qquad \text{SGD 81,000} \\ - \text{Earned Income Relief(가정)} \qquad \qquad (1,000) \\ \hline = \text{Chargeable Income} \qquad \qquad \qquad 80,000 \\ \times \text{세율} \\ \hline = \text{소득세} \qquad \qquad \qquad \text{SGD 4,300} \end{array}$$

3. 2의 소득세가 더 낮기 때문에 Michael의 소득세는 SGD 12,150으로 결정된다.

자료: CCH, *Singapore Master Tax Guide Handbook 2009/10*, p. 352

71) 소득세법 §40B

마.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

1) 국내영위사업

국내에서 사업하는 비거주자 또는 국외법인은 국내원천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국내사업 유무에 대한 판단은 형식보다는 활동(Activity)에 의존한다.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
- 다른 방식으로 개입된 자본유무(자기주식 보유, 특허권 등 재산보유)
-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수행하는지 유무(계약에 의한 업무수행)
- 계약이 체결된 지역
- 서비스가 수행된 지역
- 재산권이 이전된 지역

2) 고정사업장

일반적으로 특정 국가의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그 소득이 해당 국가의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에 귀속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거주지국에서만 과세된다.

싱가포르 소득세법상 고정사업장이란 관리장소, 지점, 사무실, 공장, 창고, 작업장, 농장, 광산, 건물·사업부지 또는 건설·설치·조립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사업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행되는 고정된 장소로 정의된다⁷²⁾.

소득세법상 고정사업장의 개념은 싱가포르가 체결한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과 유사하다. 그러나 일부 조세조약에서는 준비 또는 부수적인 성격의 활동 유형은 고정사업장에 속하지 않음을 언급하는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보유 상품을 저장, 전

72) 소득세법 §2

시, 인도를 위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와 다른 기업에 의해 가공된 재고상품을 관리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이러한 조세조약상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의 정의가 국내세법에 우선한다.

3) 국외법인

일반적으로 국외법인은 국내법인과 동일한 혜택을 누린다. 즉, 감면·공제규정을 모두 신청할 자격이 있고 국내법인과 동일한 세율로 과세된다. 그러나 국외법인은 싱가포르의 강력한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업의 지배(Control)와 관리(Management)가 이사에 의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법인으로 간주된다. 일반적으로 지배와 관리의 장소는 법인의 이사가 법인의 업무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바. 원천징수제도

1) 원천징수 대상소득별 과세방식

비거주자로부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징수를 보장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싱가포르는 원천징수제도를 가지고 있다. 원천징수의무는 국내원천소득이나 간주국내원천소득 모두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가) 원천징수 일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규정⁷³⁾이 다른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비거주자에게 특정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세율에 의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세액을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73) 소득세법 §45

지급한 날 이후 다음달 15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한다⁷⁴⁾.

나) 원천징수 대상소득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 또는 간주국내원천소득인 다음 유형의 소득과 지급금에 적용된다.

- 이자소득
- 로열티, 동산 사용 및 사용권에 대한 일시금
- 노하우이용료
- 기술보조 및 서비스료
- 사업관리 및 관리보조료
- 동산 사용을 위한 임대료
- 이사의 보수(Remuneration)
- 단위신탁에 의한 특정분배금
- 부동산거래에서 발생한 수익
- non-citizen SRS 회원에 의한 반환금
- 전문직 소득
-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분배금
- 연예인의 수익

다) 원천징수세율 및 과세방식

소득의 유형에 따라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 15, 20% 또는 조세조약상 저세율로 한다. 또한 국외법인에 대해서는 10, 15, 17% 또는 조세조약에 명시된 세율에 의한다.

첫째, 10%의 분리과세세율은 로열티, 동산 사용 및 사용권에 대한 일시금 및 노하우

74) 소득세법 §45(2)

이용료에 적용된다.

둘째, 15%의 분리과세세율은 이자소득 및 동산 사용을 위한 임대료에 적용된다.

이와 같이 10% 또는 15%의 분리과세세율이 적용되려면 비거주자 또는 국외법인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비거주자 또는 국외법인의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Effectively) 연관되어 발생하는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부동산중개인인 비거주자가 보유하는 국내 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소득은 15%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⁷⁵⁾.

넷째, 기술적 보조 및 서비스료, 사업관리 및 관리보조료, 이사의 보수 등에 대해서는 20% 원천징수세율(국외법인 17%)을 적용한다.

이때 총지급금(Gross Payment)에 대해 15%, 20%로 원천징수된 세액은 최종세액이 아니다⁷⁶⁾.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의 창출에서 전적이면서 배타적으로 발생된 비용과 과납세액의 환급에 대한 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금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순소득(Net Income)과 최종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세액 초과분은 환급된다.

75) 소득세법 §45D(1)

76) CCH, 앞의 책, p. 360

〈표 2-Ⅳ-1〉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및 과세방식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종류	과세방식
이자소득	15% 원천징수분리과세
로열티, 동산 사용 및 사용권에 대한 일시급	10% 원천징수분리과세
노하우이용료	10% 원천징수분리과세
기술보조 및 서비스료	신고납부분리과세(예납적 원천징수세율 17, 20%)
사업관리 및 관리보조료	신고납부분리과세(예납적 원천징수세율 17, 20%)
동산 사용을 위한 임대료	15% 원천징수분리과세
이사의 보수(Remuneration)	신고납부분리과세(예납적 원천징수세율 20%)
단위신탁에 의한 특정분배금	신고납부분리과세(예납적 원천징수세율 17, 20%)
부동산거래에서 발생한 수익	신고납부분리과세(예납적 원천징수세율 15%)
non-citizen SRS 회원에 의한 반환금	신고납부분리과세(예납적 원천징수세율 20%)
전문직 소득	15% 분리과세와 비거주자 20% 원천징수 중 선택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부동산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분배금	신고납부분리과세(예납적 원천징수세율 17, 20%) ¹⁾
연예인의 수익	10% 원천징수분리과세 ²⁾

주: 1) 2005년 2월 18일부터 2010년 2월 17일까지 국외법인에 대한 분배금에 대해서는 10%를 적용한다.

2) 원래 15% 원천징수분리과세가 적용되나, 2010년 2월 22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지급분까지는 10% 원천징수분리과세가 적용된다.

2) 지급간주소득

어떠한 유보금을 채투자, 축적, 자본화를 수반하는 경우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로열티를 받아야 할 비거주자가 로열티 지급인에게 주식투자를 지시한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실제 지급금을 수령했는지에 상관없이 로열티는 지급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때, 지급간주시점은 다음 날 중 빠른 날로 한다.

- 계약상 지급일
- 비거주자를 위한 목적으로 지급금이 수령인(비거주자)의 계좌에서 차감된 때

- 실제 지급일

3) 원천징수세의 감경

특정소득이나 지급금은 소득세법, Economic Expansion Incentives(Relief from Income Tax) Act 또는 조세조약에 따라 면세되거나 경감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4) 원천징수 유예

중대한 해외그룹(Substantial Overseas Group)의 일원인 국외회사의 국내지점은 이자소득 및 로열티, 노하우, 기술서비스료, 사업관리료, 동산의 임대소득과 관련된 간주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한번 유예되면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취소하지 않는 한 무한정적으로 적용된다. 여기서 ‘중대한 그룹’이란 연결기준(Consolidated Basis)으로 최소한 연 5천만 미달러의 매출액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국외회사가 무한정 유예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별로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잠재적인 납세액을 보호하기 위해 국외회사에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중대한 해외그룹의 일원이 아닌 국외회사의 국내지점도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한번 부여되면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취소하지 않는 한 무한정적으로 유효하다.

3. 이중과세방지 규정

가. 국제적 이중과세의 발생원인⁷⁷⁾

국제거래가 활발해지고 다국적기업이 증가하면서 이중과세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

77) CCH, *Singapore Master Tax Guide handbook 2009-10*, pp. 387~388

다. 거주지 국가를 초월하여 사업과 투자 활동을 행하는 회사와 개인은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해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해외사업장의 설립 및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세금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국제적인 이중과세문제는 두 개 이상의 국가가 동일한 납세자에게 동일한 과세소득이나 자본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때 발생한다.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요인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각 국가의 과세표준의 차이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경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자본에 대하여 과세하려고 한다. 그러나 전 세계소득에 대한 과세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이러한 전 세계소득에 대한 과세원칙은 국외 소득이 국내로 반입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거주지 국가가 국외소득까지 과세권을 확대하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내로 반입된 국외소득에 한해 과세를 하고 있다. 둘째, 특정 국가의 세법상 간주규정이다. 예를 들면, 국경 내에 원천을 두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권을 갖고 있는 국가일지라도 그들 중 상당 부분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소득에 대하여 세법상 국경 내의 원천소득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셋째, 납세자의 '거주자'에 대한 정의의 차이이다. 국가마다 서로 다른 '거주자'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납세자의 거주지가 하나 이상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국내 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이중과세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나. 싱가포르의 이중과세 조정방법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은 내국세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것은 세액공제(tax credit relief), 과세면제(tax exemption), 저율과세(reduced tax rate), 소득공제(relief by deduction)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싱가포르는 원천지국 과세방식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과세하면서, 송금주의를 가미해 국외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수취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싱가포르에서 수취된 경우에 한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그

러나 세법에서는 싱가포르에서 수취된 소득이라도 특정 국외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과세면제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13(7A), §13(8), §13(12)에서 규정하고 있고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과세면제한다.

그러나 2009년 예산안에서는 경기침체에 싱가포르 기업들이 국외소득을 그들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국내에서 수취하는 모든 소득에 일시적으로 과세면제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는 2009년 1월 22일 이전에 가득되었거나 발생(earned or accrued)하였고 2009년 1월 22일부터 2010년 1월 21일 사이에 싱가포르로 송금되는 모든 소득이 과세면제됨을 의미한다.

싱가포르에서의 이중과세방지는 내국세법에 의한 것과 다른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의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세법에 의한 것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과세면제방식과 영연방국가(Commonwealth countries)에서 부담한 세액에 대하여 YA2009까지 적용하는 영연방국가 간 이중과세 감면(Commonwealth tax relief), 특정 외국세액에 대한 일방적인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조세조약에 의한 것은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과세면제, 저율과세 방식에 의한 감면도 일부 소득 또는 일부 조세조약에서는 허용하고 있다.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로부터 국외소득을 수취하는 납세자의 경우, 적용 가능한 감면은 해당 국가와의 조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1) 과세면제

가) 거주자에 대한 과세면제⁷⁸⁾

싱가포르 거주자는 2004년 1월 1일 이후 싱가포르에서 수취한 모든 국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과세면제하는 것이 개인에게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과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비거주자는 싱가포르에서 수취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항상 과세면제된다.

78) 소득세법 §13(7A)

이러한 과세면제 규정은 만일 거주자가 싱가포르에 있는 파트너십을 통해 국외소득을 수취한 경우라면 적용할 수 없다. 파트너십을 통해 수취한 국외소득은 소득세법 §13(8)에 의한 과세면제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가 면제될 수 있다.

나) 배당, 지점 이익 및 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면제⁷⁹⁾

싱가포르에서 수취한 배당, 지점 이익, 용역소득은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면제한다.

싱가포르에서 2003년 6월 1일 이후에 국외 배당소득, 국외 지점이익, 국외원천 용역소득을 수취하는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이 과세면제를 적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다음과 같다.

- ① 당해연도에 특정 국외소득을 싱가포르에서 수취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외국에서의 최고 세율이 15% 이상이어야 한다.
- ② 해당 국외소득이 다른 나라에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어야 한다.
- ③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납세자에게 과세면제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싱가포르에서 과세대상인 거주자가 아니라면 국외원천소득으로 본다.

국외 지점에 대한 과세면제는 싱가포르 회사가 외국에 있는 국외 지점을 등록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과세면제는 등록된 외국지점의 사업(trade or business)으로부터 이익이 발생했을 때에만 적용한다. 지점에서 사업과 관련 없이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되지 않는다.

용역소득이 과세면제되려면, 외국의 고정사업장에서 사업(trade, business or profession)을 수행하는 자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

2009년 예산안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면제는 2009년 1월 22일 이전에 국외에서 가득했거나 발생한 모든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해당 소득이 유예기간(2009년 1월

79) 소득세법 §13(8A)

22일~2010년 1월 21일) 중에 싱가포르에서 수취한 소득인 경우 과세면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시적인 조치는 이자소득, 사용료소득, 임대소득과 같이 소득세법 §13(8)에서 과세면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국외원천소득에도 적용한다.

다) 일반적인 과세면제⁸⁰⁾

소득세법 §13(8)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면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국외소득을 본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싱가포르 거주자는 국외소득의 전체 또는 부분적 과세면제를 재무부 장관(Minister for Finance)에게 신청할 수 있다. 본국으로의 송금이 싱가포르의 경제 및 기술 개발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경우 재무부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수취한 국외소득에 전체 또는 부분적 과세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

2) 영연방국가간 이중과세 감면

싱가포르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영연방국가(Commonwealth countries)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된 외국세액에 관하여 YA2009까지 이중과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를 영연방국가간 이중과세 감면(Commonwealth tax relief)이라 한다. 영연방국가간 이중과세 감면은 싱가포르와 조세조약을 맺지 않은 연연방국가까지 적용범위에 포함한다. 싱가포르와 조세조약이 있는 영연방국가로부터의 국외소득인 경우, 이중과세로 인한 감면은 조세조약에 의해 청구할 수 있다.

납세자가 해당 과세연도기간중 싱가포르와 영연방국가 모두에서 거주자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더 많은 기간을 체류한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영연방국가간 이중과세 감면이 적용되는 국가는 바하마, 보츠와나, 감비아, 가나, 가이아나, 케냐, 레소토, 말라위, 나우루, 나이지리아(1995~1999 기간 제외), 사모아, 시에라리온, 스와질란드, 탄자니아, 통가, 우간다, 잠비아이다.

80) 소득세법 §13(12)

영연방국가간 이중과세 감면은 상대방 국가가 상호적으로 납세자에게 유사한 감면을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영연방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만큼 영연방 국가로부터 수취한 소득에 대하여 싱가포르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감면해준다.

〈사례〉

- ① 2008년에 X회사는 싱가포르 거주자이고 싱가포르에서 영연방국가로부터 이자소득을 수취하였으며, 해당소득은 5%로 원천징수되었다. X회사의 싱가포르에서의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다.

사업소득	400,000
영연방국가로부터의 이자소득(세전금액)	<u>300,000</u>
	700,000
차감: 감면금액 ¹⁾	<u>(152,500)</u>
과세표준(chargeable income)	<u>547,500</u>
세액(세율 18%)	98,550
차감: Commonwealth tax relief ²⁾	<u>(11,732)</u>
납부할세액	86,818

주: 1) 중소기업을 위한 partial tax exemption 금액으로 최초 SGD 10,000의 3/4에 상당하는 금액(7,500)과 SGD 290,000의 1/2에 상당하는 금액(145,000)의 합인 SGD 152,000이 감면 상한금액임.

$$2) 11,732 = \frac{5\% \times 300,000}{700,000} \times 547,500$$

자료: CCH, *Singapore Master Tax Guide Handbook* 2010/11, 2010.

3) 세액공제방식

조세조약 또는 소득세법 §50A에 따라 싱가포르에서의 납부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 ① 당해 신고 및 부과연도에 싱가포르 거주자만이 조세조약 또는 소득세법 §50A에 따른 외국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세액공제 신청자는 국외소득에 대하여 반드시 외국세액을 부담했어야 하고 그 국

외소득은 외국세액에 대한 소득공제 전 과세대상 총소득에 포함되었어야 한다.

- ③ 외국세액공제가 허용되는 금액은 국외소득에 대한 싱가포르 세액 또는 외국세액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싱가포르의 유효세율(SETR: Singapore Effective Tax Rate)이 외국의 세율과 같거나 더 낮은 경우, 세액공제금액은 싱가포르의 유효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반대로 싱가포르의 유효세율이 외국의 세율보다 높으면, 세액공제금액은 외국의 세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비법인 납세자의 유효세율 산출은 다음과 같다.

$$\text{유효세율} = \text{세액공제 등 차감 전 싱가포르 납부세액} / \text{과세소득}$$

법인 납세자의 유효세율 산출은 다음과 같다.

$$\text{유효세율} = \text{세액공제 등 차감 전 싱가포르 납부세액} / \text{과세표준}$$

국외소득에 대한 외국세액공제의 산출은 원천별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특정 국가로부터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과 싱가포르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여기에서 특정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이 외국세액공제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국외소득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는 상계할 수 없다. 국외소득이 싱가포르에서 과세된 이후 2년이 경과한 후의 외국세액공제는 신청할 수 없다.

4. 이전가격세제

가. 이전가격세제의 도입 배경

역사적으로 볼 때, 싱가포르는 거래 상대 국가에 비해 조세제도의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이전가격세제는 국세청의 주요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에 이전가격에 관한 논쟁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싱가포르 역시 낮은 세율과 광범위한 조세지원 및 조세감면(tax incentives/holidays)으로 인해 이러한 논쟁에서

제외될 수 없었다. 외국의 과세당국은 지속적으로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회사와 이전 과세제제가 잘 정비된 국가에 위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감시해 왔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국세청은 2006년 2월 23일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싱가포르의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은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상당부분 따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OECD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싱가포르는 OECD 회원국이 아니므로 OECD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도 있었고, 또 다른 이유로는 싱가포르의 특수한 상황에 더 잘 맞는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지역 특성에 보다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싱가포르 내부에서는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이 ‘적용지침(Circular)’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거래가격원칙의 채택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미흡하다는 논란이 있다.

나. 이전가격세제 가이드라인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의 과세당국은 국경을 넘는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감시하는 노력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많은 과세당국들이 일반적인 또는 특수한 이전가격규정을 도입하였고 그것은 납세자들로부터 그들이 정상거래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이전가격문서를 개발하고 유지할 것을 요구한다.

싱가포르 국세청은 전 세계 과세당국의 관심이 이전가격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2006년 2월 23일에 납세자들에게 정상거래가격원칙의 적용을 알리는 ‘Transfer Pricing Guidelines’ 적용지침(circular)을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에도, 국세청은 실무상 특수관계자 간 거래를 통제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상거래가격원칙을 적용해 왔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가이드라인의 발표 이전과 큰 차이는 없지만, 적용지침을 통해 OECD 모델조약(OECD Model Treaty on Income and on Capital)의 Art. 9(1)에서 기술하고 있는 정상거래가격원칙을 따를 것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1) 적용범위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지는 재화, 용역 및 무형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해 적용한다. 또한 법적실체와 고정사업장과 같은 과세대상 실체 모두에 대해서 적용한다. 거래당사자 양자가 모두 싱가포르에 있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인 경우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2) 특수관계자의 개념

하나의 실체와의 관계에서 ‘특수관계’란 직·간접적으로 다른 실체를 통제하는 또는 통제당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의 개념은 통제의 개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제에 관한 추가적인 정의는 하고 있지 않다. 국세청은 소유권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당사자들이 합의하에 거래에 참여한 증거가 있는 경우도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정상거래가격원칙의 적용

가) 정상거래가격원칙

싱가포르의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국세청은 OECD 모델조약의 Art. (1)에서 기술하고 있는 정상거래가격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납세자는 정상거래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이전가격에 대한 검토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검토가 수행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세청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정상거래가격원칙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3단계에 걸친 업무처리를 권장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거래 내용을 비교분석하고 다음으로 적절한 이전가격 방법과 거래당사자를 파악한 후 마지막으로 정상거래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나) 이전가격 결정방법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서는 OECD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통적 거래접근법(traditional transaction methods)과 거래적 이익접근법(transactional profit methods)을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 거래접근법에 해당하는 것은 비교가능제3자가격법(comparable uncontrolled price), 재판매가격법(resale price method), 원가가산방법(cost-plus method)이 있다. 거래적 이익접근법에 해당하는 것은 이익분할방법(profit split method)과 거래순이익률방법(transactional net margin method)이 있다. 국세청이 이 중에서 더 선호하는 방법은 없고 각 방법 간에 우선순위도 정하지 않고 있다. 납세자들은 열거되어 있는 5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정상거래가격을 결정하면 된다. 제시된 방법의 변형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자신의 이전가격이 제3자 거래원칙에 의한 것임을 보이기 위한 충분한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OECD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의 가이드라인에서도 납세자가 최소한의 조정과 데이터의 가용성 및 우수성을 기반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상거래가격의 측정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다) 정상거래가격의 범위

국세청은 이전가격이 약간의 주관성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정상거래가격으로 오로지 하나의 가격이나 이익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개발한 정상거래가격을 허용하고 있다.

4) 문서의 작성과 보관

가) 문서화의 목적

문서화를 하는 목적은 납세자가 정상거래가격원칙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문서화에 관한 항목들을 4가지의 범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4가지 범주라고 하는 것은 첫째, 그룹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둘째, 싱가포르에서 각 특수관계자에 관한 정보, 셋째, 싱가포르 기업과 모든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한 세부사항, 넷째, 이전가격 분석이다.

싱가포르는 불충분한 문서 및 문서 미비에 대하여 벌금(penalty)을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적절한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첫째, 적절한 문서를 제시함으로써 정상거래원칙을 따랐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둘째, 국세청이 납세자의 상호합의를 고려할 때, 납세자가 작성한 문서를 평가하게 된다. 이때 부적절한 문서의 경우 상호합의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이전가격 관련 문서는 납세자의 세금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제공하는 것이다.

나) 문서화의 범위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기 위해서는 행정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납세자들에게 정상거래가격원칙을 따랐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만을 작성하고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납세자는 해당 특수관계자 거래의 실질과 복잡성 그리고 문서화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기초로 자신에게 필요한 문서가 무엇인지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복잡하고 중요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의 경우에 문서의 부족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즉, 국세청은 정상거래가격으로 거래했다는 합리적인 믿음을 제공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는 납세자의 판단에 맡겨둔 상태이므로 납세자가 자신의 거래의 실질과 복잡성, 비용 문제를 모두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내용을 판단하여 문서화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문서 보관기간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서는 문서의 부족이나 불충분에 대한 벌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세자가 소득세법에서 요구하는 장부기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문서의 보관 기간을 소득세법에 의한 법정 장부 보관의무기간과 일치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2006년 현재 소득세법에 의한 법정 장부 보관의무기간은 7년이었으나 2006년 예산안을 통해 장부보관의무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었다. 그러나 납세자들이 실질적인 문서 보관기간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과세당국이 추가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한 즉, 부과제척기간 그리고 납세자가 상호합의(MAP)에 연루될 가능성 여부 등의 기타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실무상 장부보관기간은 5년 이상이 될 것이다.

5) 상호합의와 이전가격 사전합의제도

가) 상호합의

싱가포르가 다른 나라와 소득세 조약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이중과세로부터 감면을 받기 위하여 해당 조약의 상호합의(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 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 이 절차는 OECD 모델조약의 Art. 25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이전가격 조정으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된다.

상호합의는 일반적으로 납세자에 의해 개시되지만 협상은 각 정부 간에 이루어지고 납세자는 각 과세관청 간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다. 상호합의는 합의를 도출하고 논쟁을 해결하도록 과세관청에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과세관청은 오로지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만 있고 납세자 역시 과세관청이 결정한 결과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납세자는 신청을 취소하거나 절차를 중단하거나 또는 결과를 거절할 수 있다. 납세자가 상호합의를 통해 만족할 만한 결론을 얻지 못한 경우, 납세자는 이중과세로부터 감면받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나) 이전가격사전합의

이전가격사전합의(APA: Advance Pricing Agreement)는 일정 기간에 발생한 특

수관계자 간 거래의 과세처리에 관하여 납세자들에게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전가격사전합의는 납세자의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거나 특정 거래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신청을 받아들이고 이전가격사전합의를 하기 위한 싱가포르 과세관청의 권한은 소득세법과 조세조약의 상호합의 규정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다.

이전가격사전합의제도는 사전적으로 이전가격을 합의할 의도로 계획되었지만, 실제로는 전년도의 계류중인 이전가격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종종 사용된다. 따라서 이전가격사전합의는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의 이전가격 논쟁을 해결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다) 상호합의와 이전가격사전합의의 적용절차

상호합의는 국제적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관하여 이전가격 조정대상이 되는 납세자들인 경우에 가능하다. 거주자인 납세자는 상호합의의 개시를 국세청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전가격사전합의도 국제적인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참여한 납세자들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납세자들은 일방적인 또는 상호적인 이전가격사전합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전가격사전합의가 신청되면 국세청은 이전가격사전합의의 목적이 이중과세 회피에 있는지, 구체적인 당기 및 미래의 거래와 관련되어 있는지, 일방적인 또는 상호적인 사전합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인 외국 과세당국이 그 신청에 참여하는지를 고려한다.

그러나 상호합의 및 이전가격사전합의가 국세청에서 받아들여질지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국세청의 재량권에 달려 있다. 또한 상호합의 및 이전가격사전합의 협상 모두 납세자는 전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거래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적절한 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상호합의와 이전가격사전합의에 있어서 공식적인 절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청절차도 전적으로 국세청의 재량권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에서는 상호합의와 이전가격사전합의를 신청하기 위해 납세자가 따라야 하는 절차를 제시하였다. 국세청은 이전가격 문제에 있어서 적시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호합의와 사전합의에

있어서 시기적절한 해결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상호합의와 이전가격사전합의는 싱가포르와 포괄적인 소득세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에 위치한 특수관계자인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만일 비거주자인 특수관계회사가 조세조약 비체결국가에 위치해 있다면, 거주자인 납세자는 일방적인 이전가격사전합의만 신청할 수 있다. 즉, 거주자인 납세자와 국세청 간의 합의만을 의미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상호합의 및 이전가격사전합의 과정에서 국세청이 획득한 정보의 사용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만일 납세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 그 정보가 과거 및 미래 과세연도의 감사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공개되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5. 조세조약 및 현황

가. 조세조약의 역할

조세조약이란 두 개의 국가가 내국세법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국가 간에 체결하는 계약이다. 조세조약의 우선적인 목적은 국경 간에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 관할지역을 정의하는 데 있다. 이는 조약을 체결한 국가에게 확실성을 제공하고 납세자에 대한 각 국가에서의 과세권을 명확히 정의한다. 또한 조약 체결국의 과세관청 간에 정보교환을 승인함으로써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

조세조약과 내국세법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이 우선권을 갖는다. 그러나 조세조약에 의해 내국세법에 의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으며, 오로지 내국세법만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나. 조세조약의 내용

조세조약은 각 국가별로 체결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조약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조약 체결국가의 세금 유형을 기술하여야 한다. 그리고 조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거주자’ 또는 ‘고정사업장’ 과 같은 용어는 용어 정의 조항에서 별도로 정의하여야 한다.

개인과 법인에 있어서 ‘거주자’ 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기술하는 조항이 필요하다. 이는 이중 거주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판단기준을 제공해준다. 또한 조약 체결 국가에서 고정사업장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조항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A국가의 거주자인 기업은 B국가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상황에서 B국가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B국가에서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정사업장의 정의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 부동산이 위치한 국가가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갖는다. 사업소득의 경우, 하나의 국가에서 납세의무자인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수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과세원칙을 조약체결 국가들은 받아들이고 있다. 선박 및 항공기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운영자의 거주지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조약은 원천국가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 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이 외에 배당소득, 로열티소득, 개인용역소득의 과세에 관한 규정 및 이중과세 조정에 대한 규정이 포함된다. 또한 무차별조항과 정보교환에 관한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다. 조세조약 체결 현황

싱가포르는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있어서 상당부분 OECD 모델조약을 채택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조세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는 현재 69개 국가에 이른다.

조약의 체결 범위에 따라 포괄적 조세조약과 제한적 조세조약으로 구분된다. 포괄적 조세조약이란 일반적으로 모든 소득을 조약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고 제한적 조세조약이란 선박 및 항공운항으로부터의 소득을 조세조약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다. 조세조약 체결국가 중 칠레, 홍콩,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은 제한적 조세조약 체결국가이다.

〈표 2-Ⅳ-2〉 조세협약 체결 현황

체결국	체결일	효력발생일	체결국	체결일	효력발생일
호주	1969. 2. 11.	1969. 7. 1.	말타	2006. 3. 21.	2009. 1. 1.
오스트리아	2001. 11. 30.	2003. 1. 1.	모리셔스	1995. 8. 19.	1997. 1. 1.
바레인	2004. 2. 18.	2005. 1. 1.	멕시코	1994. 11. 9.	1996. 1. 1.
방글라데시	1980. 12. 19.	1979. 1. 1.	몽골	2002. 10. 10.	2005. 1. 1.
벨기에	2006. 11. 6.	2009. 1. 1.	모로코	2007. 1. 9.	not in force
브루나이	2005. 8. 19.	2007. 1. 1.	미얀마	1999. 2. 23.	2001. 1. 1.
불가리아	1996. 12. 13.	1998. 1. 1.	네덜란드	1971. 2. 19.	1968. 1. 1.
캐나다	1976. 3. 6.	1977. 1. 1.	뉴질랜드	2009. 8. 21.	2010. 10. 1.
칠레	1991. 1. 24.	1993. 8. 11.	노르웨이	2009. 6. 10.	2009. 6. 10.
중국	2007. 7. 11.	2008. 1. 1.	오맨	1998. 6. 29.	미승인
사이프러스	2000. 11. 24.	2002. 1. 1.	파키스탄	1993. 4. 13.	1987. 1. 1.
체코	1997. 11. 21.	1999. 1. 1.	파푸아뉴기니	1991. 10. 19.	1993. 1. 1.
덴마크	1986. 2. 3.	1985. 1. 1.	필리핀	1977. 8. 1.	1977. 1. 1.
이집트	1996. 5. 22.	2005. 1. 1.	폴란드	1993. 4. 23.	1993. 1. 1.
에스토니아	2006. 9. 18.	2008. 1. 1.	포르투갈	1999. 9. 6.	2002. 1. 1.
피지	2005. 12. 20.	2007. 1. 1.	카타르	2006. 11. 28.	2008. 1. 1.
핀란드	2002. 6. 7.	2003. 1. 1.	루마니아	2002. 2. 21.	2003. 1. 1.
프랑스	1974. 9. 9.	1971. 1. 1.	러시아	2002. 9. 9.	2010. 1. 1.
그루지야	2009. 11. 17.	2011. 1. 1.	사우디아라비아	1991. 8. 6.	1979. 1. 1.
독일	2004. 6. 28.	2007. 1. 1.	스웨덴	1968. 6. 17.	1966. 1. 1.
홍콩	2003. 11. 28.	2005. 1. 1.	우즈베키스탄	2008. 7. 24.	2009. 1. 1.
헝가리	1997. 4. 17.	1999. 1. 1.	우크라이나	2007. 1. 26.	2010. 1. 1.
인도	1994. 1. 24.	1994. 1. 1.	터키	1999. 7. 9.	2002. 1. 1.
인도네시아	1990. 5. 8.	1992. 1. 1.	슬로바키아	2005. 5. 9.	2007. 1. 1.
이스라엘	1971. 9. 27.	1971. 4. 1.	태국	1975. 9. 15.	1976. 1. 1.
이탈리아	1977. 1. 29.	1975. 1. 1.	남아프리카공화국	1996. 12. 23.	1998. 1. 1.
일본	1971. 1. 29.	1971. 1. 1.	영국	1966. 12. 1.	1966. 1. 1.
카자흐스탄	2006. 9. 19.	2008. 1. 1.	스리랑카	1979. 5. 29.	1977. 1. 1.
한국	1979. 11. 6.	1979. 1. 1.	아랍에미리트	1995. 12. 1.	1992. 1. 1.
쿠웨이트	2002. 2. 21.	2004. 1. 1.	미국	1988. 7. 28.	1987. 1. 1.
라트비아	1999. 10. 6.	2001. 1. 1.	대만	1981. 12. 30.	1982. 1. 1.
리비아	2009. 4. 8.	미승인	슬로베니아	2010. 1. 8.	미승인
리투아니아	2003. 11. 18.	2005. 1. 1.	스위스	1975. 11. 25.	1974. 1. 1.
룩셈부르크	1993. 3. 6.	1996. 1. 1.	베트남	1994. 3. 2.	1993. 1. 1.
말레이시아	1968. 12. 26.	1968. 1. 1.			

자료: IBFD

V. 기타 단체

수탁자, 집행인, 클럽, 협회도 개인이나 법인과 별개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포함된다. 이러한 Body of Persons도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거주성(Residence) 여부에 따라 세무상 결과가 달라진다.

1. 클럽과 협회

가. 개관

상호원칙(Mutuality Principle)은 세무상 ‘인(Person)’은 그 자신 스스로 또는 그 자신과의 거래에 의해 수익을 창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즉, 기본적으로 ‘인’의 소득은 외부 원천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원칙은 법인화된 단체나 법인화되지 않은 단체의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

상호성 기준은 공통된 펀드에 투자한 모든 출자자들이 그 잉여금에 대한 수취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출자자들과 수취자들 간에 완벽한 일치가 있다면 협회가 취한 특정한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⁸¹⁾. 협회의 모든 수익금은 수취자들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협회는 출자금 이외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금지된다⁸²⁾.

상호원칙에 따라 회원들의 출자금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는 잉여금은 비과세된다. 그러나 이들 협회가 비회원과 거래하여 발생한 잉여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협회가 회원, 비회원 모두와 거래한 경우에는 발생한 잉여금을 회원과 비회원에 귀속되는 부분을 각각 구별하여야 한다.

81) Municipal Mutual Insurance Ltd v. Hills (1930) 16 TC 430

82) Jones v. South-West Lancashire Coal Owners' Association (1927) AC 827

나. 클럽 및 유사기관

1) 과세대상

클럽이나 이와 유사한 기관을 운영하는 Body of Persons는 비록 법인(Legal of Person)이 아니더라도 납세자로 간주될 수 있다. 상호원칙(Mutuality Principle)은 소득세법 §11(1)의 특정한 요건에 따라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클럽 또는 유사기관에 적용된다.

소득세법 §11(1)은 법인화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클럽과 기관들에 모두 적용된다. 그러나 이 규정은 회원들이 아닌 다른 자가 보유하는 사설클럽(Proprietary Club)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설클럽은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의 소득에 대해 과세된다.

클럽이나 유사기관은 수입계정에서 총수입의 50% 이상이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회원들이 납부하는 가입비, 회비, 사용료로부터 발생한 잉여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럽이나 유사기관은 비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 때 ‘회원’이란 클럽이나 유사기관의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

한편, Land Titles(Strata) Act에 따라 설정된 Management Corporations는 소득세 최고책임자에 의해 클럽 또는 유사기관으로 간주되어 소득세법 § 11(1)의 적용을 받는다.

2) 세율

YA 2010부터는 Body of Persons의 과세표준(Chargeable Income)에 대한 세율은 법인과 동일하게 보통의 법인세율인 17%이다⁸³⁾.

83)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1668>

다. 무역협회 및 전문가협회

1) 과세대상

무역협회 또는 전문가협회는 주된 목적이 회원들의 사업 또는 전문성을 보호하거나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무역협회와 전문가협회의 예는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와 Singapore Institute of Directors를 들 수 있다.

협회가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총수입이 아니라 협회가 수취하는 가입비와 회비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 §11(2)는 YA 2008부터 국내 회원(Singapore Members)으로부터 가입비와 회비의 명목으로 총수입의 50% 이상이 허용가능한 공제액으로 공제되거나 공제가능한 경우에만 무역협회 및 전문가협회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일단 협회가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국내 회원 및 비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은 사업에서 수취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한다. 국외 회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국내 회원(Singapore Members)’은 거주성을 가진 자(법인 제외), 국외에 소재하는 지점을 제외한 국내 법인 또는 국외 법인의 국내 지점인 회원을 의미한다.

‘회원’이란 총회의 의결권을 가져 효율적인 지배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납세액의 계산

협회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의 유형은 가입비, 회비, 사업소득 및 이자와 임대료와 같은 투자소득이다. 협회의 과세소득은 그러한 소득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제외하는 일반적인 방식에 의해 확정된다.

협회는 회원들로부터 다양한 유형의 기부금과 회비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수입금의 성격이나 목적은 수익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확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축자금을 위한 특별기부는 자본으로 간주되지만, 이 금액 중 일부만 그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 잔액은 수익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협회의 기념행사와 관련된 특별회비는 수익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클럽과 달리 오락 및 친화목적으로 부동산을 사용하는 협회는 사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일부 협회는 방문회원 또는 지방회원에게 보유 부동산을 임시숙소로 제공하는 것이 관례이다. 이러한 사용에 대한 임차료와 기타 수입금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된다.

YA 2010부터는 Body of Persons의 과세표준(Chargeable Income)에 대한 세율은 법인과 동일하게 보통의 법인세율인 17%이다⁸⁴).

라. 기타

싱가포르에는 상호보험협회(Mutual Insurance Associations), 종중(Clan Associations), 학회(Professional Societies), 협동조합(Co-operative Societies)과 같이 국내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유형의 단체와 협회가 있다. 이들은 특별히 비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이들의 상호 관계(Mutual Concerns) 유무는 상호성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에 상호보험회사를 다루는 규정이 없고 그 운영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오직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회원에게만 분배하는 경우에 소득세 최고책임자가 상호성이 있다고 인정하게 되면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Body of Persons가 '상호적' 활동과 '비상호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전자의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후자의 경우 발생된 수익은 과세대상이 된다.

84)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1668>

2. 유산재단, 신탁 및 계승적 재산처분

가. 유산재단

1) 납세의무자

사망 시 망자가 수익적으로 보유하는 부(Wealth)는 유산재단(Estates)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유산재단의 집행인(Executor)은 관리기간 동안 망자의 유산재단의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책임이 있다. 소득세법상 '집행인'이란 망자의 유산재단을 관리하는 모든 집행인, 관리인, 그 밖의 자를 의미한다⁸⁵⁾. 관리기간은 사망일 이후부터 개시하여 망자의 유산관리가 완료되는 때에 종료된다. 관리의 완료는 일반적으로 잔여유산에 대해 분배가 확정된 때를 의미한다.

망자의 생존기간 동안 신탁이 설립된 경우에는 신탁 관리자가 유산의 집행인과 유사하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신탁 관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대해서 연대책임이 있다.

2) 망자의 소득

개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 전에 발생한 소득과 사망 후에 발생한 소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사망 전에 발생한 소득은 망자의 명의로 부과되고 망자의 유산재단이 납세신고와 납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반면, 사망 후에 발생한 소득은 망자의 유산재단에 귀속되어 집행인에게 부과된다. 집행인은 사망일 바로 직전에 존재하는 망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는다⁸⁶⁾. 그러므로 집행인은 사망일까지 발생한 망자의 소득을 보여주는 Form B(개인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망자에 적용될 수 있는 인적 공제는 생존했던 기간에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인정된다. 망자에 대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사망일이 속하는 연도 후 3개 YA 종료 시까지이다.

85) 소득세법 §2

86) 소득세법 §58

3) 유산재단의 소득

일반적으로 관리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은 망자의 유산재단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유산재단의 집행인의 법정소득(Statutory Income)은 다른 납세의무자의 소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다⁸⁷⁾. 즉, 어떠한 YA에 법정소득은 유산재단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데 전적이면서 배타적으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대해 계산된다. 다만 망자의 유산재단의 총소득(Total Income)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는 비용은 다음과 같다.

- 망자의 자산을 청산하는 동안 납부한 수수료를 포함하여 집행인에 납부된 수수료; 그러나 집행인이 망자 유산재단의 사업을 운영하는 데 개입된 경우 운영에 따른 수수료 부분은 공제 가능
- 유산재단의 자본적 자산과 관련된 지출 및
- 유산재단의 소득 분배와 관련된 지출

과세표준(Chargeable Income)을 계산할 때 오직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인적 공제는 집행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집행인에게는 17%(YA 2010)의 단일세율(Flat Rates)로 부과된다.

4) 수익자에 대한 분배

유산재단 중 분배되지 않은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유산재단의 소득이지 수익자의 소득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집행인이 유산재단의 모든 소득을 수취하지만, 일부 조정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즉, 집행인은 수익자에게 특별하게 남겨진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그 수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집행인은 유언에 의해 미성년자 또는 불구자인 수익자에게 교육비 또는 관리비를 지출할 수 있다. 유언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고 집행인의 판단으로 수익자의 자격이 명확한 경우에 집행

87) 소득세법 §35(8)

인은 최종 분배금을 미리 지급할 수도 있다.

수익자에게 분배된 금액은 유산재단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고, 수익자에게 과세된다. 수익자가 개인인 경우 분배된 소득은 개인소득세율(0~20%)로 과세되는데, 이 세율은 보통 집행인에 적용되는 단일세율인 17%보다 낮다. 따라서 집행인은 수익자에게 모든 소득을 분배함으로써 유산재단의 과세가능소득(Assessable Income)을 감소시키는 것을 원할 수 있다.

실무적으로 유산재단의 소득은 보통 사망일 이후부터 수익자의 소득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관리기간은 사망일에 시작해서 종료하고 유산재단의 소득이 '0' 이므로 유산재단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5) 국외소득

유언자가 국내·외에 소재하는 자산을 남기고 사망한 경우 그의 유산재단은 자산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별도로 관리될 수 있다. 또한 유언장에 의하여 별개의 집행인들이 각 국가에 임명될 수 있다. 망자의 유산재단이 국외에 소재하고 수익자가 내국인인 경우 유산재단의 집행인이 제공한 분배금은 수익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관리되는 유산재단으로부터 수익자에게 분배된 경우만 수익자의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다⁸⁸⁾.

6) 신고

집행인은 망자 유산재단의 소득에 대한 연간세금신고서(Form T)를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3월 31일까지 해당 서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집행인은 국세청장에게 4월 14일까지 유산재단에 대한 과세가능성을 고지해야 한다.

88) 소득세법 §35(10)

나. 신탁

신탁(Trust)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합의하에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보유하고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 때, 수탁자는 개인일 수도 있고, 금융자산관리사 또는 신탁회사일 수도 있다.

수탁자가 운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수탁자 단계에서 17%(2010년 기준)로 분리과세된다⁸⁹⁾. 이 경우 수탁자는 법인인지 개인인지를 불문하고 세무 목적상 Body of Persons로 간주된다. 이러한 사업소득의 분배금이 자본의 성격을 가지면 수익자 측면에서 추가적인 과세를 받지 않는다.

1) 수탁자의 법정소득 결정

신탁의 소득은 수탁자에게 과세된다. 수탁자의 법정소득(Statutory Income)은 다른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된다. 소득 창출과정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배타적으로 발생한 비용은 공제된다. 그러나 신탁 관리나 순소득의 분배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소득이 창출된 후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세무상 도관 처리(Tax Transparency Treatment)'에 의해 거주자인 수익자가 수취한 분배금에 대해 과세되고 수탁자는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⁹⁰⁾. 그러나 수탁자가 수행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세무상 도관 처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업소득은 수탁자 단계에서 17%의 세율로 분리과세되고, 이로부터 수익자에 분배되는 경우 수익자 단계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

2) 신탁에 대한 조세특례

소득세법은 특정한 신탁에 대해 경감세율 적용,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부여하고 있다.

89) 소득세법 §43(2A)(c)

90) IRAS, Circular 'Income Tax Treatment of Trust', November 2006

첫째, 승인된 수탁회사(Approved Trustee Company; ATC)는 ‘지정된 투자(Designated Investments)’에 대해 비거주자에게 특정 수탁자와 관리인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10%의 경감세율을 적용한다⁹¹⁾. 수탁회사는 신탁회사법(Trust Companies Act)에 따라 신탁회사로 허가받은 회사 또는 신탁사업허가의 보유가 면제되는 모든 회사를 의미한다.

둘째, ‘신탁 목적으로 설립된 적격국내신탁과 Prescribed Locally Administered Trust(PLAT)’는 지역원천 투자소득과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비과세된다⁹²⁾. 비과세 소득으로부터의 분배금을 받은 수익자도 과세되지 않는다. PLAT는 반드시 국내에 소재하는 승인된 수탁회사(ATC)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PLAT의 각 신탁자는 개인이어야 한다.

셋째, 국내에 수탁사업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신탁이 승인된 수탁회사(ATC)에 의해 관리되는 경우 국외신탁의 특정소득⁹³⁾은 비과세될 수 있다. 또한 신탁의 비과세 소득 중 일부를 받을 수익자가 비거주자 또는 국외법인인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넷째, ① 2005년 2월 18일 이후 자선목적으로 설정되고 국내의 수탁회사가 관리하는 국외계좌의 펀드·자산 ② 수탁회사가 관리하는 자선목적 신탁의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 설립된 적격지주회사(Eligible Holding Company; EHC)의 펀드·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된다⁹⁴⁾. 이 때 적격지주회사의 지분은 자선목적 신탁의 수탁자나 그가 지정한 자가 보유해야 하며, 적격지주회사의 운영은 오직 자선목적 신탁을 위한 사업과 투자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수익자가 국외법인이나 비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도 국외자선신탁에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다섯째, ‘승인된 단위신탁(Approved Unit Trust)’의 투자자가 거주자이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국외 투자자인 경우 조세혜택(Tax Relief)이 부여된다⁹⁵⁾.

91) 소득세법 §43J

92) 소득세법 §13Q

93) Income Tax(Exemption of Income of Foreign Trusts) Regulations

94) 소득세법 §13O

95) 소득세법 §10B

다. 사업신탁

소득세법상 사업신탁(Business Trust)은 2004년 사업신탁법(Business Trusts Act 2004)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서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이는 사업신탁의 경제적 목적, 구조, 운영이 법인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탁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식은 일단계 시스템하에 있는 법인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식과 동일하다. 부분적인 면세(Tax exemption) 방식도 사업신탁에 적용된다. 사업신탁의 소득은 신탁단계에서 17% 세율(2010년 기준)로 분리과세된다. 사업신탁의 투자자는 수탁자의 법정소득(Statutory Income) 중 보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않고, 수탁자가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도 공제받지 못한다. 법인에 적용되는 다음의 세무사항은 사업신탁에도 적용된다.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국외납부세액의 공제
- 동일한 지배하에 있는 자들 간에 자산매각에 대한 소득세법 § 24의 선택
- 미사용 자본공제, 결손금, 미공제 기부금의 이월과 사용 및
- 그룹공제제도에 의한 적격손실항목의 이전

라. 계승적 재산처분

신탁자(Settlor)는 주로 자녀들에게 소득이나 소득을 창출하는 자산을 이전하는 계승적 재산처분(Settlements)⁹⁶⁾⁹⁷⁾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신탁자의 납세의무

96) 'Settlements'의 번역은 이화숙 교수의 『부부재산관계』에서는 계승적 부동산처분, 서희원의 『영미법강의』에서는 계승적 재산처분으로 표현되는데, 싱가포르 국세청에 의하면 이전 대상이 부동산 이외에 주식도 포함되므로 '계승적 재산처분'으로 번역한다.

97) 싱가포르 국세청은 Settlement를 유언에 의하지 않고 부동산이나 주식을 서면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Settlement는 영미법상 용어로 다의적으로 사용되는데, 이 중 계승적 재산처분이란 동일 재산상의 권리를 여러 사람에게 순차로 부여하려는 처분 행위 또는 그 증서를 말한다. 계승적 재산처분에는 ① 혼인을 원인으로 하여 혼인 전에 행해지는 것으로서 재산을 부부 및 그 자녀에게 오래도록 존속시키려고 하는 혼인계승적 재산처분 ② 특정 가족에게 부동산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영구히 존속시키려는 가족 계승적 재산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자녀의 교육을 위해 신탁 펀드를 설정하고 펀드의 수탁자에게 부동산이나 주식을 이전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가 낮은 세율로 과세되거나 소득이 없는 친척에게 이전되는 방식으로 조세회피에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계승적 재산처분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법 §31이 규정되었다. 동 규정에서 말하는 ‘계승적 재산처분’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자산 또는 소득의 처분, 신탁, 계약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된다. 다만, ① 시가가 반영된 적절한 대가에 의한 진실된 계승적 재산처분, ② 법원 명령에 의한 계승적 재산처분, ③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수, 연금, 일시금을 고용주의 사망 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약정은 소득세법 §31이 적용되는 계승적 재산처분에서 제외된다.

자산 또는 소득의 계승적 재산처분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신탁자(Settlor)이다. 여기서 말하는 신탁자는 ① 직·간접적으로 계승적 재산처분을 한 자 ② 계승적 재산처분의 목적을 위해 직·간접적으로 자금이나 대출금을 제공한 자 ③ 계승적 재산처분을 하는 다른 자를 위해 상호계약을 한 자를 포함한다.

계승적 재산처분을 구성하는 소득 및 자산이 신탁자의 소득 또는 자산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성년인 친척을 위한 계승적 재산처분이다. 신탁자의 생존기간 동안 계승적 재산처분의 소득이나 자산이 신탁자의 친척에게 지급되거나 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해당 친척이 YA 초에 미혼이고 21세 이하인 경우에는 계승적 재산처분의 소득 또는 자산은 신탁자의 소득으로 간주된다⁹⁸⁾. 둘째, 철회 시 신탁자에게 계승적 재산처분의 소득 또는 자산이 복귀되는 계승적 재산처분이다. 철회될 수 있는 계승적 재산처분의 경우 철회시 신탁자 또는 신탁자의 배우자가 계승적 재산처분을 구성하는 소득 또는 자산의 수익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계승적 재산처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은 신탁자의 소득으로 간주된다⁹⁹⁾. 셋째, 사용자격 없는 신탁자가 계승적처분의 소득 또는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98) 소득세법 §31(1)

99) 소득세법 §31(2)

제3편 소비세제

I. GST

1. 개관

싱가포르의 GST 세제는 1994년 4월 1일에 도입되었으며, 영국의 VAT 법안과 뉴질랜드의 GST 법안을 모델로 하고 있다. GST 최고책임자(Comptroller of GST)는 재무부 장관이 임명하며 GST법의 집행과 징수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GST는 GST 등록자가 공급하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된다.

GST란 국내 소비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고객이 GST 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및 용역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세율은 7%의 표준세율 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즉, GST를 포함한 가격이 10.7싱가포르달러인 경우 10싱가포르달러는 공급자에게 돌아가고 0.7싱가포르달러는 GST로서 정부의 세금이 되는 것이다.

법에서 면세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주요 면세 항목은 금융서비스와 거주용자산의 판매 및 임대이다. GST의 징수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GST 최고책임자에 등록된 거래상(traders)이 하게 되는데, 재화의 수입인 경우에는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시점에 싱가포르 관세청(Customs)이 징수한다.

싱가포르의 과세대상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한 GST는 매출세액이고 GST 최고책임자에게 납부할 금액이다. 사업상 매입에 대하여 지불한 GST를 매입세액이라고 하며 이는 GST 최고책임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매입세액공제의 청구는 GST 최고책임자에게 GST 신고서(GST return)를 제출할 때 납부하여야 할 총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차액을 순GST

납부할 세액(net GST payable) 또는 순GST 환급가능액(net GST refundable)이라고 하고 차액에 따라 GST 최고책임자에게 납부하거나 환급받는다.

GST 등록사업자가 아닌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등록사업자가 아닌 경우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매입세액을 원가의 일부로 처리할 수 있다. 재화가 판매되기 전이라도 관련 매입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구입한 회계기간에 재화가 판매되지 않고 다음 회계기간에 판매되더라도 구입한 회계연도에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하려는 자가 구입자로서 명기되어 있는 유효한 세금계산서(tax invoice) 또는 간이세금계산서(simplified tax invoice)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GST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최종소비자로부터 GST를 징수할 수 없다. 그러나 미등록사업자라도 자신이 GST 등록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해서는 GST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는 GST법에 의해 등록된 자이다. 납세의무자는 법인, 파트너십, 개인사업자, 클럽,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이 될 수 있다. 싱가포르에서의 재화 및 용역의 과세공급이 연간 100만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GST 최고책임자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연간 매출이 100만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자발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 등록의 승인 여부는 GST 최고책임자의 재량권에 달려 있다. 또한 일단 자발적으로 GST 등록을 하면, 최소 2년간 등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과세대상거래

가. 과세대상 공급

GST법에서는 “싱가포르에서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싱가포르로의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GST를 부과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와 용

역의 공급에 대한 GST는 GST 최고책임자를 대신하여 사업자와 단체(business and organization)가 징수하게 된다. 그리고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 시점에 GST 최고책임자를 대신하여 싱가포르 관세청에서 GST를 징수하게 된다.

과세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면세공급을 제외한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다.

〈표 3-1-1〉 GST 과세공급 및 면세공급 유형

과세공급		면세공급	
표준세율(7%)	영세율, 면세, 적용 제외가 아닌 모든 공급	면세	- 거주용 부동산의 판매 및 임대 - 금융서비스
영세율(0%)	- 재화의 수출 - 국제적 용역	GST 적용 제외	- 계속기업으로서 사업의 이전 - 개인간 거래 - 제3국 판매 - zero GST 창고 내에서의 판매

모든 수입된 재화는 싱가포르 내에서의 판매이든 수출이든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특별히 GST 면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재화가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s)에 있는 경우에는 수입으로 처리되지 않고 GST도 부과되지 않는다.

재화를 수입할 때, 수입 시점에 거래상이든 최종소비자이든 관계없이 관세청에 GST를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인 경우, 해당 수입이 과세대상인 사업활동에 사용되기 위하여 수입된 것이라면 GST를 환급받을 수 있다. GST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 관세청에 납부한 GST는 환급받을 수 없다.

나. 공급 장소·시기·가격의 결정

공급장소의 결정은 GST가 부과되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중요한 개념이다. 재화의 공급인 경우 공급이 싱가포르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면 GST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고 싱가포르로 수입되는 재화인 경우 수입 시점에 GST가 부과되고 관세청에 의해 징수된다. 용역의 공급인 경우 공급자가 싱가포르에 귀속되어 있으면 싱가포르 내에서 이루어

어진 것으로 처리한다.

만일 공급자가 고정사업장(business establishment or fixed establishment)을 싱가포르에만 갖고 있는 경우, 싱가포르에 속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공급자가 어느 곳에도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주 거주지가 싱가포르이면 싱가포르에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처리한다. 공급자가 1개 국가 이상에 고정사업장이 있다면, 특정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사업장이 있는 국가에 속해 있는 것으로 본다.

공급 시기를 결정하는 일반규정은 ① 재화가 도착하거나 사용가능해진 시기 또는 용역이 제공된 시기 ② 해당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의 발행 ③ 공급자가 해당 공급에 대한 금액을 지불받은 시기 중 가장 빠른 시기를 공급시기로 판단한다. 예외 규정으로, 만일 공급자가 상기 ①의 사건이 있는 후 14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공급 시기는 세금 계산서 발행일이 되는데 이를 '14일 규정'이라 한다. '14일 규정'은 상기 ③의 사건이 먼저 일어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대금 지급이 상기 ①과 ②의 사건 이전에 이루어지는 경우, 공급 시기는 대금 지급시기가 된다.

GST는 공급이 인식된 시점에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격에 대해서 부과된다. 공급가격이란 현금대가 또는 시장가치로 결정된다. 현금대가가 있는 경우 공급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된다.

$$\text{현금대가} = \text{공급가격} + \text{GST}$$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공급 또는 대가가 현금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 공급가격은 시장가격(Open Market Value)으로 한다. 시장가격은 GST를 제외한 가격이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에서의 가격을 의미한다.

4. 세율

GST법에 의한 공급은 과세공급과 면세공급으로 구분되고 과세공급은 다시 표준세율 공급과 영세율 공급으로 구분된다.

재화의 수출 및 국제적 용역제공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영세율을 제외한 과세공급에 대해서는 7%의 세율을 적용한다.

5. 영세율 공급 및 면세공급

가. 영세율 공급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GST 세율 0%를 적용한다. 영세율 적용대상 공급인 경우 매입 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영세율 대상 공급은 재화의 수출 및 국제적 용역 공급이다.

국제적인 용역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싱가포르의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기도 하다. GST법에서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국제적인 용역의 범위를 상당히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제적 운송과 관련된 용역, 국외에서 사용하기 위한 운송수단의 임대, 국외 부동산 및 재화 관련된 서비스, 재화의 수출과 관련된 서비스(금융서비스 포함), 국외에서 수행되는 문화·예술·스포츠 등, 선박 및 항공기의 조작, 국제통신용역, 광고용역, 기계설비등의 수선용역 등이 포함된다¹⁰⁰⁾.

2010년 예산안을 통해 해양산업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 ① 레크리에이션이나 오락 목적으로 사용되는 적절한 선박과 MPA(The Maritime and Port Authority of Singapore)로부터 인가받은 유람선의 판매 및 임대
- ② 국외 지역으로 여행하는 선박에서의 상품의 판매
- ③ 선박을 통한 국외 지역으로의 재화나 승객의 수송
- ④ 수출될 재화임을 증명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선박에서 사용하거나 설치하기 위한 재화의 판매

나. 면세공급

거주용 토지의 판매 및 임대와 금융서비스의 제공은 GST 면세공급에 해당된다. 재화 및 용역의 면세공급에 대해서는 GST가 부과되지 않는다. 영세율 공급의 경우 해당

100) GST Act §21(3)

영세율 공급에 귀속되는 매입세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반면, 면세공급의 공급자는 면세공급에 귀속되는 매입세액을 회수할 수 없다.

면세대상 금융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은 예금 및 저축 계좌의 운영, 대출 및 신용거래의 제공, 생명보험 계약의 제공 및 소유권 이전이다.

6. 부분적 면세사업자

부분적 면세사업자(Partially-exempt Trader)란 면세공급뿐만 아니라 과세공급도 있는 사업자를 의미한다. 과세대상 공급을 하기 위하여 지불한 매입세액은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지만 면세공급을 위해 지불한 매입세액은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다음의 면세공급만 있는 경우, 거래상은 전체 과세사업자(fully taxable)로 처리될 수 있고, 그것은 모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면세공급에 해당하는 것은 ① 현금 예금 ② 통화의 환전 ③ 최초 발행자로서 채무증권의 발행 ④ 최초 발행자로서 지분증권의 발행 ⑤ 종업원에 대한 대출, 선지급 및 신용의 제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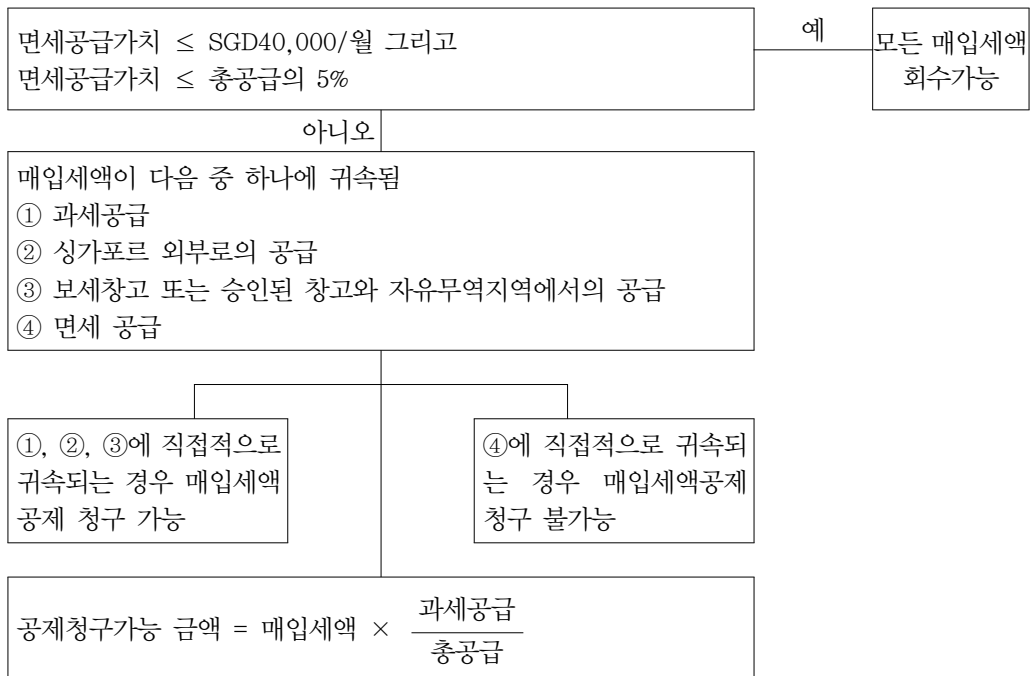
거래상들은 과세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타 금융활동에 참여하게 되므로 2008년 4월 1일 이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다음의 면세공급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과세공급에 귀속되는 매입세액으로 처리하도록 개정되었다. 면세공급이란 외상매출채권의 양도, 단위신탁에 의한 단위의 발행, 위험분산 활동, 사채로부터 수취한 이자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면세공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 ① 은행법에 의한 면허가 요구되는 은행(full bank, wholesale bank, offshore bank)
- ②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Act §28에 의해 금융기관으로 승인이 필요한 종합금융회사(merchant bank)
- ③ Insurance Act에 의한 등록이 필요한 생명보험회사
- ④ Finance Companies Act에 의한 면허가 필요한 금융회사
- ⑤ Moneylenders Act에 의해 등록이 필요한 대부업자, Money changing and Remittance Business Act에 의한 면허가 필요한 환전 및 송금업자

- ⑥ Pawnbrokers Act에 의한 면허가 필요한 전당포업자
- ⑦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기타 결제카드 회사
- ⑧ REIT(Real Estate Investment Trust)를 제외한 투자신탁, 단위신탁, REIT 특
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Vehicle), 사업신탁(business trust), 사업신탁특
수목적회사

그러나 면세공급을 하는 사업자라도 소규모 면제규정(De Minimis rule)에 의해 매
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소규모 면제규정에 따르면, 만일 납세의무자에 의
한 면세공급 총가치가 ① 2000년 4월 1일 이후 월평균 40,000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
지 않고 ② 해당 기간의 과세 및 면세 공급 가치 합계의 5%를 초과하지 않으면, 면세
공급에 사용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납부한 GST를 전액 매입세액공제할 수 있다.

[그림 3-1-1] 부분적 면세 사업자의 매입세액공제 청구



자료: IRAS, GST: General Guide for Businesses(5th Edition), 2009. 9. 28.

7. 부가급여에 대한 GST

종업원에 의해 소비되는 부가급여에 대해서도 GST가 계산이 된다. 매입세액청구가 가능한 고용주는 재화가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경우, 사업목적상 보유한 재화가 종업원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경우에 있어서 재화의 원가에 대해 GST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원가가 200싱가포르달러를 넘지 않는 증정품(gift)으로 연속적(3개월 이내에 동일인에게 3회 이상 제공)으로 지급되지 않는 것,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무료 음식 및 숙소와 같은 무상 공급에 대해서는 GST가 부과되지 않는다.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는 고용주의 경우, 사업용 재화(business goods)가 무상으로 종업원에게 제공되거나 종업원의 사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매출세액을 부과할 수 없다.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는 고용주라 함은 재화가 GST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구입된 경우, 재화의 공급이 면세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¹⁰¹⁾에 의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이다.

- ① 클럽 정기 회비
- ② 의료비용, 의료 및 상해 보험료(Work Injury Compensation Act 또는 Industrial Relation Act에 의한 것은 제외)
- ③ 자동차 구입비 유지비(Q plate cars 또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한 GST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 가능)
- ④ 종업원 가족에게 제공되는 부가급여
- ⑤ 도박, 경마, 로또, 슬롯머신 등과 관련된 거래

8. GST 등록

연간 과세대상 공급이 100만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 GST 등록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GST 등록의무자가 GST 납세의무자가 된다.

GST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단체는 자영업자, 파트너십, 회사, 클럽, 비영리단체,

101) GST Reg. 26, Reg. 27

정부기관 등이다. 과세대상 공급은 표준세율 대상 공급과 영세율 대상 공급을 모두 포함한다. 과세대상 공급에서 제외되는 것은 면세공급 및 GST 적용제외 공급이다.

등록의무가 있는지는 매 분기말 시점에서 당기와 직전 3개 분기의 매출이 100만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로 판단한다.

〈표 3-1-2〉 등록의무 판단 사례

등록의무 판단일	검토기간	실제 매출액	등록의무
2006. 3. 31.	2005. 4. 1.~ 2006. 3. 31.	SGD 900,000	없음
2006. 6. 30.	2005. 7. 1.~ 2006. 6. 30.	SGD 920,000	없음
2006. 9. 30.	2005. 10. 1.~ 2006. 9. 30.	SGD 980,000	없음
2006. 12. 31.	2006. 1. 1.~ 2006. 12. 31.	SGD 1,200,000	있음

자료: IRAS, GST: General Guide for Businesses(5th Edition), 2009. 9. 28.

만일 현재 과세대상 매출이 100만싱가포르달러 미만이거나 과세대상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과세대상 공급을 할 의도가 있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12개월 이내에 과세대상 공급이 100만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자발적 등록을 하면 2년간 등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자발적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 GST 최고책임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추가적인 조건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자발적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비용과 혜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등록사업자의 경우 사업상 발생한 지출에서 발생한 GST를 청구할 수 있는 반면, GST법에 따라 모든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고 GST 신고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9. 특례제도

가. 그룹등록제도

그룹등록제도(Group Registration)란 몇 개의 회사가 GST 신고 목적상 그들의 행정무를 그룹별로 하는 것이다. 이는 GST 행정비용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그룹 내의 회사들 간에 공급은 GST 목적상 무시됨으로써 그룹에 속한 기업들의 현금흐름 관리에 유리한 면이 있다. 그룹등록을 했을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 ① 그룹 내 회사들 간의 공급은 무시될 수 있다.
- ② 그룹 내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은 대표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처리될 수 있다.
- ③ 그룹 내 회사에 의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대표 회사에 의한 공급으로 처리될 수 있다.
- ④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그룹 내 회사가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이 대표 회사에 의해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으로 처리될 수 있다.
- ⑤ 그룹 내의 모든 회사는 동일한 회계기간과 동일한 회계기준을 채택하여야 한다.
- ⑥ 그룹 내 모든 회사는 각각 등록이 되어야 한다.
- ⑦ 그룹 내 모든 회사는 각각 장부기록을 하여야 한다.
- ⑧ 그룹 내 회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그룹에게 지급된 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 ⑨ 그룹은 납세의무자로 처리될 수 있다.

그룹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서(Application for Group Registration)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사업부별 등록

등록된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부문(division)을 운영하거나 별개의 사업체(business)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부문 또는 사업체별로 GST 등록을 신청할 수 있

다. 이와 같이, 사업부별 등록(Divisional Registration)을 하는 경우 사업부문 및 사업체별로 등록번호를 받고 GST 신고서를 제출한다. 부문별 등록을 신청하려면 별도의 신청서(Application for Divisional Registration)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출업자 감면

수출업을 주로 하는 경우, 수출업자 감면제도(Major Export Scheme: MES)에 의해 승인을 받으면 수입 물품에 대하여 수입 시점에 GST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승인을 받으려면, 영세율 공급이 총공급의 50%를 초과하거나 영세율 공급이 과거 12개월 동안 1,000만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출업자 감면제도를 적용하려면 상기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와 별도의 신청서(Application for Major Exporter Scheme)를 GST 최고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수출업자 감면의 자격이 다음 검토시기까지 유지되는데 다음 검토시기는 승인일로부터 3년이다. 적격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 즉시 GST 최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출업자 감면 자격이 취소된다.

라. 보세창고제도

보세창고제도(Zero GST Warehouse Scheme: ZGS)는 싱가포르 관세청(Customs)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보세창고는 GST 과세 없이 수입된 재화를 보관하기 위하여 승인된 장소이다. 수입 직후 보세창고로 바로 운송되는 모든 재화에 대해서는 GST가 부과되지 않는다.

마. 위탁제조업자에 대한 감면제도

위탁제조업자에 대한 감면제도(Approved Contract Manufacturer & Trader Scheme: ACMT)는 주로 해외 고객을 상대로 사업하는 국내 위탁제조업자(contract manufacturer)들에게 GST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동 제도에 의하면, 승인된 위탁제조업자들은 국내 공급에 대해 GST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 동시에 GST는 고객에 의해 매입세액으로서 청구될 수 있다. 또한 위탁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 활동에 대한 수수료(processing fee)는 GST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GST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다. ACMT제도를 적용하려면 별도의 신청서(Application Form for the ACME)를 제조업자인 경우 EDB(Economic development Board)에, 거래상인 경우 IES(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에 제출해야 한다.

바. 보세지역 반출 재화에 대한 감면제도

보세지역에서 반출된 재화에 대한 감면제도(Waiver of GST for goods removed from Zero GST(ZG) Warehouse by a Major Exporter Scheme Trader)란 물류회사(logistics company)의 싱가포르 내에서의 사업 확장을 지원하고 사업의 기지로서 싱가포르를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보세창고로부터 승인된 거래상에 의해 옮겨진 재화에 대해 GST 부과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보세창고로부터의 재화의 이동에 대하여 GST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승인된 물류회사에 한해 적용한다. 승인된 물류회사로서 MES 또는 A3PL Company Scheme에 해당하는 거래상은 자신의 재화를 보세창고에서 GST 납부 없이 가져갈 수 있다. 이것은 MES 또는 A3PL Company Scheme에 해당하는 거래상이 해외 공급자로부터 직접 재화를 수입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

사. 관광객 환급제도

관광객 환급제도(Retail export scheme: tourist refund)는 싱가포르에서 구입한 재화에 대하여 납부한 GST의 환급을 청구하는 제도이다. 환급대상은 구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싱가포르 외부로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소매상 또는 CRA(Central Refund Agency)는 관광객에게 GST 환급을 할 수 있고 소매상 또는 CRA는 환급해 준 세액을 국세청의 GST 최고책임자로부터 받는다. 동 제도로 인해 GST 등록사업자인 소매상이 관광객에게 판매한 재화의 경우 영세율 공급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제도의 근거는 관광객에 대한 판매가 실질적으로는 수출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10. GST의 세무처리

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GST 신고서에서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간이세금계산서 및 기타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간이세금계산서는 총매출금액과 GST를 합한 금액이 1,000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발행할 수 있다. 간이세금계산서에는 사업자명, 주소, GST 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번호, 세금계산서 발행일, 공급한 재화 및 용역, GST를 포함하여 납부할 총액이 기재되고 ‘Price payable includes GST’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영세율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또는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중 하나를 발행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및 간이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경우, 대금을 지불한 자에게 영수증을 지급하여야 하고 발행된 영수증의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발급한 영수증에는 사업자 명과 GST 등록번호, 영수증 발행일, 세금을 포함한 총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Price payable includes GST’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나. 매입세액공제

GST는 다단계 과세이므로 생산과 분배의 각 단계에서 세금이 징수된다. 그러나 최종 소비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등록된 거래상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 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 납부한 GST에 대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 납부한 총매입세액을 동일 회계연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산출한 GST 순액이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면 GST 순액은 납부할 세액이고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적으면 GST 순액은 환급받는 금액이다.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하려면, 과세사업자이어야 하고 과세공급에 사용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해 지불한 매입세액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매출

세액과 매입세액이 보고기간 동안 동일한 공급과 관련된 것일 필요는 없다.

등록된 거래상이고 과세공급에 대해 납부한 GST 또는 수입에 대해 관세청에 납부한 GST가 있는 경우, GST 신고서에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만일 대손이 발생하였다면 그 대손에 해당하는 GST 환급 요청을 할 수 있다. 일부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 매입세액 즉, 클럽회비, 의료비용 등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매출세액은 과세공급에 대해서 부과된 GST 세액이다. 대손이 발생하여 해당 GST를 환급한 후 다시 대손이 회수되는 경우, 환급된 부분에 해당하는 GST를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 기한으로부터 12개월 동안 공급자에 지급하지 않았고 매입세액공제를 청구한 경우 최고책임자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GST 신고서 제출기한은 회계기간 종료 후 1개월이다. 3개월 단위로 분기별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별 신고기간의 종료시점은 회계연도 종료시점과 일치하여야 한다.

11. GST 행정

가. 기장 및 신고의무

모든 납세의무자는 거래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거래 관련 자료라 함은 회계장부(business and accounting records), 발행 또는 수취한 세금신고서 사본, 수입 및 수출 관련 서류, 거래 내역 변경을 증빙하는 모든 전표(credit notes와 debit notes) 등, 이와 유사한 기타 모든 기록들이다.

나. 부과, 체납처분, 징수 및 환급

납세자가 GST 신고서 제출 또는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는 서류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고책임자는 GST 세액을 평가할 권한이 있다. 또한 신고서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또는 GST 세액이 환급되지 말았어야 할 납세자에게 환급된 경

우 최고책임자가 GST를 평가할 수 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회계기간에 있어서, 최고책임자는 회계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세액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최고책임자가 사기(fraud) 또는 고의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세액을 부과할 수 있다.

GST법에서는 최고책임자의 의무인 체납처분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료 및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폭넓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즉, 최고책임자는 ① 표본을 취득할 권리 ② 건물, 장소, 문서, 컴퓨터,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한 ③ 문서 및 컴퓨터를 언제든지 검사, 복사 및 추출하기 위하여 접근할 권리 ④ 문서, 컴퓨터,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수취할 권한 ⑤ 구두 또는 서면으로 누구에게나 질의할 권리를 갖는다.

GST 신고서를 제출하는 개인은 해당 신고서의 회계기간의 GST 세액을 최고책임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의 납부는 GST 신고서 제출기한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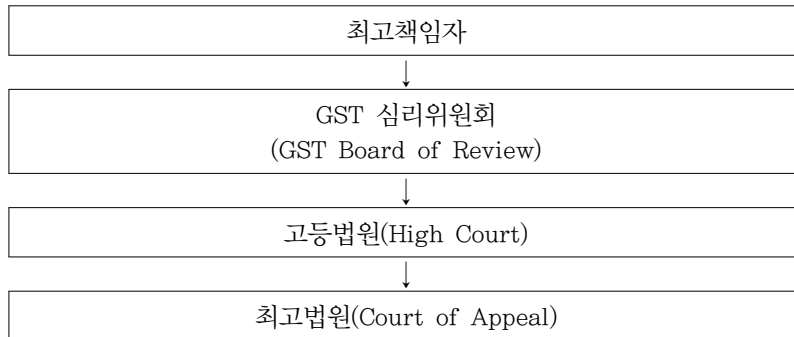
납부하지 않은 세액과 그에 따른 가산세(penalties)는 정부에 대한 채무로서 최고책임자가 회수할 수 있다. 최고책임자는 GST 미납자의 출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또 다른 체납액 회수조치로서 재화의 몰수 등도 가능하다.

만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면, 납세의무자는 최고책임자에게 1, 3, 6개월 이내에 그 차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환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미납된 환급액에 2.13%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환급을 요청할 수 있지만 환급액이 10 싱가포르달러 미만이면 이자가 가산되지 않는다.

다. 이의신청 및 불복

GST의 이의신청 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2] 이의신청 절차



자료: IRAS, *GST: General Guide for Businesses*(5th Edition), 2009. 9. 28.

납세자는 GST Act §49(1)에 열거된 사항에 관하여 최고책임자가 결정한 것에 대하여 검토 및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49(1)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은 GST의 등록과 취소, 납부할 세액의 결정, 과세공급, 가산세(penalty tax), 환급 등에 관한 것이다. 이의신청(objection)은 이의신청을 고지한 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최고책임자는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통해 검토 및 변경 신청한 것에 대한 최고책임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는 고지를 통해 GST 심리위원회에 심판청구(appeal)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한 최고책임자 결정일 이후 30일 내에 문서로 GST 심리위원회에 불복을 고지하고, 고지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GST 심리위원회는 신청자가 GST 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세금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을 납부하고 신청 수수료(filing fee)를 납부한 경우가 아니면 GST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고등법원(High Court)에의 항소는 법 또는 법과 사실관계가 혼합된 질의를 기반으로 한 GST 심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허용된다.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최고법원(Court of Appeal)에 상고할 수 있다.

라. 위반행위 및 제재

주요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처벌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3-1-3〉 GST 관련 위반행위와 처벌규정

위반행위	처벌규정
장부보관의무 위반	(판결에 의해) · 1차 위반: 최고 SGD 5,000 벌금 그리고/또는 최고 6개월 징역 · 2차 위반: 최고 SGD 10,000 벌금 그리고/또는 최고 3년 징역
구체적인 가산세 규정이 없는 위반행위	(판결에 의해) 최고 SGD 5,000 벌금 그리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5개월 징역
부정확한 신고서	(판결에 의해) 과소납부된 세액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과실에 의한 부정확한 신고서	(판결에 의해) 과소납부된 세액의 2배 그리고 최고 SGD 5,000 벌금/또는 최고 3년 징역
세금 미납/연체	납부할 세액의 5% 가산세 그리고 60일 경과 후에도 미납인 경우 매월 미납금액의 2% 추가 가산세, 미납세액의 50%를 상한으로 함
신고서 미제출/제출기한경과	경과 기간 매월 SGD 200, 최고 SGD 10,000
등록의무 위반	(판결에 의해) 등록의무 위반일로부터 매년 납부세액의 10% 가산세 그리고 최고 SGD 10,000의 벌금 그리고 계속적인 위반인 경우, 판결 이후 매일 SGD 50의 추가가산세
매출세액의 누락 및 과소계상, 매입세액의 과대계상, 허위진술, 허위 회신, 허위 장부 및 기록, 사기 등에 의한 고의적 조세회피	(판결에 의해) 과소납부된 세액의 3배 가산세 그리고 최고 SGD 10,000의 벌금 그리고/또는 최고 7년 징역
부적절한 환급금 수취	(판결에 의해) 초과 환급금의 3배 가산세 그리고 최고 SGD 10,000의 벌금 그리고/또는 최고 3년의 징역
조세가 회피될 것을 알면서 재화 및 용역을 취득	(판결에 의해) 최고 SGD 5,000의 벌금 그리고 세금의 3배 가산세
승인되지 않은 자에 의한 세금신고서 및 영수증 발행	(판결에 의해) 최고 SGD 10,000의 벌금 그리고 세금신고서 및 영수증 금액의 3배 가산세
승인되지 않은 세금의 징수 및 징수 시도	(판결에 의해) 최고 SGD 10,000의 벌금 그리고/또는 최고 3년의 징역
최고책임자의 업무 방해	(판결에 의해) 최고 SGD 5,000의 벌금 그리고/또는 최고 6개월의 징역
필요한 보안의 불이행	(판결에 의해) 최고 SGD 5,000의 벌금

마.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¹⁰²⁾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Advance Ruling System)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국세청은 납세자가 구체적인 거래에 대한 세법처리에 관하여 질의를 하는 경우 문서상으로 답변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그러한 문서로 된 답변은 법적 구속력은 없었다. 납세자에게 보다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하여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도입하였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관한 내용은 GST Act §90A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는 2007년 7월 1일부터 유효하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이란 구체적인 거래에 대하여 GST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특정 개인에게 서면으로 법 해석을 제공하는 것이다. 쟁점 사항이 법 해석에 대한 사전답변의 요청은 이미 법적으로 명확한 것에 대한 정보나 설명에 관한 것은 아니다. 또한 수출 및 수입 서류, 환급, 납부, 신고, 가산세, GST 감면과 같은 조세정책 관련 쟁점사항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다.

1) 사전답변의 효력

GST 사전답변(Advance ruling)은 두 가지 방식으로 효력을 지닌다. 첫째, 사전답변은 신청자에게 그리고 사전답변을 요청한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해 적용한다. 그러나 신청자가 이미 수취한 사전답변을 상황이 유사한 다른 거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유사한 거래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된 사전답변도 적용할 수 없다. 둘째, 사전답변은 답변에서 정한 방법으로 최고책임자가 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구속력을 지닌다.

GST Group에 속한 등록된 개인에게 발행된 사전답변은 일반적으로 답변에 기재된 개인에 한해 적용한다. 그러나 만일 새로운 구성원이 동일한 GST Group 내에 계속해서 등록되고 그 구성원이 답변에 기재된 동일한 거래에 가담한 경우라면, 사전답변은 새로운 구성원에도 적용한다. 새로운 구성원은 사전답변이 적용되기 전에 GST 승인을

102) IRAS, "GST: Advance Ruling System(6th edition)"

받아야 한다. 새로운 구성원은 사전답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수수료는 부담하지 않는다.

일단 발행된 사전답변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것으로 최종적인 것이다. 만일 납세자가 GST 신고서 제출 시 사전답변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그것은 그 거래가 사전답변의 대상이 아니고 서면으로 최고책임자에게 취득한 사전답변을 따르지 않았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최고책임자에게 보내는 서면을 통해 사전답변을 받은 날짜와 문서 번호, 사전답변의 영향을 받는 GST 신고서의 해당 기간 및 금액의 차이, 사전답변을 따르지 않은 이유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신고서 작성 시 사전답변을 따르지 않고 거래의 사실과 상황에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 경우, 최고책임자는 그에 따라 평가액을 바꿀 수 있고 납세자는 평가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

2) 사전답변의 유효기간 및 철회

모든 사전답변은 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지만 최고책임자는 이와 별도로 유효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만일 사전답변에 명기된 거래가 사전답변에 기재된 기간 내에 수행되지 않았다면 사전답변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사전답변은 법이 사전답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의 개정일부터 적용이 중단된다. 최고책임자는 납세자에게 사전답변의 적용 중단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유효기간 이전에라도 적용이 중단될 수 있다. 특정 상황이란, 거래 발생 장소가 사전답변에 기재된 장소와 다른 경우, 사전답변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누락이나 기재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이다.

사전답변은 철회할 수도 있는데, 최고책임자는 납세자에게 철회하는 이유와 철회가 적용되는 날짜를 고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철회일 이전에 시작된 특정 거래에 대해서는 계속 적용할 수 있다.

3) 신청절차

사전답변을 신청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된 GST 세금신고서의 제출기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납세자가 거래일 이전에 사전답변(ruling)받기를 원하면, 거래일 1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속한 사전답변(express ruling)의 경우, GST 최고책임자가 신청자의 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로 일반적인 사전답변보다 신속하게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신속한 사전답변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관련 GST 세금신고서 제출기한 10일(근무일 기준)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추가적인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한다. 만일 거래일 이전에 신속한 사전답변을 받고자 하는 경우, 거래일 1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수수료 및 소요기간

사전답변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청수수료로 납부하는 525싱가포르달러는 사전답변 신청이 최고책임자에 의해 거절되거나 신청자 본인이 취소하는 경우라도 환급이 불가능하다. 이는 불필요한 사전답변의 요청으로 인한 시간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 답변을 제공하는 데 소요된 최초 4시간에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131.25싱가포르달러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된다. 최고책임자에게 발생한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비용과 납세자의 동의하에 외부전문가에게 최고책임자가 지불한 비용도 수수료로 부과된다. 신속한 사전답변(express ruling)인 경우, 신청자가 세금신고서 제출기한 이전 10~14일(근무일 기준)까지 수취하는 경우 일반적인 수수료의 3배를 납부하여야 하고 세금신고서 제출기한 15일 전에서 1개월 전까지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수수료의 2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일단 최고책임자가 사전답변 신청을 접수하면, 신청자에게 예상되는 소요시간과 예상되는 수수료를 고지하게 된다. 신청자는 서면으로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확인해 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취소하는 것으로 처리된다. 만일 시간이 경과한 후 신청

자가 취소하려면, 최고책임자가 서면으로 된 취소를 수취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수수료는 부담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사전답변을 제공한 이후에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는 있다. 만일 그 설명이 사전답변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라면, 추가적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요청한 사전답변의 범위를 벗어나는 질문인 경우, 최고책임자는 새로운 사전답변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사전답변은 자료를 수취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공된다. 그러나 복잡한 질의인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는 시점에 소요 기간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최고책임자가 신청자의 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신속한 사전답변을 받아들인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 또는 1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답변을 제공하여야 하며 각각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배 또는 2배가 된다.

II. 개별소비세

1. 납세의무자

개별소비세(Excise duty)의 경우 다른 세목과 달리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Customs Act)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개별소비세와 관세를 관리하고 있는데, 개별소비세는 주류, 담배류, 유류, 자동차의 제조 및 수입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싱가포르에서 해당 과세물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2. 과세대상 및 세율

개별소비세는 주류, 담배류, 유류 및 자동차 제품에 대해 부과한다. 주류, 담배류, 유류에 대한 세율은 세부 품목별로 달리 정하고 있고 종량세 형태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한 세율은 20%, 12%로 시장가격(open market value)의 일정비율로 과세하는 종가세 형태로 과세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제조 및 수입되는 과세대상 품목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세대상 품목별 세율은 <표 3-II-1>과 같다.

〈표 3-Ⅱ-1〉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세율

	과세대상	세율
주류	알코올음료 제조에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SGD 90/kg
	흑맥주, 기타 맥주, 과실주(cider & perry)	SGD 48/ℓ
	위스키, 와인, 사케 등	SGD 70/ℓ
담배류	시가, blended tobacco, 코담배, 기타 유형의 담배	SGD 352/kg
	씹는 담배 등	SGD 181/kg
	궐련	Ø 35.2/g 또는 개비
	담뱃잎 등	SGD 300/kg
유류	프리미엄 휘발유	SGD 7.10/dal ¹⁾
	프리미엄 무연휘발유	SGD 4.40/dal
	일반 휘발유	SGD 6.30/dal
	일반 무연휘발유	SGD 3.70/dal
	기타 휘발유	SGD 6.80/dal
	기타 무연휘발유	SGD 4.10/dal
자동차	자동차	20% ²⁾
	오토바이	12% ²⁾

주: 1) decaliter: 1리터의 10배를 나타내는 단위임.

2) 시장가격(open market value)에 대해 세율 적용함.

자료: 싱가포르 관세청, <http://www.customs.gov.sg/leftNav/trad/val/List+of+Dutiable+Goods.htm>

3. 면세

개별소비세는 단체 또는 사람의 유형, 물품의 종류 및 지정된 조건¹⁰³⁾에 따라 면세될 수 있다. 이러한 면세항목은 외교관 면세(No. 2~4), 군납면세(No. 5~11)를 포함하여 총 47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면세대상자 및 면세대상물품은 〈표 3-Ⅱ-2〉

103) 각 유형별 면세요건은 Customs(Duties)(Exemption) Order, The Schedule Part I에 명시되어 있다.

와 같다.

〈표 3-11-2〉 개별소비세 면세 유형

No.	면세 단체 또는 사람	면세물품
1	대통령	모든 물품
2	외교관, 영사관 또는 승인된 시장개척단(Trade Mission) 및 싱가포르 정부에 의해 외교 및 영사 특혜와 면제를 받는 자	모든 물품
3	국제기구법(International Organisations Act Chapter 145) §2(1)에 따라 대통령령에 의해 싱가포르 정부와 1개 이상 통치권이 있는 정부들이 회원인 단체인 것으로 신고된 단체	(1) 공무수행을 위해 해당 단체에 직접 수입되는 모든 물품 (2) 싱가포르 내 소매휴게소에서 반출되는 휘발유
4	UN, Colombo Plan, 외국의 준정부단체 또는 승인된 민간기구를 위해 싱가포르에서 근무하는 싱가포르 비거주자	(1) 해당 단체 또는 기구를 위한 공공적 공급 (2) 자동차 1대
5	싱가포르에 주둔하는 영연방 군대	모든 군수용품
6	싱가포르에서 급여를 받는 영연방 군대의 구성원	(1) 담배 (2) 맥주
7	영연방 해군의 선박에서 근무하는 자	주류 및 담배
8	호주, 뉴질랜드, 영국 군대의 구성원 및 민간군로자와 가족	(1) 우편으로 수입된 모든 물품 (2) 구성원당 자동차 1대
9	육·해·공군 기관 및 호주, 뉴질랜드, 영국 군대에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타 승인된 단체	담배와 주류(맥주 제외)를 제외한 모든 물품
10	싱가포르 군대	모든 군수용품(휘발유, 고속디젤 제외)
11	싱가포르 군대의 구성원(일상적인 훈련에 참석하지 않는 자원부대의 구성원 및 명예회원 포함)	싱가포르에서 제조된 맥주

자료: Customs(Duties)(Exemption) Order, The Schedule Part I No. 1~11

〈표 3-11-2〉의 계속

No.	면세 단체 또는 사람	면세물품
12	싱가포르 경찰의 구르카인 파견대 및 교도소 구르카인 단체의 회원	위스키 및 맥주
13	교육연구단체, 연구 및 개발시설을 갖춘 정부부서·법정기구 및 회사	(1) 에틸알코올 (2) 페인트 및 석유제품
14	등록 약사	에틸알코올
15	등록 의사, 등록 치과의사, 수의사 및 병원이나 유사단체에서 근무하는 자	에틸알코올
16	관세법 §51(1) 또는 63(1)에 따라 허가받은 석유회사	석유
17	관세법 §63(1)에 따라 허가받은 석유회사	석유
18	관세법 §63(1)에 따라 허가받은 맥주공장	맥주
19	관세법 §63(1)에 따라 허가받은 양조장	(1) 브랜디, 진, 럼, 위스키, 보드카, 알코올 등 (2) 수입된 비표준 에틸알코올
20	관세법 §63(1)에 따라 허가받은 담배제조자	담배
21	산업용 사용자(Industrial User)	고속디젤
22	진정한 여행자(18세 이하 또는 말레이시아로부터 도착한 여행자 제외)	다음과 같은 와인, 증류주, 맥주 (1) 각각 1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와인, 증류주, 맥주 (2) 2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와인 및 1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맥주 또는 (3) 2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맥주 및 1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와인
23	진정한 승무원	0.25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증류주 및 각각 1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테이블 와인 또는 맥주
24	해외 파견근무 후 돌아가는 싱가포르 해외근무 직원(official)	중고자동차 1대
25	모형선박, 자동차, 증기기관차 또는 자체추진식 철도차량	해당 연료탱크의 석유
26	자동차를 담당하는 자	개인용도를 위한 자동차의 임시수입
27	수입자	임시적으로 수출되었던 진실된 무역샘플의 재수입
28	수입자	수리를 위해 임시적으로 수출되었던 자동차의 재수입

자료: Customs(Duties)(Exemption) Order, The Schedule Part I No. 12~28

〈표 3-11-2〉의 계속

No.	면세 단체 또는 사람	면세물품
29	수입자	(1) 관세·개별소비세 부과 이전에 싱가포르에 등록되었던 자동차(수리를 위해 수출된 경우 제외)의 재수입 (2) 종전에 싱가포르에 등록되었고 관세·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던 자동차(수리를 위해 수출된 경우 제외)의 재수입 (3) 종전에 싱가포르에 등록되지 않았지만 관세·개별소비세를 납부하였던 자동차(수리를 위해 수출된 경우 제외)의 재수입
30	수입자	추후 수출할 예정으로 수리를 위한 자동차 및 예비부품의 임시수입
31	수입자	자동차
32	싱가포르 시민이나 거주자가 아닌 개인	임시용 자동차 1대
33	수입자	박람회, 전시회 등 유사행사에서 전시 후 수출할 자동차의 임시수입
34	수입자	경주용 자동차 및 오토바이
35	수입자	고카트 ¹⁾ 및 'pocket' motor cycles
36	수입자	골프차 및 고카트의 엔진 및 본체에 적합한 차대(Chassis)
37	수입자	구형 자동차
38	말레이 철도 식당차의 임차인	모든 물품
39	병원서비스를 포함한 사설요양소, 양로원, 병원 등으로 구성된 승인된 기구	자동차
39A	모든 회사 및 단체	응급차
40	장애인	장애자용 차량, 일반차량 및 개조차량
41	The National Council of Social Service	관세·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찾아가지 않는 물품
42	지역담배제조회사	담뱃잎, 반제조 담배, 살담배(Cut Rag tobacco) 및 재구성된 담배
43	개인	발효액
44	출품자(Exhibitor)	와인이 많은 병이나 용기에 들어있는 경우 하루 라벨당 2.25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와인
45	수입자	엔진 장착 자전거
46	교육기관	교육목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제조된 자동차

주: 1) 경주용 차

자료: Customs(Duties)(Exemption) Order, The Schedule Part I No. 29~46

제4편 재산세제

I. 재산세

1. 납세의무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소유자(Owner)’ 인데, 이는 반드시 ‘법률상 소유자(Legal Owner)’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¹⁰⁴⁾. 해당 부동산이 임대되는 경우 임대료를 받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자가 재산세법상 소유자로 간주된다¹⁰⁵⁾. 따라서 전대차의 제한이 없는 임차인, 대리인, 수탁자도 재산세법상 소유자이다. 또한 평가리스트(Valuation List)에 이름이 기재된 자도 포함된다.

2. 과세대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단독주택(Houses), 건물(Building), 토지(Land), 공동주택(Tenements)과 같은 부동산이다. 여기서 ‘건물’ 은 토지 위에 세워진 구조물로서 거주용 여부에 상관없이 주택, 오두막, 작업장 또는 지붕이 있는 유사 구조물, 부두, 지하저장탱크를 포함하는 것이다¹⁰⁶⁾.

‘토지’ 는 토지의 일부분으로서 부착된 부속물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동산인 기계설비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토지에 부착된 기계설비는 토지의 일부분이 되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기계설비가 ① 물품(Articles) 전체

104)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2482>

105) 재산세법 §2(1)

106) 재산세법 §2(1)

또는 일부의 제작 ② 물품의 변경, 수리, 장식, 완성 또는 ③ 물품매각을 위한 조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기계설비가 존재하는 부동산에 대해 추가되는 가치는 고려되지 않는다¹⁰⁷⁾. 이 때의 기계설비는 증기기관, 보일러, 기타 당해 기계장치에 부착된 동력장치를 포함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석유화학발전소에 부착된 기계장치 중 비과세 기계장치를 열거하고 있다¹⁰⁸⁾.

3. 과세표준

가. 연간가치¹⁰⁹⁾

1) 연간가치의 개념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의 연간가치(Annual Value; AV)이다. 연간가치(AV)는 재산을 임대했을 경우 연간 임대료(가구, 부속품, 관리비 제외)의 추정치이다. 기준은 임대한 경우나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또는 재산의 이용자가 없는 경우 모두 동일하다.

재산의 연간가치는 유사 재산의 임대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은 매년 연간가치가 동일한지 또는 수정되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재산의 연간가치를 평가한다. 재산의 연간가치는 동일 지역의 유사 재산의 시장임대료(Market Rents)가 변동하는 때에 수정될 수 있다. 또한 시장임대료는 개조, 파괴, 재건축 등의 영향을 받게 된다. 보유재산의 연간가치에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국세청이 평가고지(Valuation Notice)를 납세자에게 발송하게 된다.

2)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제외 여부

Strata-titled 재산의 소유자는 승강기, 계단, 주차장, 운동장, 클럽하우스, 수영장,

107) 재산세법 §2(2)

108) IRAS Circular, Tax Guide on Non-Assessable Plant and Machinery Components for Petrochemical and Power Plants, 2006, p. 3

109)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2110>

테니스 코트와 같은 공동자산을 집합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이러한 공동자산의 유지를 목적으로 이들의 소유자는 관리비(Management Fund)와 장기수선충당금(Sinking Fund)을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법상 연간가치는 공동자산을 포함한 재산의 수리, 보험, 유지, 관리를 목적으로 발생하는 ‘임대인의 비용’ (Landlord’s Expenses)을 제외하지 않고 계산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은 Strata-titled 재산의 연간가치를 결정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금만 포함시키고 관리비 납부금은 제외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그 이유는 사실상 관리비 납부금의 일부만 임대주의 비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와 관리회사별로 해당 부분을 구분하여 연간가치를 계산하는 것은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한다고 판단한 것이다¹¹⁰⁾.

나. 연간가치 산출방법

1) 세 가지 방법

연간가치는 임대료 비교법(Rental Comparison Method)을 원칙으로 산출하며, 보충적으로 Contractor’s Test와 수익법(Profits Method)을 이용한다¹¹¹⁾.

첫째, 시장비교법(Market Comparison Method)으로 알려진 임대료 비교법은 임대료의 시가를 알기 쉬운 경우에 이용된다. 이 방법은 재산의 유형, 위치, 물리적 상태,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교가능한 재산의 임대료를 이용하여 재산의 연간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간 가치는 총임대료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비, 관리비, 보험료, 세금을 반영하는 조정이 필요하다. 만일 임대료에 가구이용료와 관리비가 포함된다면 가구이용료와 관리비를 제외하기 위해 총임대료에서 합리적인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둘째, Contractor’s Test는 임대가 되기 어려운 재산과 임대료 비교자료를 얻지 못

110) IRAS Circular, Property Tax: Treatment of Contributions to Management Fund and Sinking Fund, 2009, p. 2

111) IRAS Circular, Investor’s Guide to Property Tax, 2006, pp. 7~9

하는 경우(주유소, 조선소)에 이용된다. 이는 연간 임대료를 추정하기 위해 재산의 자본가치(Capital Value)에 이자율 또는 시장수익률을 적용한다.

셋째, 매출법(Accounts Method)으로 알려진 수익법은 재산을 점유한 사업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참조하여 해당 재산의 임대가치를 추정한다. 이 방식은 임대료 자료를 구할 수 없고 항구나 공공시설과 같이 독점적인 사업에 이용되는 재산에 적용된다.

2) 호텔에 대한 연간가치¹¹²⁾

호텔에 대한 재산세는 객실과 기타 자산을 구분하여 별도로 계산한다. 객실의 연간가치(AV)는 직전연도의 객실 총수입(Gross Room Receipts)에 고정률 또는 부과율(Assessment Rate)을 곱한 금액이다. 이러한 부과율은 2010년에는 20%가 적용되고, 2011년부터 25%로 변경된다. 객실 총수입은 객실이나 스위트룸 및 침대 이용료를 의미하며, 통신서비스료, 세탁서비스료, 비서서비스료, 객실이용료에 포함되는 식사비, 봉사료, GST와 같은 부가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객실 이외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부과영역(Assessable Areas)은 비즈니스센터, 주차장, 휘트니스센터·스파·헬스센터, 식음료 매장, 행사장(Function Room)·회의실·연회장(Ballroom), 체육관, 사무실, 소매매장, 안내데스크·현금인출기·렌터카부스·공중전화박스·광고게시물에 임대되는 공간, 그 밖에 오락 또는 호텔운영을 위해 임대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식음료 매장과 행사장 등의 연간가치는 추정시장임대료에 의한다.

112) IRAS, e-Tax Guide Property Tax: Guide For Hotel Owner And Operators, Revised Jan, 2010, pp. 4~8

호텔의 연간가치 계산사례 예시(Year 2008/2010)		
A. 호텔 객실		
사용객실 및 공실 수:	(a)	150개
직전연도 객실 총수입:	(b)	SGD 7,500,000
사용객실 및 공실에 대한 연간가치:	(c)=(b)×20%	SGD 1,500,000
1실당 연간가치	(d)=(c)/(a)	SGD 10,000
무료, 직원용 또는 수리 중인 객실수:	(e)	50개
무료, 직원용 또는 수리 중인 객실의 연간가치:	(f)=(e)×(d)	SGD 500,000
객실 부분의 연간가치:	(g)=(c)+(f)	SGD 2,000,000
B. 식음료매장		
연간가치:	$1,000\text{ft}^2 \times \text{SGD}7/\text{ft}^2/\text{월} \times 12\text{개월}$	SGD 84,000
C. 소매매장		
연간가치:	$500\text{ft}^2 \times \text{SGD}15/\text{ft}^2/\text{월} \times 12\text{개월}$	SGD 90,000
D. 행사장, 회의실·연회장		
연간가치:	$1,000\text{ft}^2 \times \text{SGD}5/\text{ft}^2/\text{월} \times 12\text{개월}$	SGD 60,000
E. 호텔 전체 연간가치		SGD 2,234,000

자료: IRAS, e-Tax Guide Property Tax: Guide For Hotel Owner And Operators, Revised Jan, 2010, p. 9

4. 세율 및 면세점

가. 세율

1) 일반적인 세율

재산세액은 재산의 연간가치(AV)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2001년 7월 이래로 재산세에 적용되는 세율은 연 10%이다.

2) 1주택 거주자에 대한 특례 세율¹¹³⁾

개인의 거주용 부동산을 구입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소유자 특례’ (Owner-occupier Concession)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자인 소유자에게 적용되는 재산세 세율은 현재 4%이지만, 2011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누진재산세율체제(New Progressive Property Tax Regime; PPTR)에 의해 연간가치의 가액에 따라 세 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표 4-1-1〉 거주자인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2011년 이후)

(단위: 싱가포르달러, %)

연간가치(AV)	세율
~ 6,000	0
6,000~65,000	4
65,000~	6

자료: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2378>

가) 적용대상

‘거주자인 소유자 특례’는 싱가포르의 자가주택 보유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 특례는 오직 개인 소유자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법인, 협회 또는 Body of Person은 거주용 부동산에 그의 직원이 거주하더라도 이 특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 1주택

개인 소유자는 오직 하나의 거주용 부동산에 대해서만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하나 이상의 거주용 부동산을 공동(부부 제외)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이 특례는 공동

113) IRAS Circular, Property Tax Concession For Owner-occupied Residential Properties, Updated pm 12 Sep 2002

소유자가 개별적으로 거주하는 거주용 부동산 각각에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거주하는 거주용 부동산 A와 부부의 부모가 거주하는 거주용 부동산 B를 부부와 그의 부모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부부에 대해서는 거주용 부동산 A, 부모에 대해서는 거주용 부동산 B에 대해서만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부부는 거주용 부동산 B에 대해, 그리고 부모는 거주용 부동산 A에 대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부에 대한 특례는 이혼과 법률상 배우자가 1인 이상인 경우에 예외가 인정된다. 첫째, 법원의 명령이나 별거증서에 따라 부부가 법률상으로 별거되면서 실제로도 별거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별거와 실제 별거가 계속되는 한 그들이 거주하면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각자 특례가 적용된다. 둘째, 보유자의 법률상 배우자가 1인 이상이고 배우자 각자 다른 거주용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각자가 완전히 거주하는 개별 거주용 부동산에 대해 특례가 적용된다.

공공아파트(HDB Flat)와 민간 거주용 부동산에 모두 거주하는 소유자는 공공아파트에 대해서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공공아파트 소유자가 실제 독점적이면서 계속적으로 공공아파트에 거주해야 한다는 HDB' ruling의 입장을 따른 것이다.

소유자가 거주용 부동산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임대기간 동안 소유자가 거주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유사하게 거주용 이외의 목적으로 거주용 부동산의 일부를 사용하는 소유자도 특례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신설된 재택근무(Home Office; HO) 제도에 따라 재택근무지인 거주용 부동산을 사용하는 소유자는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 이 제도에 따르면 거주용 목적과 거주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주용 부동산은 HO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하고, HO 제도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다) 적용기간

이 특례는 부동산에 소유자가 거주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거주용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가 실제 거주하기 전에 합리적인 기간(일반적으로 당해 부동산이 이전된 후 2~3개월) 동안 해당 부동산을 보수 또는 리모델링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가 소유자가 된 시점부터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소유자가 동일한 기

간 동안 다른 거주용 부동산에 대해 특례를 적용받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다.

라) 신청

거주자인 소유자 특례는 납세자의 신청이 필요하지만, 공공아파트의 신규 소유자는 특례의 적용을 신청할 필요가 없이 자동적으로 특례가 적용된다. 이는 공공아파트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Home Ownership Scheme에 따라 공공아파트가 매각되기 때문이다. 한편, 거주자인 소유가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시점으로부터 15일 안에 소유자는 국세청에 서면고지해야 한다.

나. 면세점

연간가치 18싱가포르달러 이하의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¹¹⁴⁾.

5. 감면 및 세액공제

가. 건물

1) 거주자인 소유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거주자인 소유자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1994 GST 세액공제’와 ‘2010 재산세 세액공제’가 적용된다¹¹⁵⁾. GST 세액공제는 연간가치의 금액 대소에 따라 25~150싱가포르달러까지 재산세를 차감하며, 재산세 세액공제는 120싱가포르달러까지 재산세를 차감한다. GST 세액공제는 새로운 누진재산세율체제(PPTR)의 도입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된다.

114) 재산세법 §6(5)

115) IRAS e-Tax Guide, Property Tax: Budget 2010 New Progressive Property Tax Regime(PPTR) For Owner-Occupied Residential Properties With Effect From 1 January 2011, Feb. 2010

〈표 4-1-2〉 1994 GST 세액공제

(단위: 싱가포르달러)

연간가치(AV)	연간 GST 세액공제액
~ 5,000	SGD 150(실제 재산세와 비교하여 낮은 금액)
5,001~6,000	125
6,001~7,000	100
7,001~8,000	75
8,001~9,000	50
9,001~9,999	25
10,000~	0

자료: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10112>

공공아파트 소유자들이 개정된 재산세에 적용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한시적으로 120싱가포르달러를 최고한도로 2010 재산세 세액공제를 운용한다. 이는 1994 GST 세액공제에 추가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표 4-1-3〉 2010 재산세 세액공제

GST 세액공제 적용 후 재산세액(PT)	2010 재산세 세액공제액
SGD 50 미만	PT
SGD 50 이상 100 미만	SGD 50
SGD 100 이상 240 미만	PT의 50%(SGD 120 한도)
SGD 240 이상	SGD 120

자료: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10112>

거주자인 소유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세율과 세액공제를 반영한 재산세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거주자인 소유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세액의 계산	
<사례 1> 소유자가 거주하는 거주용 부동산의 연간가치가 SGD 6,000인 경우 2011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액은 0이다.	
① 종전의 4% 특례세율과 1994 GST 세액공제 적용 시	$\frac{\text{SGD } 6,000 \times 4\%}{}$ = SGD 240 - 1994 GST 세액공제(SGD 125) = SGD 115
② 새로운 누진재산세율체제(PPTR) 적용 시	$\frac{\text{SGD } 6,000 \times 0\%}{}$ = 0
<사례 2> 소유자가 거주하는 거주용 부동산의 연간가치가 SGD 24,000인 경우 2011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액은 SGD 720이다.	
① 종전의 4% 특례세율과 1994 GST 세액공제 적용 시	$\frac{\text{SGD } 24,000 \times 4\%}{}$ = SGD 960 - 1994 GST 세액공제(0) = SGD 960
② 새로운 누진재산세율체제(PPTR) 적용 시	$\text{SGD } 6,000 \times 0\%$ $+ \frac{\text{SGD } 18,000 \times 4\%}{}$ = SGD 720

자료: IRAS e-Tax Guide, Property Tax: Budget 2010 - New Progressive Property Tax Regime for Owner-Occupied Residential Properties with effect from 1 January 2011, pp. 2~3

2) 공실 환급(Vacancy Refund)

재산의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재산세는 납부되어야 한다. 그러나 당해 재산이 최소 30일 이상 계속 사용되지 않는 상태라면 납부된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¹¹⁶⁾. 이러한 공실 건물에 대한 재산세 환급규정은 ① 임대 목적으로 임차인을 얻으려는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②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수리를 하는 경우에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¹¹⁷⁾.

단, 이러한 수리는 구조변경, 사용가치 향상 또는 새로운 장착작업을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건물이 임대에 적합한 상태이지만 고가의 임차료나 매매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비어 있는 상태라면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일 개보수 작업이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수리작업 이외에 리모델링이나 새로운 장착작업인 경우에는 수리기간 동안만 공실 환급이 적용된다¹¹⁸⁾.

매년 11월 1일부터 보장연도에 10월 31일까지 실행되는 재산세 환급기간 동안 환급 신청하려는 소유자는 보장연도 10월 15일까지 재산세 최고책임자에게 환급신청해야 한다. 환급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는 여전히 당해 재산을 소유하는 상태여야 한다. 또한 해당 재산이 사용되지 않은 지 1년 되는 시점 또는 당해 재산이 공실상태에 있다가 사용이 개시된 시점 중 빠른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3) 건축 중인 거주용 부동산

개인용 부동산 소유자이고 거주용 부동산에 증축 또는 개조를 실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직권감면(Remission)이 적용된다¹¹⁹⁾.

- 거주용 부동산은 직권감면 기간 동안 비어 있을 것

116) 재산세법 §8(1)

117) IRAS Circular, Claim for Refund of Property Tax on Unoccupied Buildings, 2005, p. 3

118) IRAS Circular, Claim for Refund of Property Tax on Unoccupied Buildings, 2005, p. 4

119) Property Tax (Building Works in Residential Premises) (Remission) Order 1991

- 건설작업이 건설청(Building Authority)의 승인을 받았을 것
- 건설작업이 완료되었고 건설청에서 준공을 받았을 것
- 건설작업의 종료 후 최소 1년 동안 소유자가 해당 거주용 부동산에 거주할 것

만일 건설작업 종료 후 당해 부동산을 이전하거나 해당 부동산의 전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권감면이 부여되지 않는다. 직권감면 기간은 거주용 부동산이 공실이 된 때 또는 건설청에 건설계획을 제출한 때 중 늦은 시기로부터 건설작업 완료일까지 최대 2년이다.

4) 면제

건물 전체 또는 건물의 일부가 공공의 종교예배를 위한 장소, 정부로부터 국고지원을 받는 공립학교, 자선목적, 사회발전(Social Development)에 유익한 목적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재산세가 면제된다¹²⁰⁾.

나. 토지

1) 개발승인된 토지에 대한 과세이연

사업자이면서 보유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Provisional Permission 또는 Written Permission을 취득한 경우에는 개발승인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이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현금 유동성을 높이고 상승전환을 준비하는 거점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예산안에서 도입된 것이다¹²¹⁾. 따라서 2009년 1월 22일부터 2011년 1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120) 재산세법 §6(6)

121) IRAS Circular, Property Tax Deferral for Land Approved For Development(Budget 2009), 2009, p. 4

2) 승인된 건축사업에 대한 재산세(토지분) 면제

보유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이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된 건축사업(Approved Building Projects)의 지위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기초공사 개시일부터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된다. 면제기간은 면제 개시일로부터 3년 또는 임시점유허가(Temporary Occupation Permit; TOP)일까지 중 빠른 시점이다. 재무부 장관이 승인된 건축사업의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기초공사 개시일이 2001년 5월 1일 이후일 것
- 당해 사업은 경제개발위원회(Economic Development Board)의 지원을 받을 것
- 당해 사업은 중요한 투자비용(토지 취득비용 제외)을 수반할 것
 - 투자비용은 최소 SGD 5억을 요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무부 장관이 당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회사분할이면서 싱가포르에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승인된 건축사업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¹²²⁾
- 당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회사분할(Spin-offs)에 해당하여 싱가포르에 이익이 될 것

다. 재건축중인 거주용 부동산(공통)

재건축을 위해 부동산을 철거하는 경우 직권감면이 적용된다¹²³⁾. 다음과 같은 직권감면의 요건이 있으면 건축기간 동안 재건축 작업 이전이라도 거주자인 소유자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토지를 점유하지 않을 것
- 토지나 어떠한 부분의 점유 또는 사용을 위해 임대료나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수령하지 않을 것
- 특례기간 동안 다른 재산에 대해 거주자인 소유자 특례는 적용받을 수 없음(만일 다른 재산에 대해 거주자인 소유자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기존에 특례 적용을 철회

122) IRAS Circular, Reinstatement Of Property Tax Exemption For Approved Building Projects, 2001, p. 3

123) Property Tax (Residential Premises Under Construction) (Remission) Order 1997

함을 국세청에 고지해야 함)

- 재건축 주택은 임시점유허가(TOP) 또는 Certificate of Statutory Completion로부터 최소 1년간 소유자가 거주할 것

그러나 이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철거 후에도 건축기간 동안 토지에 대해 재산세가 과세된다. 이러한 세금은 재건축 이전의 금액보다 일반적으로 높다.

직권감면 기간은 새로운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인데, 철거된 주택의 공실일 또는 건축계획 제출일 중 늦은 시점으로부터 2년을 한도로 한다.

6. 재산세 행정

가. 신고 및 부과

당해 연도의 재산세는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미리 납부해야 한다¹²⁴⁾. 예를 들어, 2010년도분 재산세는 2010년 1월 31일이 납부기한이다. 미납세액과 미납가산세에 대해 납부고지(Notice of Payment)가 납세자에게 발송된 경우에는 고지일로부터 1달 안에 납부해야 한다¹²⁵⁾.

나. 징수, 납부 및 환급

1) 징수 및 납부

재산세 최고책임자는 재량에 따라 재산세를 분납하는 방식을 허용할 수 있고 연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자를 부과할 수도 있다¹²⁶⁾. 다만, 지로방식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12개월 동안 무이자로 분납이 가능하다¹²⁷⁾.

124) 재산세법 §6(2)(a)

125) 재산세법 §6(2)(b)

126) 재산세법 §37

127)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3a.aspx?id=1534>

매년 1월 31일 또는 납부고지일로부터 1달이 경과한 날로부터 3주 안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세액으로 간주하여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세법에 의한 강제징수절차가 개시된다¹²⁸⁾¹²⁹⁾. 따라서 체납자가 은행, 고용주, 임차인 또는 제3자에 대해 채권을 보유하는 경우 이들로 하여금 재산세 최고책임자에 채권을 변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또한 체납자가 정부기관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어 대금이나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거나 정부기관에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기관에 체납자의 세액을 변제하도록 고지하게 된다. 한편, 체납세액이 발생된 재산에서 발견되는 모든 동산(소유자 불문)을 압류하고 경매하기 위해 압수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고, 공매를 위해 부동산에 대한 매각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2) 환급

과납된 재산세액은 과납한 때로부터 6년 내에 환급신청에 의해 환급받을 수 있다¹³⁰⁾.

다. 이의신청 및 불복

1) 이의신청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보유재산의 연간가치에 대한 평가고지(Valuation Notice)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최고감정인(Chief Assessor)¹³¹⁾에게 이의신청(Objection)할 수 있다¹³²⁾. 납세자가 평가고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언제나 평가리스트(Valuation List)에 나타난 보유재산의 현재 연간가치에 대해 이의

128) 재산세법 §6(12)

129)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2258>

130) 재산세법 §6(13), (14)

131) 최고감정인은 재산의 연간가치 평가를 책임지는 자로서 재산세법 §3(1)에 따라 재무부 장관이 임명한다.

132) 재산세법 §20A(1), (2)

신청할 수 있다¹³³⁾.

2) 불복

이의신청 결과가 기각이거나 일부인용인 경우에는 결과고지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평가심사위원회(Valuation Review Board)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¹³⁴⁾. 또한 평가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고등법원(High Court)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¹³⁵⁾.

라. 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세액 전체를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세액에 대해 5%만큼 미납가산세가 부과된다¹³⁶⁾. 이러한 가산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세 최고책임자가 전체 또는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¹³⁷⁾.

마. 조세범처벌

재산세 최고책임자의 승인 없이 건물 등 재산에 번호나 명칭을 부여하는 자는 1,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¹³⁸⁾. 또한 건물 등 재산에 법률상 부여된 번호나 명칭을 훼손한 자도 1,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에 의한다¹³⁹⁾.

재산세 최고책임자나 최고감정인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2,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¹⁴⁰⁾. 한편, 재

133)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2364>

134) 재산세법 §20A(7)

135) 재산세법 §35(1)

136) 재산세법 §36(1)

137) 재산세법 §36(3)

138) 재산세법 §52(2)

139) 재산세법 §53(1), (3)

140) 재산세법 §56

산법에 의한 각종 신청시 허위정보를 제공한 자는 5,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¹⁴¹⁾.

141) 재산세법 §57

II. 인지세

1. 납세의무자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문서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문서에 이 부분이 언급되지 않은 경우에 인지세법에서 열거하는 문서에 대해서는 다음 <표 4-Ⅱ-1>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결정된다. 반면, 인지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 기안자, 작성자 또는 집행자가 인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표 4-Ⅱ-1> 인지세의 납세의무자

문서의 성격 및 종류		납세의무자
채권, 계약(Covenant) 또는 증서 -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가구, 각종 비품, 설비 임대료를 지급보증하기 위한 것	원본	임차인
	사본	임대인
양도증서 (Conveyance)	부동산 양도 ¹⁾	양도자
	그 밖의 양도	양수인 또는 임차인
교환		양도증서와 동일
임대차	원본	임차인
	사본	임대인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자 또는 채무자
공유물 분할		공유물 분할에 관련된 자

주: 1) 인지세법 First Schedule의 No. 3(b), (ba)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 Stamp Duty Act §34 및 Third Schedule, Stamp Duties Act(Amendment of First and Third Schedules) Notification 2010

2. 과세대상

가. 개관

부동산·주식 또는 부동산·주식에 대한 수익권과 관련된 문서는 인지세의 과세대상이다. 이들 문서는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또는 저당권설정계약서를 포함하며, 거래 자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문서가 작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거래가 도중에 중단되더라도 납부한 인지세가 환급되는 것은 아니다. 보유재산을 교환하거나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문서는 인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 교환 당사자 모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인지세는 2번 과세된다.

〈표 4-11-2〉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의 유형

1. 채권, 약정 또는 증서 ¹⁾	7. 증여
2. 삭제 ²⁾	8. 임대차
3. 양도, 배정 또는 이전	9. 저당권설정
4. 신탁 신고서	10. 공유물분할
5. 사본 또는 부분	11. 계승적 처분(Settlement)
6. 교환	12. 임대차 포기(Surrender of Lease)

주: 1)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가구, 각종 비품, 설비 임대료를 지급보증하기 위한 것

2) 매매계약서(Contract Note)는 S 288/2000에 의해 삭제

자료: 인지세법 §4, 인지세법 First Schedule

한편, 다음 유형의 문서는 인지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¹⁴²⁾.

- 임대와 관련없는 서비스계약서
- 수탁자 지정증서(이자수령권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142) <http://www.iras.gov.sg/irasHome/page.aspx?id=1808>

- 부동산과 주식과 관련없는 대출계약서
- 현금의 계승적 재산처분(Settlement)과 같이 부동산 및 주식과 관련이 없는 계승적 재산처분
- 보증서
- 법적선언서, 선서진술서
- 영업권, 상표권, 특허권과 같은 무형재산권의 배정
- 장부상 부채·매출채권의 배정
- 약속어음
- 변호사 선임계약서 또는 선임취소계약서
- 유언장
- 할부구입약정서
- 용선계약서

나. 임대차계약과 과세대상

1) 임대차계약의 특성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배타적인 점유권을 가지며, 임대차계약 내에서 부수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상 특별한 제한조건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재산을 재임대(전대)할 수 있다. 반면, 허가계약은 허가에 따라 특정 목적으로 부동산에 출입하고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지만, 배타적인 점유권이나 어떠한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고정된 기간 동안 사용료를 지급하고 방을 점유할 수 있는 개인적 권리를 가지는 호텔 숙박객은 임차인이 아니고 허가받은 자에 해당한다.

2) 임대차계약의 종류별 과세대상 판단

모든 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의 과세대상이다. 임대차 갱신(Lease Renewal)이나 임

대차 연장(Extension of Lease)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간주되어 완전세율(Full Duty Rates)이 적용된다. 임대차 포기(Surrender of Lease)와 관련된 문서도 인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반면, 의향서(Letter of Intent)나 허가계약(Licence Agreement)은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지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임대차 변경(Variation of Lease)이나 보충계약(Supplemental Agreement)도 인지세의 과세대상이다. 이는 임대기간의 연장에 관련된 것이라면 새로운 임대차로 간주되지만, 임대기간에 변함이 없이 임대료에 증감이 있는 경우나 임대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임대차에 대한 변경으로 보아 인지세를 계산한다. 다만, 임대 용도변경, 추가임대료 없이 일정한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 임대료 지급방식의 변경, 임대기간의 설명, 임대료와 임대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임대조건에 대한 수정은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세율 및 세액의 계산

가. 과세표준 및 세율

1) 완전세율(Full Duty Rate)

재산이전의 경우 구간별로 1~3%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주식이전시에는 모두 0.2%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임대의 경우에는 임대기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용하며, 저당권 설정시에는 500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0.4%의 세율을 적용한다.

〈표 4-11-3〉 인지세 세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재산의 양도·취득 또는 증여에 의한 재산이전	취득가격 또는 시장가치 중 높은 금액에서	첫 SGD 180,000	1%
		다음 SGD 180,000	2%
		잔존가액	3%
매매 또는 증여에 의한 주식이전	양도대가 또는 순자산가치 중 높은 금액		0.2%
재산의 임대	①연임대료 SGD 1,000 이상인 경우 연임대료 또는 평균 연임대료	임대기간 1년 미만	0.4%
		임대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0.8%
		임대기간 3년 이상 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	1.6%
저당권설정	대출금액		0.4% (최대 SGD 500 한도)

자료: <http://www.iras.gov.sg/irasHome/page.aspx?id=8996>

2) 명목세율(Nominal Duty Rate)

명목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유언장, 비유언승계법(Intestate Succession Act), 무슬림상속법(Muslim Law of Inheritance)에 의해 망자의 자산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재산이전에 적용되는 완전세율 대신 10싱가포르달러의 정액세율이 적용된다.

둘째, 동일한 계약에 대해 1개 이상의 계약서가 있는 경우 제일 처음 실행되는 계약서는 완전세율로 과세하지만, 그 다음에 실행되는 계약서부터 계약서당 10싱가포르달러의 정액세율(명목세율)이 적용된다.

3) 사본에 대한 인지세

사본에 대한 인지세율은 사본당 2싱가포르달러의 정액세율이 적용된다.

나. 세액의 계산

1) 자산의 인수 또는 매각

가) 자산의 분배

자산의 분배(Distribution of Assets)는 망자의 유산(Estate)에서 수익자에 자산을 분배하는 경우, 회사의 임의해산시 주주에 자산을 분배하는 경우, 주주에 재산의 형태로 배당(현물배당)하는 경우에 자산의 분배와 관련된 문서는 인지세의 과세대상이다.

유언장, 비유언승계법, 무슬림상속법에 의하지 않고 망자의 자산이 수익자에게 분배되는 경우에는 증여나 양도에 의한 이전으로 간주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회사의 임의해산에 의해 주주에게 자산을 분배하거나 주주에게 현물배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나) 자산 교환

가격이 다른 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높은 가격의 자산을 보유하는 소유자와 낮은 가격의 자산을 보유하는 소유자는 모두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각각 계산한다.

〈자산교환과 관련된 인지세 계산〉

사례) A자산(시가 SGD 3,000,000) 소유자와 B자산 소유자(시가 SGD 4,000,000)가 A, B를 교환하는 경우 A자산 소유자와 B자산 소유자의 인지세는 시가 SGD 4,000,000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A자산 소유자의 인지세(B자산 소유자의 인지세도 동일)

: SGD 114,600 (= SGD 180,000 × 1% + SGD 180,000 × 2% + SGD 3,640,000 × 3%)

자료: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8766>

다) 양도 및 취득

일괄취득(Enbloc Purchase) 또는 대량취득(Block Purchase)의 경우 여러 개의 문서를 작성하여도 집합매매가격(Collective Sale Price)이나 대량취득가격(Block Purchase Price)에 따라 인지세를 계산한다. 개인 소유자들과 취득자 사이에 여러 개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하나의 문서만 전체 양도가에 대해 일반세율에 따라 인지세가 과세되고, 나머지 문서는 각각 10싱가포르달러의 정액세율이 적용된다.

여러 개의 사건에 관련된 문서는 개별적으로 인지세가 과세된다¹⁴³⁾. 따라서 매각 후 재임대(Sale and lease-back)는 임대부분과 양도부분에 대해 각각 인지세가 과세되며, 환매조건부계약(Sale and Buy-back)은 두 개의 양도부분에 대해 각각 인지세가 과세된다.

라) 저당권설정계약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부동산 또는 주식에 대해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대출금액에 기초하여 인지세를 계산한다. 양도담보(Equitable Mortgage)의 경우 담보대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만 인지세가 부과되고, 주식을 담보물로 제공하고 계약서가 수기로 서명된 경우에는 인지세가 면제된다. 한편, 추가적인 대출이 발생하고 기존 근저당(Open Mortgage)에 따라 담보되는 경우 인지세는 500싱가포르달러와 기납부 인지세의 차액으로 계산된다. 이에 비해 기존 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금액이 고정되어 있어서 추가대출 시 동일한 부동산에 대해 추가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이중저당)에는 신규 저당권설정으로 간주되어 인지세가 계산된다.

마) 양도자의 인지세(SSD)

2010년 2월 20일 이후 거주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안에 매각하는 경우 거주용

143) 인지세법 제6조

부동산의 양도자는 양도자의 인지세(Seller's Stamp Duty; SSD)를 납부해야 한다¹⁴⁴⁾. 양도자의 인지세는 양도가액 또는 시장가치 중 높은 금액으로 기준으로 계산한다.

2) 임대차

가)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서는 총임대료와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에 기초하여 인지세를 계산한다.

나) 고정임대료 조건의 임대차 변경

임대차 변경계약 시 임대기간의 연장에 관련된 것이면 새로운 임대차로 간주되지만, 임대기간에 변함이 없이 임대료에 증감이 있는 경우나 임대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임대차에 대한 변경으로 보아 인지세를 계산한다.

동일한 임대기간중 임대료 증액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부분에 대한 인지세가 과세된다. 반면, 다른 조건의 변경없이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임대기간이 축소되는 계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문서에 대해 10싱가포르달러의 명목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대료가 감액된 부분이나 임대기간이 축소된 부분에 대한 기납부 인지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한편, 임대기간이 연장되거나 임대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규 임대차계약으로 간주되어 기존의 임대차계약에 상관없이 인지세를 계산한다.

144) 자세한 내용은 싱가포르 국세청 자료(IRAS e-Tax Guide - Stamp Duty: Imposition of Stamp Duty on Sellers for Sale of Disposal of Residential Property, 2010. 9) 참조

〈임대료 증액계약시 인지세 계산〉

〈사례〉 종전 임대차계약(2년, 월임대료 SGD 2,000)에 따라 SGD 192의 인지세를 납부했다. 2년의 계약기간중 마지막 6개월 동안 월임대료를 SGD 2,000에서 SGD 3,000으로 증액하는 임대차 변경 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는 다음과 같이 SGD 24로 계산된다.

1. 18개월 동안의 총임대료를 계산한다. $SGD\ 2,000 \times 18\text{개월} = SGD\ 36,000$
2. 잔존 6개월 동안의 총임대료를 계산한다. $SGD\ 3,000 \times 6\text{개월} = SGD\ 18,000$
3. 임대차 변경에 따른 평균 연임대료를 계산한다.
 $(SGD\ 36,000 + SGD\ 18,000) \div 2\text{년} = SGD\ 27,000$
4. 변경후 평균 연임대료와 변경전 평균 연임대료의 차이를 계산한다.
 $SGD\ 27,000 - SGD\ 24,000 = SGD\ 3,000$
5. 평균 연임대료의 차이에 해당세율(임대기간 2년)을 적용하여 인지세 추가세액을 계산한다.
 $SGD\ 3,000 \times 0.8\% = SGD\ 24$

자료: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8606>

다) 임대료가 변동되거나 임대료가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

임대료가 변동되거나 임대료가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계약서는 총임대료(Gross Rent), 공개시장임대료(Open Market Rent) 중 높은 금액에 기초하여 인지세를 계산한다. 총임대료는 기본임대료에 임대 관련비용(추가임대료, 관리비, 가구·설비 임대료, 광고·홍보수수료)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표 4-11-4〉 변동임대료 조건의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

변동임대료 구조	임대료 산정기준
매출(Sale Turnover) 비율에 기초한 임대료	공개시장임대료
매출 비율을 수반하는 총임대료 (인지세 납부시 확정임대료를 알 수 없는 경우)	총임대료, 공개시장임대료 중 높은 가격
매출 비율(확인가능한 추정매출을 포함)을 수반하는 총임대료	확인가능한 추정매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한 총임대료, 공개시장임대료 중 높은 가격
매출 비율을 수반하는 총임대료, 최소보장금액 설정	최소보장금액을 포함하는 총임대료, 공개시장임대료 중 높은 가격
매출 비율을 수반하는 총임대료 최대보장금액 설정	최대보장금액을 포함하는 총임대료, 공개시장임대료 중 높은 가격

자료: IRAS Circular, (A) Stamping of Lease with Variable Rent, (B) Stamping of Acceptance to Letter of Offer for Lease, 2007

3) 주식 이전

주식 이전시 인지세는 이전된 주식의 양도대가와 순자산가치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이전에 대해서는 서류상 계약일 현재 해당 주식의 종가를 기준으로 양도대가를 계산하는데, 해당일에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전일 종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법인이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할당 가격(Allotment Price)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신설법인이란 주식 이전일로부터 18개월 안에 설립된 법인을 의미한다. 한편, 우선주에 대해서는 우선주에 부수하는 권리를 순자산가치에 반영한다. 예를 들어, 청산 시 우선주 보유자에게 자본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우선주의 순자산가치는 분배될 자본금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4. 감경 및 면제

가. 직권감면¹⁴⁵⁾

재무부 장관은 직권으로 인지세를 감액(Reduce) 또는 면제(Remit)할 권한을 갖는다¹⁴⁶⁾. 이러한 권한에 근거하여 재무부 장관은 다음 7가지 유형의 직권감면(Remission)을 규정¹⁴⁷⁾하고 있다.

1) 매매계약 취소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에 취소하는 경우에도 인지세는 당초 매매계약서에 대해 과세된다. 그러나 매도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면서 2005년 2월 18일 이후에 취소된 매매계약서에 대해 인지세의 직권감면이 허용되어 50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인지세는 면제된다¹⁴⁸⁾.

145)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3432>

146) 인지세법 제74조

147) 인지세법 제77조에 따라 재무부 장관은 인지세법을 집행하는 목적으로 시행규칙(Rule)을 제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직권감면은 매매계약의 취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직권감면을 신청하고, 인지세 취소를 위해 당초 매매계약서를 인지세 최고책임자에게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2) 양도지시서

① 재산을 회사에 이전할 의도로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가족에게 공동매수자로서 재산을 이전할 의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재산에 대한 지분비율 변경(매수자가 다른 매수자와 공동으로 재산을 매수하기로 계약)하는 경우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제공하는 서면인 양도지시서(Conveyance Direction)에 대해 인지세는 면제된다¹⁴⁹⁾.

이러한 직권감면은 공통적으로 ① 양도지시서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작성되어야 하고, ②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가 완납되어야 하며, ③ 매수자와 회사, 가족 간에 대가관계가 없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재산을 회사에 이전할 의도인 경우에는 ① 계약시점에 매수자가 재산을 회사에 이전시키고자 한다는 명확한 의도가 있고, ② 매매계약일로부터 임시점유허가(TOP) 발행일까지 또는 임시점유허가증이 매매계약일에 발행된 경우에는 점유이전일까지 매수자는 당해 회사의 주식 50% 이상에 대한 수익적 지분 또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의결권 50%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 한편, 매수자에 공동매수자인 가족을 포함하거나 공동 매수자의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매수자 중 최소한 1명이 당해 재산의 매수자로서 존속해야 한다.

3) 이혼소송

이혼결정, 사법상 별거, 또는 법률이나 종교에 의한 결혼 무효에 대한 소송 결과로서 재산을 이전하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액 면제된다¹⁵⁰⁾.

148) Stamp Duties (Aborted Sale and Purchase Agreements) (Remission) Rules 2005 §2

149) Stamp Duties (Conveyance Directions) (Remission) Rules 2005 §3

150) Stamp Duties (Matrimonial Proceedings) (Remission) Rules 2005 §3

이러한 직권감면은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명령에 의해 재산이 이전되고, 양수자가 이혼소송의 당사자 또는 자녀인 경우를 조건으로 한다.

4) 적격 이슬람 자금조달계약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재산(부동산이나 주식)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과 매수자 간에 적격 이슬람 자금조달계약이 체결된 경우 인지세 직권감면이 허용된다¹⁵¹⁾. 이 때 적격 이슬람 자금조달 계약이란 금융기관이 매수자에게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기관과 매수자와의 계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적격 이슬람 자금조달 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매수자에게 재산을 매각하거나 매각조건부로 임대하는 증서에 대해서는 500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인지세는 면제하며, 매각조건부 임대에서 매수자가 매각옵션을 실행하여 금융기관이 매수자에게 재산을 매각하는 증서에 대해서는 전액 인지세가 면제된다.

이러한 직권감면은 금융기관이 재산 취득 시 인지세를 납부하고, 샤리아(Syaria h)¹⁵²⁾ 의회나 샤리아 기구가 적격 이슬람 자금조달계약을 승인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5) 부동산투자신탁

최근 부동산투자신탁(REITS)에 의한 재산보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해 부동산투자신탁이 과세대상 문서의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에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신탁에 대한 재산이나 지분양도를 위한 계약서에 인지세 직권감면이 한시적¹⁵³⁾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조치는 2010년 예산안에 의해 연장되어 2015년 3월 31일까지 실행되는 과세대상

151) Stamp Duties (Qualifying Islamic Financing Arrangements) (Remission) Rules 2005 §3

152) 이슬람의 통치법

153) 부동산투자신탁에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2005년 2월 18일부터 2010년 2월 17일까지, 부동산투자신탁에 오직 국외 부동산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된 싱가포르 회사의 지분 100%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2006년 1월 1일부터 2010년 2월 17일까지 적용되었다.

문서에 적용된다¹⁵⁴⁾. 또한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기 위한 적격요건이 최근 1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되었다¹⁵⁵⁾.

6) 가족간 공공아파트 이전

가족의 일원이 거주용 공공아파트를 가족의 다른 일원에게 이전하는 경우 10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는 인지세는 면제한다¹⁵⁶⁾. 이러한 직권감면은 ① 들어오는 임차인이 잔존하는 임차인의 가족 일원이고 싱가포르 거주자인 경우로서 ② 중앙공제기금(CPF)에 대한 지급을 제외하고 떠나는 임차인에 대가가 지급되지 않고 ③ 이전이 발생한 후에 최소한 당초 임차인 중 1인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존속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7)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

재무부 장관이 승인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동산이나 주식을 기부하는 서류에 대해서 인지세가 전액 면제된다¹⁵⁷⁾. 이러한 직권감면은 기부자가 기부대상이 되는 부동산·주식이나 이들의 지분을 취득했을 때 종가세 성격의 인지세가 당해 문서에 대해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법정감경

인지세법은 회사의 재건·합병계획의 일환으로 기업자산이나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관계회사 간의 자산이전, 유한책임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종가세(Ad Valorem) 성격의 인지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¹⁵⁸⁾. 이러한 세 가지 유형

154) Stamp Dutie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Remission)Rules 2010

155)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8620>

156) Stamp Duties (Transfer of HDB flat within Family)(Remission) Rules 2007

157) Stamp Duties (Donations To Institution Of A Public Character) (Remission) Rules 2008 §3

158) 인지세법 §15(1)

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1) 회사의 재건·합병

가) 적격요건

회사의 재건·합병에 대해 인지세 법정감경 요건은 양수회사에 대한 것과 이전대가에 대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¹⁵⁹⁾. 첫째, 유한책임을 지는 양수회사는 양도회사의 사업이나 양도회사 발행주식의 90% 이상을 취득할 목적으로 등록 또는 설립되거나 자본금이 증가되어야 한다. 둘째, 양수회사가 양도회사나 양도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은 시가 기준으로 전체 대가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회사법 §215D에 의한 합병에 대해서는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¹⁶⁰⁾.

나) 사후관리

적격감면의 취소사유로 3가지의 사후관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인지세 최고책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¹⁶¹⁾.

- 양도회사나 양도회사의 주주들은 양수회사의 등기일 또는 양수회사의 자본증가 승인일로부터 2년 내 교부받은 양수회사 주식의 수익적 소유를 중단하는 경우 (단, 회사법 §215D에 의한 합병에 적용되지 않음)
- 양수회사가 양수회사의 등기일이나 양수회사의 자본증가 승인일로부터 2년 내에 양도회사로부터 인수한 사업이나 주식의 수익적 소유를 중단하는 경우
- 인수증서가 양수회사의 명목자본의 증가를 위해 양수회사의 등기일이나 결의일로

159) Stamp Duties (Relief from Stamp Duty Upon Reconstruction or Amalgamation of Companies) Rules §3

160) Stamp Duties (Relief from Stamp Duty Upon Reconstruction or Amalgamation of Companies) (Amendment) Rules 2008 §10

161) Stamp Duties (Relief from Stamp Duty Upon Reconstruction or Amalgamation of Companies) Rules §8(1)

부터 12개월 이내에 실행되지 않을 것

사후관리요건에 위배하여 적격감면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감면된 인지세에 대해 연 6%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즉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¹⁶²⁾.

2) 관계회사 간의 자산이전

가) 적격요건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을 75% 이상 보유하는 경우 이들 회사들은 관계회사가 된다.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관계회사 간의 자산이전에 대해 인지세가 법정감경된다¹⁶³⁾.

- 증서는 2000년 7월 1일(유한책임회사 간의 그룹 내 자산이전), 2005년 2월 18일(등록사업신탁), 2007년 2월 15일(준정부기관, 인적회사, 유한책임파트너십)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할 것
- 양수회사가 양도회사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별하게 설립된 경우가 아니라면 양도회사와 양수회사가 최소한 12개월 동안 관계회사일 것
- 관련성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양수회사가 자산에 대해 시가를 기준으로 이전대가를 지급할 것(다만, 완전모자회사 간의 이전인 경우 이전대가는 장부가일 수 있음)
- 자산의 이전은 진실된 거래상 이유를 위한 것
- 양도회사는 자산의 모든 지분을 양도해야 함
- 양수회사 또는 양수회사에 대한 자금대여자인 금융기관에 의해 대가가 이전되어야 함
- 양도회사가 양도자산을 취득했을 때 인지세를 납부했을 것

162)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8798>

163) Stamp Duties (Relief from Stamp Duty Upon Transfer of Assets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Rules §3

나) 사후관리

적각감면의 취소사유로 3가지의 사후관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인지세 최고책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¹⁶⁴⁾.

- 양도회사와 양수회사가 양도회사나 양도·양수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수익적 소유권의 변동으로 인해 자산인수일로부터 2년 내에 관계를 중단하는 경우
- 양수회사가 인수일로부터 2년 내에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자산인수를 위한 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증서가 실행되지 않은 경우

사후관리요건에 위배하여 적각감면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동안 감면된 인지세에 대해 연 6%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즉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¹⁶⁵⁾.

3) 일반파트너십에서 유한책임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경우

일반파트너십에서 유한책임파트너십(LLP)으로 전환하면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인지세에 대한 법정감경 요건은 다음과 같다¹⁶⁶⁾.

- 유한책임파트너십의 파트너가 전환일 기준으로 일반파트너십의 파트너일 것
- 유한책임파트너십의 자산이 전환일 기준으로 일반파트너십의 자산일 것
- 유한책임파트너십의 파트너 각자가 출자한 자본이 전환일 기준으로 일반파트너십에서 동일하게 존속할 것

이러한 법정감경은 회사가 유한책임파트너십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¹⁶⁷⁾.

164) Stamp Duties (Relief from Stamp Duty Upon Transfer of Assets Between Associated Companies) Rules §6

165)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8800>

166) Stamp Duties (Relief from Stamp Duties Upon Conversion of Firm to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Rules 2005 §2

167)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8790>

다. 면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서는 안된다¹⁶⁸⁾.

- 정부(준정부기관이나 국영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음)가 서명하거나 정부의 이익을 위해 서명된 문서로서 정부가 해당 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 국외에 소재하는 재산의 이전, 임대, 담보대출에 대한 문서
- 국외에서 설립된 회사의 지분이전과 관련된 문서로서 문서가 국외에 소재하는 주식등록소(Share Register)에 등록을 위해 제출된 경우
- 협동조합법(Co-operative Societies Act)에 따라 등록된 협동조합이 서명하거나 협동조합의 이익을 위해 서명된 문서로서 당해 협동조합이 그 문서에 대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 교환제한법(Exchange Control Act)에 따라 싱가포르 금융감독원을 통해 증권이 배정, 이전되는 문서
- 토지취득법(Land Acquisition Act)에 따라 Collector of Land Revenue가 만든 증서
- 파산재단을 위한 문서
- Land Strata Titles Act의 125, 126에 따른 이전

라. 적격 M&A 공제¹⁶⁹⁾

적격 M&A 거래에서 비상장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연간 200,000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인지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2010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수행되는 적격 M&A 거래에 적용된다. 그러나 적격 M&A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비상장주식의 이전에 대한 완전세율 과세는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거래가 종료된 후 기납부 인지세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168) 인지세법 제36조

169) 2010년 9월 말 기준으로 구체적인 법령초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다. 계획안은 싱가포르 국세청자료(IRAS Consultation Paper - Mergers and Acquisitions Scheme, 2010. 6)에 나타나 있다.

5. 인지세 행정

가. 신고 및 부과

납세의무자는 과세대상 문서의 성격에 따라 세무서식¹⁷⁰⁾을 작성하여 인지세를 납부한다. 만일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액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인지세 최고책임자(Commissioner of Stamp Duties)¹⁷¹⁾에게 심사(Adjudication)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세 최고책임자는 해당 증서에 대한 인지세를 심사하여 부과해야 한다¹⁷²⁾. 이러한 심사를 거치게 되면 심사료(Adjudication Fee)¹⁷³⁾와 평가료(Valuation Fee)¹⁷⁴⁾가 부과된다.

특별히 인지세 최고책임자나 법에 의해 심사가 강제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교환 또는 공유물 분할(Partition)에 대한 계약서와 계승적 처분(Settlement) 증서는 심사를 위해 인지세 최고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나. 징수, 납부 및 환급

1) 징수와 납부

가) 납부기한¹⁷⁵⁾

계약서의 집행일(선택사항 실행 또는 서명일)로부터 14일 내에 납부되어야 한다. 국외에서 계약서가 집행되는 경우 문서를 국내에서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부되

170) <http://estamping.iras.gov.sg/WebForms/FormSubmission/FRM0036.aspx>

171) 소득세법에서는 재무부 장관이 소득세 행정을 위해 소득세 최고책임자(Comptroller of Income Tax)를 임명하는 것과 유사하게 인지세법에서는 재무부 장관이 인지세 행정을 위해 인지세 최고책임자(Commissioner of Stamp Duties)를 임명한다.

172) 인지세법 §37

173) 인지세법 §37(1B), Fourth Schedule

174) 인지세법 Fifth Schedule

175) <http://www.iras.gov.sg/irasHome/page.aspx?id=8998>

어야 한다.

나) 납부방식¹⁷⁶⁾

인지세는 인터넷 बैं킹을 이용하거나 싱가포르 우체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 현금, 당좌수표 또는 자기앞수표로 납부할 수 있다. 분납방식은 인정하지 않는다. 인지세를 납부하면 해당 문서에 인지증(Stamp Certificate)이 부착된다. 전자인지시스템(E-Stamping System)에 의할 경우에는 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인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¹⁷⁷⁾.

2) 환급¹⁷⁸⁾

인지세가 과다납부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인지세 최고책임자는 환급될 금액을 확정하여 즉시 환급해야 한다¹⁷⁹⁾. 이 때 환급신청이 없으면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환급신청은 집행되지 않은 문서의 인지일, 집행된 문서를 위한 증서일, 부분적으로 집행된 문서를 위한 증서에 처음 서명한 자에 의한 집행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한다.

계약이 철회되거나 해제·해지된 경우 문서는 인지세법 §22(6)와 §57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인지세 환급대상이 된다. 또한 인지오류(이중인지)의 경우 인지세가 환급될 수 있다. 가산세에 대한 환급은 당해 문서가 처음부터 인지세 비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지세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176) <http://www.iras.gov.sg/irasHome/page.aspx?id=1816>

177) 인지세법 §6B

178)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8642>

179) 인지세법 §75(1)

다. 이의신청 및 불복

1) 이의신청

이의신청(Objection)은 인터넷 또는 서면에 의해 부과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¹⁸⁰⁾.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부과고지서에 규정된 납부기한까지 인지세는 납부해야 한다. 만일 납부기한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고등법원(High Court)에 불복할 수 있다.

2) 불복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에 불복하려는 자는 결과고지일로부터 21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서면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¹⁸¹⁾.

라. 가산세

세무조사나 국세청의 질문검사가 개시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인지세 미납부나 과소납부를 고지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5%를 감경한다. 단, 가산세가 감경되더라도 납부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10싱가포르달러 또는 미납세액 중 큰 금액, 3개월 이후에 납부한 경우에는 25싱가포르달러 또는 미납세액의 4배 중 큰 금액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¹⁸²⁾.

180) 인지세법 §39A

181) 인지세법 §40

182) 인지세법 § 46(1)

마. 조세범처벌

1) 인지포탈죄

인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모든 사실관계와 정황이 법령에 따라 전부 그리고 진실되게 드러나지 않은 증서를 실행한 경우 또는 동일한 목적으로 증서를 준비하면서 증서에 모든 사실관계와 정황을 전부 또는 진실되게 밝히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생략한 경우에는 10,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의하거나 양자가 병과될 수 있다¹⁸³⁾.

2) 인지 미첨부 증서의 실행죄 등

합법적인 사유없이 인지세 납부기한 안에 증서에 인지를 첨부하지 않은 증서를 작성, 실행, 서명한 자는 1,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에 의한다¹⁸⁴⁾.

3) 인지증 관련죄

인지증이나 심사증(Certificate of Adjudication)을 매각하거나 인지증이 발급되지 않은 문서에 인지증을 붙이는 등 인지증이나 심사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의하거나 양자가 병과될 수 있다¹⁸⁵⁾.

4) 공무집행방해죄

세무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인지세의 감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183) 인지세법 §62

184) 인지세법 §63

185) 인지세법 §64

고의적으로 세무공무원을 오해하도록 하는 경우와 인지세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에 의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¹⁸⁶⁾.

5) 인지 미첨부 증서의 등록 등

인지세가 부과된 증서를 기록하는 명부에 적절하게 인지가 첨부되지 않은 증서를 등록 또는 기입하는 경우에는 1,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에 의한다¹⁸⁷⁾.

6) 인지 관련 사기죄

정부기관을 상대로 인지에 대해 기망하려는 의도로 기망행위 또는 조작을 한 자는 10,000싱가포르달러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의하거나 양자가 병과될 수 있다¹⁸⁸⁾.

186) 인지세법 §65, 65A

187) 인지세법 §66

188) 인지세법 §67

제5편 기타조세

I. 오락 관련세

1. 도박세

싱가포르 내에서 도박(betting and sweepstake)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내무부(Minister for Home Affairs)에 Betting Act 또는 Common Gaming Houses Act에 의한 감면을 얻기 위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에 재무부에 의해 면세단체(exempt organization)로 지정되면, 판돈으로 수취한 금액이 도박세법(Betting and Sweepstake Duties Act)에 의한 도박세(Betting and Sweepstake Duties) 부과대상 금액이 된다. 국세청은 도박세의 징수업무를 담당한다.

가. 적용범위

재무부가 지정하는 면세 단체가 실시하는 패리뮤추얼(예: TOTO, 경마), 스테이크경마(Sweepstakes)¹⁸⁹⁾, 기타 도박성 풋볼게임 및 스포츠 행사 등에 대해 도박세가 부과된다.

189) 혼자 또는 몇 사람이 판돈 전부를 독차지할 수 있도록 꾸민 내기 경마이다.

나. 세율 및 세액산출

스테이크경마를 제외한 모든 도박에 대하여 25%의 세율이 적용되고 스테이크경마의 세율은 30%이다.

각 도박 유형별 세액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도박 유형	세액산출방법
패리뮤추얼베팅 ¹⁾ (경마) 스포츠 도박(예: 배당률이 정해진 풋볼)	$25\% \times (\text{수취한 베팅금액} - \text{지급한 상금 금액} - \text{GST}^{2})$
패리뮤추얼베팅(경마 제외) 기타 현금 및 신용베팅(예: 4D, Singapore Sweep)	$25\% \times (\text{수취한 베팅금액} - \text{GST}^{2})$
스테이크경마	$30\% \times (\text{스테이크경마에 지출된 금액} - \text{GST}^{2})$

주: 1) 패리뮤추얼베팅이란 이긴 말에 돈을 건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제하고 건 돈 전부를 나누어 주는 방식이다.

2) $\text{GST} = 7/107 \times (\text{수취한 베팅금액} - \text{지급한 상금금액})$

자료: <http://www.iras.gov.sg/irasHome/page.aspx?id=1594#calculatingduty>

다. 신고 및 세액 납부

베팅 행사의 주최자(promoter)는 수취한 베팅금액과 지급한 상금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할 세액과 함께 표시한 서류를 납부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납부기한은 베팅 활동에 따라 다르다. 경마의 경우 베팅이 이루어지는 경마 마지막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스포츠 도박은 베팅이 있는 풋볼게임이나 스포츠 이벤트가 있는 날 이후 15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스테이크경마는 당첨자가 확인된 날 이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타 형태의 베팅의 경우 베팅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출기한은 국세청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라. 벌금

베틱 행사 주최자가 제출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고 500싱가포르달러 이내의 벌금을 판결받을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위반행위의 합계가 250싱가포르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자의 경우 징수로 인한 위반행위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만일 주최자가 결산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잘못된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탈세를 하고자 하는 경우, 판결에 따라 최고 1,000싱가포르달러 또는 납부할 세액의 4배 중 큰 금액의 벌금을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위반행위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배 또는 5,000싱가포르달러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징수로 인한 위반행위도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2. 민간복권세

복권(lottery)이란 추첨 등을 통해 어떠한 방법으로든 금전이 배당되는 모든 게임을 말한다. 예를 들면, Fruit machines, Lucky Draws, Tombola and Bingo 같은 것이 있다. 민간복권(private lottery)은 게임이나 도박 등과 관련 없는 목적으로 설립된 클럽이나 단체 회원에 한해 티켓을 판매하는 복권이다.

민간복권법(Private Lotteries Act)은 클럽이나 단체가 판매하는 모든 복권에 대해 민간복권세(Private Lotteries Duty)를 부과한다. 클럽이나 단체가 민간복권 판매를 주최할 때(fruit machine의 운영도 포함), 복권 판매자는 감사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민간복권세를 국세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납부할 세액의 산출방법, 납부기한, 감사받은 자료의 제출은 민간복권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가. 세율 및 세액산출

모든 종류의 민간복권에 대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세액의 산출방법은 복권의 유형에 따라 다르다.

슬롯머신(fruit machine)의 경우 세액은 기계의 운영으로부터 발생한 총액을 기준

으로 산출한다. 매 결제시점에 기계의 현금상자에 있는 금액에 37.5%를 가산한다. 해당 클럽이나 단체가 GST 등록업자이면, 슬롯머신 운영에 대한 GST 세액을 간주매출액에서 차감한다. GST 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민간복권세 세율인 30%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산출사례 1- GST 등록사업자		산출사례 2 - GST 미등록사업자	
현금수취액	19,000.00(A)	현금수취액(실제)	19,000.00(A)
가산: (A)×37.5%	7,125.00	가산: (A) × 37.5%	7,125.00
간주매출	26,125.00	간주매출	26,125.00(B)
차감: GST 금액	588.79	민간복권세 납부액((B) × 30%)	7,837.50
	25,536.21(B)		
민간복권세 납부액((B)×30%)	7,660.86		
〈GST 금액의 산출〉			
현금 수취액	19,000.00		
차감:hand pays/cancelled credit	10,000.00		
	9,000.00(C)		
GST 금액(7/107 ×(C))	588.79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4.aspx?id=1236>

슬롯머신 외의 민간복권(예: Tombola, lucky draws)의 경우, 클럽 및 단체가 GST 등록사업자이면 복권으로부터 수취한 총액에서 GST 부과대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 30%를 적용한다. 클럽 및 단체가 GST 미등록사업자이면 복권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에 3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세액이 된다.

2006년 예산안에서는 슬롯머신에 대한 민간복권세 계산을 위한 새로운 산출방법을 발표한 바 있다. 즉, 간주매출에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에서 실제 매출에 12%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 발표 이후, 재무부는 새로운 과세표준하에서 더 높은 유효세율에 관하여 여러 클럽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간복권세의 산출 체계가 완벽한지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때까지 적용시한을 연기하기로 하였다. 검토작업은 2011년 1사분기에 완료될 목표로 하고 있고 검토가 완료되는 시점에 보다 상세한 적용방안을 발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간주매출에 30%를 적용

하는 현재의 산출방식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2007년 11월 이후, 클럽이나 단체는 특정 요건에 부합하는 슬롯머신을 사용하여야 한다. 특정요건이라 함은 모든 기계가 매출, 총상금, 현금유입액, 현금유출액 등 특정 수치가 반드시 측정되는 기계이어야 하고 모든 기계가 측정된 수치들이 프린트 가능하며 기록 자료는 7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다.

3. 카지노세

싱가포르에서 카지노는 Marina Bay와 Resorts World Sentosa의 2개의 복합휴양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카지노세(Casino Tax)는 카지노의 총게임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가. 세율 및 세액산출

카지노세는 카지노에서 운영하는 게임으로부터 발생하는 총게임수입(GGR: Gross Gaming Revenue)을 기초로 계산된다. 총게임수입이란 카지노에서 수행된 게임에서 벌어들인 순상금(net winning)에서 카지노 운영자가 제공하는 모든 게임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GST 과세대상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순상금이란 카지노 사업자가 수취한 베타금액에서 카지노 사업자가 승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프리미엄 참가자에게는 5%의 세율을, 일반참가자에게는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프리미엄 참가자란 카지노에서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 100,000싱가포르달러의 보증금 계좌를 보유한 자이다.

나. 신고 및 세액의 납부

카지노 사업자는 매월 카지노세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금신고서에는 총 게임수입과 프리미엄 참가자와 기타 참가자에 대한 카지노세 산출에 관한 상세한 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여

야 한다.

예를 들면, 2010년 3월의 카지노세 세금신고서와 카지노세 납부는 2010년 4월 15일 까지 제출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신고기한 경과, 납부기한 경과, 부정확한 신고서 제출 및 세금포탈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표 5-1-1〉 카지노세에 대한 가산세

위반행위	가산세
신고기한 경과	최고 1일 SGD 1,000의 가산세, 총가산세 상한은 SGD 10,000
납부기한 경과	미납금액에 대해 5% 가산세와 매월 미납액에 대해 추가적인 5% 가산세, 상한액은 미납액의 50%
부정확한 신고서/정보	① 과소납부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가산세 그리고 ② 최고 SGD 25,000까지의 벌금 또는 ③ 최고 2년의 징역 또는 ①, ②, ③ 모두
세금포탈	① 과소납부한 금액의 4배까지 판결에 의한 가산세 그리고 ② 최고 SGD 50,000의 벌금 또는 ③ 최고 5년의 징역 또는 상기 ①, ②, ③ 모두

자료: 싱가포르 국세청, <http://iras.gov.sg/irasHome/page04.aspx?id=10034>

II. 자동차세

1. 자동차세의 구성

자동차의 보유를 엄격히 규제하는 싱가포르의 일반 승용차의 경우 취득 시 출고가격 이상을 자동차세로 납부하도록 하여 자동차세 부담이 매우 높은 편이다. 자동차세(Motor Vehicles Tax or Tax on Vehicles)는 추가등록료(Additional Registration Fee; ARF), 도로세(Road Tax), 특별세(Special Tax), 승객좌석료(Passenger Vehicle Seating Fees), 비자동차허가(Non-motor vehicle licences)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차량구입가격에는 CIF가격¹⁹⁰⁾에 해당하는 공개시장가격, 관세, GST, 추가등록료, 등록료¹⁹¹⁾가 포함된다. 또한 차량을 운행하는 동안에는 도로세와 특별세가 6개월 단위로 과세된다.

이러한 자동차세는 차량의 유형을 ① 자가용, 회사차, 렌터카, 교습용 차량 ② 오토바이 ③ 화물차(Goods Vehicle)¹⁹²⁾ ④ 버스 ⑤ 택시로 구분하여 과세를 달리하고 있다.

2. 추가등록료

가. 과세대상 및 세율

추가등록료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공개시장가격(Open Market Value; OMV)¹⁹³⁾의

190) 발송지가격(FOB)에 운임, 보험료를 포함하는 가격이다.

191) 추가등록료 이외에도 모든 차량에 대해 차종에 상관없이 SGD 140만 원 별도로 부과되는 등록료(Registration Fee)가 있다.

192) 도로교통법 §2에서는 'Goods Vehicle'에 대해 화물의 운송에 사용하기 위해 구성되거나 조정된 자동차나 그러한 트레일러(이동식 주택)로 정의하고 있다.

5, 15, 100%의 세율로 과세한다.

〈표 5-11-1〉 추가등록료 세율

유형		세율
자가용, 회사차, 렌터카, 교습용 차량		공개시장가격의 100%
오토바이		공개시장가격의 15%
화물차	Light/Heavy/Very Heavy Goods Vehicle	공개시장가격의 5%
	Goods-cum-passenger Vehicle	공개시장가격의 100%
	Engineering Plant Vehicle	면제
버스		공개시장가격의 5%
택시		공개시장가격의 100%

자료: www.lta.gov.sg/motoring_matters/motoring_vo_tax_pte.htm

나. 감경

1) 친환경차 감경제도

친환경차 감경제도(Green Vehicle Rebate; GVR)에 따라 전기, 휘발유-전기, CNG, 휘발유-CNG 연료를 사용하는 신차와 연식 3년 이하의 수입중고차에 대해서는 추가등록료가 감경될 수 있다. 다만, 신차만 택시로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중고차에 대한 친환경차 감경제도는 택시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친환경차 감경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 전기차나 휘발유-전기차는 신차나 중고차 모두 공장 출고 시부터 친환경차로 특별히 만들어졌어야 한다.

193) 공개시장가격은 취득가격, 항공료, 보험료, 운반비 및 제조국에서 싱가포르까지 자동차의 매매와 인도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싱가포르 관세청이 결정하는 금액이다.

〈표 5-11-2〉 친환경차 추가등록료 감경률

차량 유형		차량등록일	감경률	
자가용, 회사차, 렌터카, 교습용 차량	신차	2006년 10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공개시장가격의 40%	
	중고차	2010년 7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오토바이	신차	2009년 4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공개시장가격의 10%	
	중고차	2010년 7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화물차, 버스	CNG	신차	2001년 10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휘발유-CNG	신차	2004년 6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휘발유-전기	신차	2006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공개시장가격의 5%
	전기	신차	2008년 1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모든 유형	중고차	2010년 7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택시	신차	2006년 10월 1일 ~ 2011년 12월 31일	공개시장가격의 40%	

자료: www.lta.gov.sg/motoring_matters/motoring_vo_tax_pte.htm

2) 우대추가등록료 제도

자가용의 경우 연식이 10년(택시는 8년) 되기 전에 차량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우대추가등록료(Preferential Additional Registration Fee; PARF) 감경이 적용될 수 있다. 이는 오토바이, 화물차, 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 감경률은 차량보유 자격증(Certificate of Entitlement; COE)¹⁹⁴⁾의 취득시가와 차량 연식에 따라 차등화되고 있다.

194) 싱가포르는 1990년 5월부터 자동차 수를 제한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쿼터제도(Vehicle Quota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육상교통청(LTA)이 매년 교통상황과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규 등록차량 수를 결정하면 차량등록자가 등록가를 입찰하고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된 차량보유자격증(COE)을 구입하도록 하여 신규 차량에 대한 공급을 조정하는 것이다.

〈표 5-11-3〉 우대추가등록료 감경률(자가용, 회사차, 렌터카, 교습용 차량)

등록취소시 차량연식	우대추가등록료 감경	
	(2002년 5월 이전 취득한 COE 등록)	(2002년 5월 이후 취득한 COE 등록)
5년 이하	공개시장가격의 130%	기납부 추가등록료의 75%
5년 초과 6년 이하	공개시장가격의 120%	기납부 추가등록료의 70%
6년 초과 7년 이하	공개시장가격의 110%	기납부 추가등록료의 65%
7년 초과 8년 이하	공개시장가격의 100%	기납부 추가등록료의 60%
8년 초과 9년 이하	공개시장가격의 90%	기납부 추가등록료의 55%
9년 초과 10년 이하	공개시장가격의 80%	기납부 추가등록료의 50%
10년 초과	0	0

자료: www.lta.gov.sg/motoring_matters/motoring_vo_tax_pte.htm

〈표 5-11-4〉 우대추가등록료 감경률(택시)

등록취소시 차량연식	우대추가등록료 감경 (2002년 5월 이전 취득한 COE 등록 차량)		우대추가등록료 감경 (2002년 5월 이후 취득한 COE 등록차량)
	디젤택시	CNG 택시	
5년 이하	공개시장가격의 130%	공개시장가격의 125%	기납부 추가등록료의 75%
5년 초과 6년 이하	공개시장가격의 120%	공개시장가격의 120%	기납부 추가등록료의 70%
6년 초과 7년 이하	공개시장가격의 110%	공개시장가격의 110%	기납부 추가등록료의 65%
7년 초과 8년 이하	공개시장가격의 100%	공개시장가격의 100%	기납부 추가등록료의 60%

자료: www.lta.gov.sg/motoring_matters/motoring_vo_tax_pte.htm

3) Off-Peak Car 조세특례

싱가포르는 평일 주간, 토요일 3시 이전과 같은 혼잡시간대를 제외한 시간대에 운행을 허용받은 차량인 Off-Peak Car(OPC)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주말차량(Weekend Car)제도에서 1994년에 전환된 것인데, 2010년 1월 25일부터는 새로운 OPC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에 의하면 토요일, 12월 31일, 구정, 이슬람명

절인 Hari Raya Puasa, 말레이시아 빛의 축제인 Deepavali와 크리스마스에는 도로세 할인액과 교환하여 무제한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¹⁹⁵⁾.

Off-Peak Car에 대한 조세특례는 추가등록료와 도로세에 대한 혜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추가등록료에 대한 특례는 OPC 등록 또는 전환시점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다.

첫째, 구입시점부터 OPC로 등록된 차량은 COE 구입비용과 추가등록료에 대해 17,000싱가포르달러를 보조받는다(Upfront Rebate). 적용순서는 COE 구입비용에 먼저 충당한 후 남은 잔액을 납부해야 할 추가등록료에서 공제한다.

둘째, 구OPC 제도하에 일반차량에서 전환한 OPC에 대해 연식이 10년이 되기 전에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우대추가등록료(PARF) 공제 외에 Additional PARF가 허용된다. 공제금액은 OPC 운영기간(월) × SGD 2,200 ÷ 12로 계산된다.

셋째, 신OPC 제도하에 일반차량에서 OPC로 전환한 경우에는 연식이 10년이 될 때까지 OPC로서 등록일로부터 6개월마다 1,100싱가포르달러까지 OPC 현금공제(OPC Cash Rebate)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연식이 10년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OPC 전환 후 최소한 6개월 동안은 OPC로 운행해야 한다. 6개월 현금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frac{(\text{COE 구입비용} + [(\text{추가등록료율} \times \text{공개시장가격}) - \text{실제 친환경 감정액}]}{\text{SGD } 17,000} \times \text{SGD } 1,100$$

주: 1. 'COE 구입비용'은 등록시 실제 납부하는 금액이며, '실제 친환경 감정액'은 등록시 이용된 실제 친환경 감정액을 의미한다.

2. { } 금액은 17,000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한다.

넷째, 구OPC 제도하에 일반차량에서 OPC로 전환된 차량이 신OPC제도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시점에 누적된 Additional PARF를 일시에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추가적으로 셋째 경우와 동일하게 OPC 현금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95) http://www.lta.gov.sg/motoring_matters/motoring_vo_policynschemes_offpeak.htm

〈표 5-11-5〉 신OPC제도의 조세특례

조세특례 종류	신OPC제도에서 신차를 OPC로 등록	신OPC제도에서 일반차량을 OPC로 전환	구OPC제도에서 신차를 OPC로 등록한 후 신OPC제도로 전환	구OPC제도에서 일반차량을 OPC로 전환 후 신OPC제도로 전환
선불공제 (Upfront Rebate)	○	×	×	×
연간도로세 감경	○	○	○	○
Additional PARF	×	×	×	○
OPC 현금공제	×	○	×	○

자료: http://www.lta.gov.sg/motoring_matters/motoring_vo_policynschemes_offpeak.htm

3. 도로세

가. 과세대상 및 세율

1) 자가용, 회사차, 렌터카, 교습용 차량

자가용, 회사차, 렌터카, 교습용 차량에 대한 도로세는 비전기차의 경우 배기량, 전기차의 경우 출력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표 5-11-6〉 도로세 세율(휘발유, 압축천연가스(CNG), 휘발유-CNG, 디젤차)

배기량(cc)	6개월 세율
600 이하	SGD 200 × 0.782
600 초과 1,000 이하	[SGD 200 + 0.125 (배기량 - 600)] × 0.782
1,000 초과 1,600 이하	[SGD 250 + 0.375 (배기량 - 1000)] × 0.782
1,600 초과 3,000 이하	[SGD 475 + 0.75 (배기량 - 1,600)] × 0.782
3,000 초과	[SGD 1,525 + 1 (배기량 - 3,000)] × 0.782

주: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

자료: www.lta.gov.sg/motoring_matters/motoring_vo_tax.htm

〈표 5-11-7〉 도로세 세율(전기차, 휘발유-전기차)

출력등급(kW)	6개월 세율
7.5 이하	SGD 200 × 0.782
7.5 초과 32.5 이하	[SGD 200 + 2 (출력등급 - 7.5)] × 0.782
32.5 초과 70 이하	[SGD 250 + 6 (출력등급 - 32.5)] × 0.782
70 초과 157.5 이하	[SGD 475 + 12 (출력등급 - 70)] × 0.782
157.5 초과	[SGD 1,525 + 16 (출력등급 - 157.5)] × 0.782

주: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

자료: www.lta.gov.sg/motoring_matters/motoring_vo_tax.htm

2) 오토바이

오토바이에 대한 도로세 세율도 배기량, 출력등급에 따라 결정된다.

〈표 5-11-8〉 도로세 세율(전기 오토바이)

출력등급(kW)	6개월 세율
10 이하	SGD 40 × 0.782

주: 2009년 4월 13일부터 적용

자료: www.lta.gov.sg/motoring_matters/motoring_vo_tax.htm

〈표 5-11-9〉 도로세 세율(휘발유 사용 오토바이)

배기량(cc)	6개월 세율
200 이하	$SGD\ 40 \times 0.782$
200 초과 1,000 이하	$[SGD\ 40 + 0.15 (\text{배기량} - 200)] \times 0.782$
1,000 초과	$[SGD\ 160 + 0.3 (\text{배기량} - 1,000)] \times 0.782$

주: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

자료: www.lta.gov.sg/motoring_matters/motoring_vo_tax.htm

3) 화물차

화물차에 대한 도로세는 최대적재중량, 연료의 종류에 따라 차등과세된다.

〈표 5-Ⅰ-10〉 도로세 세율(화물차)

유형	최대적재중량(톤)	6개월 세율	
		디젤(SGD)	휘발유 & 친환경(SGD)
Light 화물차 ¹⁾	3.5 이하	213	170
	3.5 초과 7 이하	328	262
Heavy 화물차	7 초과 11 이하	362	289
	11 초과 16 이하	489	391
Very Heavy 화물차 (원동기 제외)	16 초과 20 이하 (2축) ²⁾	850	680
	16 초과 20 이하 (3축) ²⁾	553	442
	20 초과 26 이하	765	612
	26 초과 32 이하	765	612
	32 초과 40 이하 (4축) ²⁾	1,190	952
	32 초과 40 이하 (5축) ²⁾	850	680
	40 초과 55 이하	1,275	1,020
	55 초과	1,488	1,190
Very Heavy 화물차 (원동기)	20 이하	553	442
	20 초과 26 이하	765	612
	26 초과 32 이하	765	612
	32 초과 40 이하	850	680
	40 초과 55 이하	1,275	1,020
	55 초과	1,488	1,190

주: 1) Goods-cum-Passenger Vehicles 제외

2) 동일한 최대적재중량(mlw)인 경우 2축 차량이 3축 차량보다 축별 중량이 높기 때문에 도로에 더 손상을 준다.

자료: www.lta.gov.sg/motoring_matters/motoring_vo_tax.htm

〈표 5-Ⅱ-11〉 도로세 세율(Goods-cum-Passengers Vehicle)

최대적재중량(톤)	6개월 세율	
	디젤(SGD)	휘발유 & 친환경(SGD)
3.5 이하	372	298
3.5 초과	487	390

자료: www.lta.gov.sg/motoring_matters/motoring_vo_tax.htm

4) 버스

〈표 5-11-12〉 도로세 세율(버스)

유형	최대적재중량(톤)	6개월 세율	
		디젤(SGD)	휘발유 & 친환경(SGD)
30인승 이하	3.5 이하	319	255
	3.5 초과 7 이하	328	262
	7 초과 11 이하	362	289
	11 초과 16 이하	489	391
	16 초과 20 이하(3축) ¹⁾	553	442
	16 초과 20 이하(2축) ¹⁾	850	680
	20 초과 26 이하(3축) ¹⁾	765	612
31인승 이상	3.5 초과 7 이하	434	347
	7 초과 11 이하	468	374
	11 초과 16 이하	595	476
	16 초과 20 이하(3축) ¹⁾	553	442
	16 초과 20 이하(2축) ¹⁾	850	680
	20 초과 26 이하(3축) ¹⁾	765	612

주: 1) 동일한 최대적재중량(mlw)인 경우 2축 차량이 3축 차량보다 축별 중량이 높기 때문에 도로에 더 손상을 준다.

자료: www.lta.gov.sg/motoring_matters/motoring_vo_tax.htm

5) 택시

택시에 대한 6개월 도로세 세율은 510싱가포르달러이다.

나. 추가금 및 감면

1) 도로세 추가금

차량의 종류에 관계없이 연식 10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에는 도로세에 추가적으로

도로세 추가금(Road Tax Surcharge)을 납부해야 한다.

〈표 5-11-13〉 도로세 추가금

차량연식	연간 도로세 추가금
10년 이상	도로세의 10%
11년 이상	도로세의 20%
12년 이상	도로세의 30%
13년 이상	도로세의 40%
14년 이상	도로세의 50%

자료: www.lta.gov.sg/motoring_matters/motoring_vo_tax_pte.htm

2) Off-Peak Car에 대한 조세특례

신OPC제도에서는 연간 도로세에 대해 70싱가포르달러를 하한으로 하여 500싱가포르달러를 감경한다¹⁹⁶⁾.

4. 특별세

가. 개념

교통정체와 공해를 야기하는 차량의 과도한 사용을 억제하고 에너지 보호를 장려하기 위해 휘발유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디젤연료나 CNG연료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없기 때문에 휘발유 차량과 비휘발유 차량 간의 연료 사용비용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대신 비휘발유 차량에 대해 특별세(Special Tax)를 과세한다. 2012년 1월 1일부터는 CNG와 휘발유-CNG는 특별세에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196) http://www.lta.gov.sg/motoring_matters/motoring_vo_policyschemes_offpeak.htm

나. 서울

과세대상은 CNG, 휘발유-CNG, 디젤차량이다. 디젤차량도 디젤-전기차와 디젤-CNG차를 포함한다. Euro IV, V, VI 배출기준을 따르지 않는 디젤차량의 경우 특별세는 동일한 휘발유 차량에 해당하는 도로세의 6배이다. 반면, Euro IV, V, VI 배출기준에 부합하는 디젤차와 CNG, 휘발유-CNG차의 경우 6개월마다 배기량(cc)에 0.625싱가포르달러를 곱하되 625싱가포르달러를 하한으로 하여 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재 2011년 12월 31일까지 CNG와 휘발유-CNG차는 특별세가 면제되고 있다.

Ⅲ.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

1. 납세의무자

싱가포르는 이민국가로서 외국인 비중(전체 인구의 42%)이 매우 높다.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Foreign Worker Levy)은 외국인 근로자 수를 조절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노동부가 징수를 담당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중앙공제기금(CPF)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대신 취업비자(Work Permit)나 S 비자(S Pass)를 보유하는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매달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일 외국인 근로자 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싱가포르 영주권을 부여 받는 경우에는 중앙공제기금의 적용대상이 된다.

2. 세율

가. 노동비자를 보유하는 경우

싱가포르의 취업비자는 전문직 비자(Employment Pass),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S 비자(S Pass), 노동비자(Work Permit)로 구분된다. 노동비자는 육체노동자나 가정부에 부여되는 비자이다.

숙련된 노동비자 보유자를 채용한 사업주는 해당 산업의 의존율(Dependency Ratio)에 따라 낮은 세율의 적용을 받는다. 이를 위해 노동비자 소지자는 관련 학위 또는 기술에 근거한 시험증명서와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표 5-III-1〉 외국인 근로자세 세율(노동비자 보유자)

산업분야	의존율	근로자 유형	월별(SGD)	일별(SGD)
제조	1단계: 전체 근로자 중 35% 이하	숙련	160	6
		비숙련	260	9
	2단계: 전체 근로자 중 35% 초과 55% 이하	숙련	180	6
		비숙련	280	10
	3단계: 전체 근로자 중 55% 초과 65% 이하	숙련 ¹⁾	450	15
		비숙련 ¹⁾		
건설	전일제 내국인 근로자 1인 to 7 외국인 근로자	숙련 & MYE ²⁾	160	6
		유경험 & MYE ³⁾ 제외	310	11
		비숙련	470	16
해양	전일제 내국인 근로자 1인 to 5 외국인 근로자	숙련	160	6
		비숙련	300	10
가공	전일제 내국인 근로자 1인 to 7 외국인 근로자	숙련 & MYE ²⁾	160	6
		유경험 & MYE ³⁾ 제외	310	11
		비숙련	300	10
서비스	1단계: 전체 근로자 중 25% 이하	숙련	160	6
		비숙련	260	9
	2단계: 전체 근로자 중 25% 초과 40% 이하	숙련	300	10
		비숙련 ¹⁾		
	3단계: 전체 근로자 중 40% 초과 50% 이하	숙련	450	15
		비숙련		

- 주: 1) 제조업 분야의 전체 근로자 중 55% 초과 65% 이하와 서비스분야의 전체 근로자 중 25% 초과 50% 이하의 범위에 속하는 숙련근로자는 숙련자에 대한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건설과 가공분야의 MYE 분배쿼터는 5%까지 감소될 것이다.
 3) 월 SGD 310의 세율은 Man-Year Entitlement(MYEs)의 요건에서 면제되는 건설이나 가공산업에 근무하는 Non-Traditional Source(NTS)나 중국인 근로자에만 적용된다. MYE에서 면제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는 관련산업에 최소 2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하며, 고용주는 Prior Approval 지원없이 노동비자를 신청했어야 한다.

자료: <http://www.mom.gov.sg/foreign-manpower/foreign-worker-levies/Pages/levies-quotas-for-hiring-foreign-workers.aspx>

나. S 비자를 보유하는 경우

S 비자는 2004년부터 도입한 정책으로 준숙련 기술(Semi-skill) 보유자이면서 전문대 이상 학력의 소유자로서 월 1,800싱가포르달러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비자형태이다.

〈표 5-Ⅲ-2〉 외국인 근로자세 세율(S 비자 보유자)

산업분야	의존율	근로자 유형	월별(SGD)	일별(SGD)
전분야	1단계: 전체 근로자 중 20% 이하 ¹⁾	숙련	100	4
	2단계: 전체 근로자 중 20% 초과 25% 이하 ¹⁾	숙련	120	4

주: 1) 모든 산업분야에 대해 S 비자의 의존율 25%는 노동비자의 의존율 내에 포함된다.

자료 : <http://www.mom.gov.sg/foreign-manpower/foreign-worker-levies/Pages/levies-quotas-for-hiring-foreign-workers.aspx>

IV. 공항승객서비스료

1. 납세의무자

싱가포르의 공항승객서비스료는 다양한 공항시설 사용과 관련된 비용들¹⁹⁷⁾ 중 유일하게 세수(Tax Revenue)¹⁹⁸⁾를 구성하는 항목이다. 창이공항을 떠나는 승객들은 공항승객서비스료(Airport Passenger Service Charge)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공항의 유지보수 및 확장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창이공항이 징수한다.

2. 세율 및 면제¹⁹⁹⁾

가. 세율

2009년 7월 기준으로 창이공항 터미널 1~3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항공권당 20싱가포르달러, Budget Terminal²⁰⁰⁾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항공권당 7싱가포르달러가

197) 창이공항이 징수하는 비용들은 크게 10가지로 구분된다. ① 공항응급서비스료(Airport Emergency Service Charge), ② 항공사용료(Aeronautical Charges), ③ Fuel Throughput Fee, ④ 승객이용료(Passenger Charge), ⑤ 주차장이용료(Carpark Charges), ⑥임차인에 대한 공항서비스이용료(Airport Service Charge), ⑦ 케이블임대료(Rental of Cable), ⑧ Rental of Comms Room, ⑨ 운항정보안내시스템(Flight Information Display System) 임대료, ⑩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ints of Sales System)의 임대료이다. 이 중 ④ 승객이용료에는 승객서비스료(Passenger Service Charge)와 승객보안서비스료(Passenger Security Service Charge)로 구성되어 있다.

198) 도시개발 및 정비에 관한 법률인 Planning Act §35에 따라 조세(Tax)로서 개발부담금(Development Charge)의 성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의 실제 징수통계는 2009년 4월부터 기타세수(Tax Revenue: Others)로 분류되고 있다.

199) http://www.changiairportgroup.com/export/sites/caas/assets/commercial/List_of_fees_x_charges_for_web_v2.pdf

200) 아시아에 저가항공사의 출현이 활성화되면서 이에 부응하기 위해 2006년 3월에 개장하였

부과된다. 항공권에 부과되지 않을 경우에는 탑승수속 시 부과된다.

나. 면제

다음과 같은 자들에 대해서는 공항승객서비스료가 면제된다.

- 공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운영요원
- 영국군용기, 외국외교단 비행기, 정부행사에 사용되는 비행기, 최고담당자가 승인하는 비행기에 탑승하는 자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비행 중단 때문에 환승지역을 떠나지 않거나 환승지역을 떠나는 자
- 24시간 이내에 환승하는 경우
- 2세 이하 유아

다. Budget Terminal의 운영비용은 저가항공사의 수요와 운영모델에 부합하기 위해 낮은 수준이다. 이는 창이공항 옆 공항대로에 위치한 1층 터미널로서 평면 에스컬레이터나 일반 에스컬레이터 및 Aerobridges가 없다.

참고문헌

- CCH, *Singapore Master Tax Guide Handbook 2010/11*, CCH, 2010.
- IRAS, "Claim for Refund of Property Tax on Unoccupied Buildings," 2005.
- _____, "Clarification on the Tax Treatment of Director's Fees Derived by Non-Resident Directors of Companies that No Presence in Singapore," 2004.
- _____, "GST: Advance Ruling System(6th edition)," 2010.
- _____, "GST: General Guide for Businesses(5th Edition)," 2009.
- _____, "Income Tax Treatment of Trust," 2006.
- _____, "Investor's Guide to Property Tax," 2006.
- _____, "Not Ordinarily Resident Scheme," 2008.
- _____, "Property Tax: Budget 2010 New Progressive Property Tax Regime(PPTR) For Owner-Occupied Residential Properties With Effect From 1 January 2011," 2010.
- _____, "Property Tax Deferral for Land Approved For Development(Budget 2009)," 2009.
- _____, "Property Tax: Treatment of Contributions to Management Fund and Sinking Fund," 2009.
- _____, "Stamp Duty: Imposition of Stamp Duty on Sellers for Sale of Disposal of Residential Property," 2010.
- _____, "Transfer Pricing Guidelines," 2006.
- IBFD, <http://online2.ibfd.org/kbase/>
- 싱가포르 법령정보 <http://statutes.agc.gov.sg/>

싱가포르 국세청 <http://www.iras.gov.sg>

싱가포르 육상교통청 <http://www.lta.gov.sg>

싱가포르 노동부 <http://www.mom.gov.sg>

창이공항그룹 <http://www.changiairportgroup.com>

주요국의 조세제도

- 싱가포르편 -

2011년 4월 22일 인쇄
2011년 4월 30일 발행

발행인 원윤희
발행처 한국조세연구원
[131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전화 : 2186-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1-466호

조판및
인 쇄 상 일 인 쇄

© 한국조세연구원 2011

ISBN 978-89-8191-528-5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8,000원